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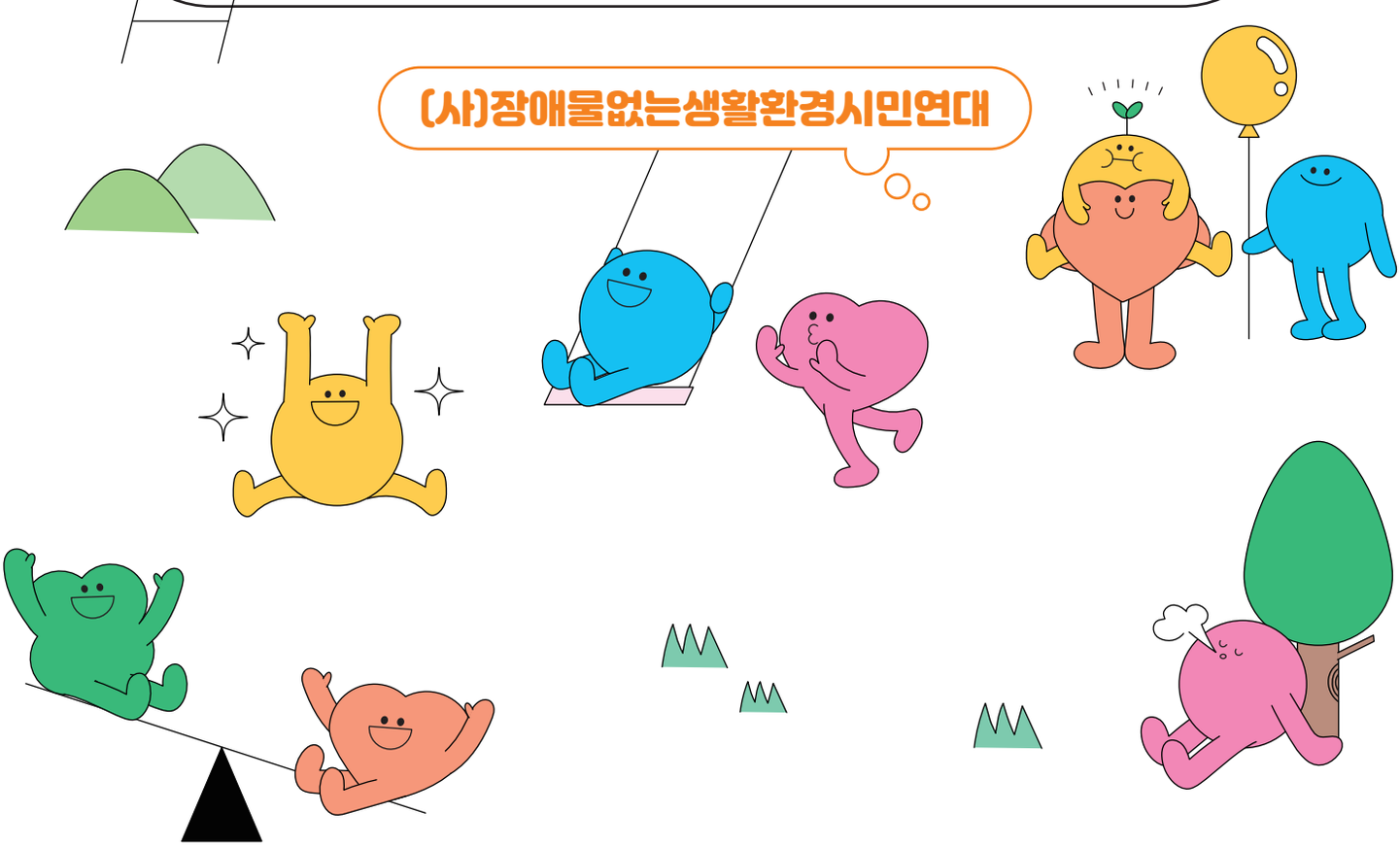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s for All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

2023. 1. 31.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책임연구원	소준영	교수(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공동연구원	한남주	교수(부천대학교 아동보육과)
공동연구원	배융호	책임연구위원((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연구원	하 춘	수석연구원((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연구원	김남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연구원	한수정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보조연구원	조소영	(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목차

Chapter 1 머리말

1.1 매뉴얼의 목적 04

1.2 매뉴얼의 활용방법 04

Chapter 2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이해

2.1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개념 08

2.2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원칙 09

2.3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범위 11

Chapter 3 아동과 놀이활동

3.1 놀이의 특성 14

3.2 놀이 유형 17

3.3 장애 및 비장애아동의 신체 활동 범위 21

Chapter 4 무장애 실내놀이터 설계

4.1 관련법규 34

4.2 항목별 설계 기준 60

Chapter 5 무장애 실내놀이터 운영

5.1 무장애 실내놀이터 운영 가이드 82

부록

1. 실내놀이터 배리어프리 인증 기준 가이드 93

2. 포커스그룹 인터뷰 103

3. 실내놀이터 이용자 설문조사 129

4. 실내놀이터 사례조사 143

Chapter 1

머리말

1.1 매뉴얼의 목적
1.2 매뉴얼의 활용방법

Chapter 1 머리말

1.1 매뉴얼의 목적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지는 지금, 장애아동의 놀이권과 통합놀이터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외부 통합놀이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놀이터, IT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접목된 놀이기구, 비나 눈 등 악천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등에 대한 필요로 인해 야외 놀이터뿐 아니라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 실내형 놀이공간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내놀이터가 비장애아동만을 고려하고 있어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보호자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거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는 비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모두 놀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장애 유무를 떠나 놀이를 통해 아동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어울리는 개념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실내놀이터도 지체장애아동 및 보호자의 접근성이 확보되는 실내공간의 조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기에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통합놀이터의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조사하고 국내외 무장애 실내놀이터 사례 분석,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매뉴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여 무장애 실내놀이터 설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건립 시 기획부터 시공까지 일반인, 기관, 공무원, 놀이터 디자이너 등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고 완성 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설계는 이용자 중심의 참여디자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내외 실내놀이터 현황, 이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공간 및 시설물의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이용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1.2 매뉴얼의 활용방법

본 매뉴얼은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설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개인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 매뉴얼은 무장애 실내놀이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매뉴얼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 무장애 실내놀이터 환경 조성 및 장애아동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무장애 실내놀이터 디자인 기획, 설계, 시공, 관리 운영 등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할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셋째,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계획할 때 필요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Chapter 2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이해

2.1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개념
2.2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원칙
2.3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범위

Chapter 2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이해

2.1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개념

2.1.1 무장애와 놀이

무장애는 장벽이 없는 상태(Barrier free)를 의미한다. 무장애를 보통 물리적 장벽으로만 생각하지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장벽(Barrier of physical environment)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턱, 계단, 좁은 통로, 가파른 경사로 등의 물리적 환경이다. 둘째 태도의 장벽(Barrier of attitude)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과 같은 사회구성원의 태도이다. 셋째, 정보의 장벽(Barrier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포함한 정보 및 의사소통의 장벽이다. 무장애는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결국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물리적 장벽, 태도의 장벽, 정보의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아동 또는 비장애아동 모두가 동등하게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놀이는 나이, 신체적 조건이나 문화적 배경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권리이다. 특히 아동에게는 놀 권리가 있고 성별, 종교, 장애, 빈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은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장애아동도 오락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 조)

> 장애아동의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 지원, 재활 지원, 취업 준비 및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3 조)

그러나 장애아동은 놀 권리는 있으나 놀이터에 다양한 장벽이 있어 실제로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몇 년 전부터 모든 아동이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디자인되고 있다.

2.1.2 통합놀이터의 개념

통합놀이터(Inclusive Playground)는 포괄적 의미로는 모든 아동을 위한 놀이터이고 협의적 의미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
통합놀이터에서 통합의 의미는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참여와 포용(Participation), 모든 아동을 위한 디자인(Inclusive Design)으로 정의된다.

그림 1. 통합놀이터의 통합의 의미

사회적 통합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는 것과 모든 사람은 사회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합놀이터의 사회적 통합은 모든 아동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은 놀이터의 모든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와 포용의 의미는 누구도 배제(Exclusion)되지 않는 통합적 참여를 통해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다양한 키, 능력, 활동에 따라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여 다양성을 포용하고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도 동등하게 놀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아동을 위한 디자인은 Inclusive Design이고 Universal Design과 유사한 의미로서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참여와 포용을 위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Inclusive Design은 포괄적 통합(Inclusion)을 전제로 한다. 개인 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면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무장애 실내놀이터에서의 Inclusive Design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의 놀이와 활동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디자인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2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원칙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원칙은 통합놀이터 디자인(Inclusive Playground Design)의 원리와 유사하다. 놀이

시설물 전문업체인 플레이코어 사(社)의 통합놀이터의 7가지 원칙과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가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2018)〉에서 제시한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통합놀이터 디자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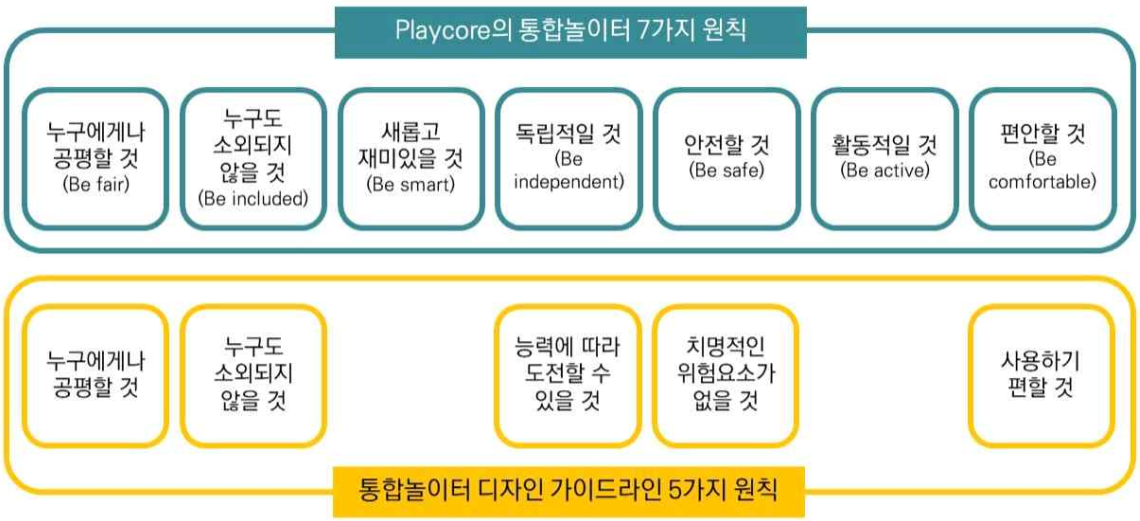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디자인 원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장애인의 놀이터가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이다.

둘째,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동행한 가족, 비장애인 아동과 동행한 장애인 가족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이다.

셋째,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유아와 저학년 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터이다.

넷째,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전체 실내놀이터 공간에 대한 접근은 물론 놀이기구, 놀이시설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재미, 호기심, 모험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2.3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범위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통합놀이터에서 도움과 지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노는 놀이터이다. 이곳에 오는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부터 최소한의 지원만 필요한 아동까지 다양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아동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전적으로 지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아동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놀이터에서의 지원의 문제는 장애아동의 놀이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첫째,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인정할 것인가? 즉, 지원받아서 참여하는 놀이를 인정할 것인가? 통합놀이터의 기본 철학은 장애인 놀이터가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노는 놀이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장애인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은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시설과 기구만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장애아동이 놀 수 없는 시설과 놀이기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놀 수 있는 것도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놀이터는 통합놀이터가 되고 말 것이다. 도움이나 지원을 받으면 대부분의 장애아동도 대부분 놀이시설과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원을 받는 놀이에 대한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둘째, 지원받는 놀이를 인정한다면,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에서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네를 예로 들어보자. 그네에 앉는 것을 도와주는 것까지로 볼 것인가? 그네에 앉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까지로 볼 것인가?

셋째, 지원받는 놀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는 놀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때 필요한 것은 접근과 이용에 대한 정의이다. 접근과 이용 둘 다를 스스로 하는 것을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라고 볼 것인가? 접근은 지원을 받지만 이용은 스스로 하는 것을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접근은 스스로 하고, 이용은 지원을 받는 것을 통합놀이터라고 할 것인가?

위의 세 가지 질문은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를 계획하고, 시공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변에 따라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는 기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최소화되는 놀이터여야 한다. 물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경우 부득이하게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특별한 도움이나 지원이 없이도 장애아동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를 지향해야 한다.

Chapter 3

아동과 놀이활동

3.1. 놀이의 특성

3.2. 놀이 유형

3.3. 장애 및 비장애아동의 신체 활동 범위

Chapter 3 아동과 놀이활동

3.1 놀이의 특성

모든 아동은 놀이를 즐기고, 성인이 되어서도 놀이에 대한 기억은 '즐겁다', '재미있다', '또 하고 싶다'와 같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다. 물론,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놀이의 모습은 달랐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놀이가 주는 긍정적인 경험은 공통적이다.

아동(영·유아)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2020). 개인 수준의 다양성은 아동의 개별 특성, 발달 수준 등 개인차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성장과 발달에 특별한 요구를 가진 장애아동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발달과 학습 지원을 위한 놀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놀이 환경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풍부한 놀이를 경험해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놀이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놀이의 특성은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내적 동기화, 결과보다 과정 중시, 비사실적 행동, 적극적 참여, 긍정적 정서,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자유 선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시된 놀이의 특성은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공간, 놀잇감 구성 및 프로그램 계획 시에도 반영될 것이다.

3.1.1 내적 동기화

가장 중요한 놀이의 특성은 내적 동기화이다. 놀이가 내적 동기화 되는 이유로 갓프리드(Gottfried, 1985)[1]는 인지적 불일치, 유능감, 귀속성의 3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1) 인지적 불일치

모든 아동은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과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혼란스러움 또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곧 내적 동기화 되어 놀이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다. 포만과 쿠쉬너(Forman & Kuschner, 1983)[2]에 의하면 아동들이 '뭔가 이상한데'하는 혼돈감, '예상 밖인데'하는 놀라움, '내가 실수를 했나'하는 당혹감, '다른 뭔가가

1) Gottfried, A.E.(1985). Intrinsic motivation for play. In C. C. Brown, & A. W. Gottfied(Eds.), Play interactions: The role of toys and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 development(pp.45-52). Skilman, NJ: Johnson & Johnson.
2) Forman, G., & Kuschner, D.(1983). The child's construcion of knowledge: Piaget for teaching children. Washington, D.C.: NAEYC.

있을 것 같은데'하는 의혹 등의 느낌이 있을 때 내적 동기화 되고 가장 능동적으로 놀이에 열중한다고 하였다(박찬옥, 정남미, 곽현주, 2020)[3]. 아동이 당혹감, 혼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모든 놀이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놀이자료, 놀이 장소, 놀이 친구, 놀이 주제, 놀이 시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이전에 해오던 놀이 상황과 다른 점이나 새로운 점을 발견하고 갈등을 느끼게 된다면 아동은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익숙한 놀이상황이라 하여도 아동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면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2) 유능감

모든 인간은 주변을 통제하고,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아동은 놀이를 하면서 유능감을 경험하고, 놀이를 통하여 유능감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유능감이 발달되면 아동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다. 아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상황과 놀이에 도전할 수 있으며 성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은 놀이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귀속성

모든 아동들이 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즐겁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놀이의 경우 성인이 만들어 놓은 목표도 없으며,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 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놀이는 매우 즐겁다. 모든 아동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특별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놀이를 탐색하여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은 아동이 또다시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내적 동기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 제시하는 놀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아동이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1.2 결과보다 과정 중시

놀이는 목적이나 결과보다는 놀이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놀이를 시도할 수 있으며, 장애를 가진 아동도 원하는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

3.1.3 비사실적 행동

비사실적 행동은 병원놀이, 엄마아빠놀이와 같이 '마치 ~인 것과 같이 놀이하는' 상징놀이로 볼 수도 있다.

3) 박찬옥, 정남미, 곽현주(2020). 2019 개정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놀이지원 놀이지도. 경기: 양성원.

아동은 연필을 칫솔처럼, 또는 교실을 수영장처럼 생각하고 놀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놀이는 사물이나 상황을 놀이 주제에 맞추어 변형하는 비사실적 행동을 포함한다. 집, 교육기관, 그리고 실내놀이터에서 과일 모형이나 야채 모형을 가지고 시장놀이를 하거나,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놀이를 하는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3.1.4 적극적 참여

놀이에 집중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놀이를 시작한 아동은 놀이에 매우 적극성을 보인다. 그러나 놀이공간이 낯설거나, 놀이기구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아동도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이 자발적으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다각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1.5 긍정적 정서

처음 방문한 놀이공간에 아동들은 낯섦을 느끼기도 하고, 처음 보는 놀이기구를 탈 때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이 놀이가 항상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방문하거나 놀이를 지속하게 되면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로 생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놀이는 부정적인 정서도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3.1.6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놀이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나 외부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네를 탈 때 혼자서 탈 수도 있지만, 친구와 같이 탈 수도 있고, 그네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네의 줄을 꼬았다 푸는 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은 자신이 방법으로 놀이하기도 하고, 새로운 놀이 규칙을 만들 수도 있다. 그 결과 놀이를 통해서 아동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규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마음대로 놀거나 위험하게 놀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네를 타면서 잡기 놀이를 한다거나, 뛰어내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1.7 자유선택

아동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놀이에 참여할 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참여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무장애 실내놀이터에서 모든 아동이 '진짜 놀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놀이의 특성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장애 실내놀이터 구성 및 운영 시 고려할 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놀이 특성 및 무장애 놀이터 구성 및 운영 시 고려할 점

놀이 특성	무장애 실내놀이터 구성 및 운영 시 고려할 점
내적 동기화	· 고정 놀이시설과 함께 융통성 있는 공간 또는 놀잇감을 함께 배치 · 반복 방문하는 아동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수준의 놀이 환경 제공
결과보다 과정 중시	·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구성 - 물리적 환경: 지체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및 환경 수정 - 사회적 환경: 자원봉사자 및 지원인력 확보 · 제한 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참여 방법 지원 -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촉감 및 청각 정보 제공 -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통로 및 놀이시설 제공 ·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놀이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적극적 참여	
긍정적 정서	
비사실적 행동	· 놀이시설 이외에 역할놀이 공간 제공 · 비정형 놀잇감 제공 -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할 수 있는 블록, 자연물 등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 장애를 포함하여 다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복합 놀이시설 제공
자유선택	

3.2 놀이 유형

놀이 유형은 크게 발달에 따른 놀이 유형과 놀이공간이 제공하는 놀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1. 발달단계에 따른 놀이 유형

아동의 신체 및 인지적 제반 발달 수준에 따라 놀이 유형도 다르게 나타난다. 본 매뉴얼에서는 사회적 놀이단계와 인지적 놀이단계에 따른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적 놀이단계

아동은 성장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도 그 형태를 달리하며 놀이 형태도 달라진다. 사회적 놀이단계는 비참여 행동, 지켜보기, 혼자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나눌 수 있다.[4)]

가. 비참여 행동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잠시 바라보는 것으로, 놀이로 보기는 어려운 놀이단계이다. 놀이 환경이 낯선 경우, 몸이 아픈 경우, 친구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나. 지켜보기

놀이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놀이에는 관심이 있으나 놀이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다. 혼자놀이

놀이에는 참여하였으나 다른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자신의 놀이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로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라. 병행놀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에 관심이 있고 짧은 대화도 나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놀이하는 형태이며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마. 연합놀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 하고 공통의 관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놀잇감을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함께 하는 놀이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친구들과 놀이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병원놀이를 하기로 하고, 환자, 의사, 간호사의 역할을 정하였지만 모두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놀이 모습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바. 협동놀이

친구들과 공통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 리더가 나타난다. 공통의 놀이 주제, 공통의 놀잇감, 함께 구조물을 완성시키기도 하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인지적 놀이단계

아동이 성장하면서 인지도 질적인 변화를 하며 그에 따라 놀이도 변화된다. 인지적 놀이단계에 따른 놀이

4) 박찬옥, 정남미, 곽현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놀이지원. 경기: 양성원.

유형은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사회극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5)]

가. 기능놀이

기능놀이는 아동의 최초 놀이로서 신체 움직임의 기능적인 즐거움을 위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놀이 행동이다. 예를 들어 뛰기, 공 굴리기, 문을 반복해서 여닫는 것과 같은 단순 반복이 기능놀이에 속한다.

나. 구성놀이

여러 가지 놀잇감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 보는 놀이이다. 2세 아동은 다양한 놀잇감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는 놀이이다. 블록으로 집 만들기, 칠교 놀이로 꽃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이 구성놀이에 속한다.

다. 상징놀이

상징놀이는 12개월 무렵 처음 시작되어 발달한다. '마치 ~인 것과 같이'와 가작화가 포함된 놀이로 엄마아빠놀이, 병원놀이, 가게놀이 등이 상징놀이로 볼 수 있다.

라. 사회극놀이

사회극놀이는 2명 이상의 아동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일정 시간 지속하는 놀이를 의미한다. 사회극놀이는 아동의 상상력, 창의력, 추상적 사고를 길러주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 규칙이 있는 게임

'윷놀이', '그대로 멈춰라'와 같이 게임에 포함되는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인지적 수준을 요구한다. 혼자 경쟁하는 경우도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표 2. 인지적 놀이단계의 놀이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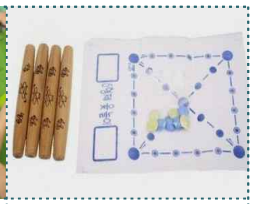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사회극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

5) 박찬옥, 정남미, 곽현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놀이지원. 경기: 양성원.

3.2.2 놀이공간이 제공하는 놀이 유형

놀이공간은 놀이기구를 포함하며, 놀이공간이 제공하는 놀이 유형은 이동동작놀이, 비이동동작놀이, 감각운동놀이, 감각놀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 놀이공간이 제공하는 놀이 유형

감각운동놀이		그림 출처 : http://www.withus365.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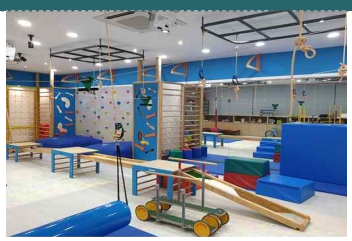	
비이동동작놀이		그림 출처 : www.littleplay.co.kr
미끄러지기	돌기	앞뒤, 좌우로 흔들기
감각놀이		그림 출처 : www.play31design.com / www.csc.go.kr
시각 자극 놀이	청각 자극 놀이	촉각 자극 놀이
이동동작놀이		그림 출처 : www.cs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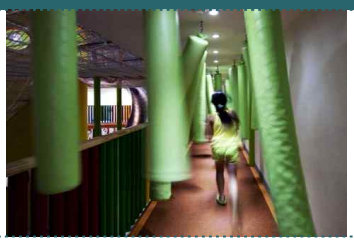		
걷기, 뛰기	기기	오르기

3.3 장애 및 비장애아동의 신체 활동 범위

3.3.1 장애유형에 따른 발달 특성

장애아동의 놀이는 질적, 양적으로 일반 아동과 차이를 보인다. 놀이가 덜 구조화되어 있으며, 놀이 유형은 단순하며 일반적으로 집단놀이 참여에 어려움을 보인다. 장애아동의 놀이를 바라볼 때 발달 정도, 장애 유형,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장애아동 나름의 고유 행동으로 놀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침을 많이 흘리는 중증 뇌병변장애아동은 목에 두른 손수건을 물고 씹는 것이 즐거운 놀이일 수 있고, 중도의 자폐성장애아동은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는 것이 즐거운 놀이일 수 있다. 지적장애아동에게 잡지의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최고의 놀이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흥미와 요구에 따라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놀도록 지원한다면, 모든 아동에게 놀이는 배움과 발달을 지원하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1)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 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진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이용하는 수는 높지 않고,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점자를 알지 못하므로 점자를 이용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 온도나 시간을 파악하거나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글자나 숫자를 인쇄한 상태로는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저시력인 경우 문자나 세밀한 도형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수직 이동 시 경사의 시작이나 끝 부분을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시야 협착이 있는 사람은 유도블록이 끊겨 있으면 길 찾기에 어려움이 있음
- 방향 안내사인을 볼 수 없어 길 찾기에 어려움이 있음
- 저시력의 경우 계단이나 단차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청각장애

청각장애인은 전혀 듣지 못하는 농, 청력의 일부가 남아 있는 난청을 포함하여 청각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수어, 구화, 지문자, 통역 등이 있다.

- 경고나 에러 메시지를 깨닫지 못함
- 시야 범위 외의 청각 정보를 입수하지 못함

- 긴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 메시지를 깨닫지 못함
-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3) 지체장애

지체장애인은 선천적 기형(골반탈구, 이분척추 등), 근골격계 이상(진행성 근위축증, 왜소증, 소아류마티즘 관절염 등), 신경계 이상(뇌성마비, 경련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벼운 보행의 곤란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운동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곤란을 갖는 경우도 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배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손이 닿는 범위가 좁고 한정되며,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음
-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놀이상황이나 시설에 접근이 곤란하며, 자동차나 침대, 놀이시설 등으로 이동이 곤란
-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거나 단차, 계단에서 수직 이동이 불가
- 휠체어로는 측면 이동이 불가
- 지하철역 승강장과 전동차의 틈새가 넓어서 이동이 곤란
- 경사로를 내려올 때 휠체어가 가속되어 위험

4) 지적장애

지적장애인은 인지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 상황판단, 기억, 추측, 추상적 사고 등의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낮고 식사, 배설, 옷 입고 벗기, 쇼핑이나 교통기관의 이용 등이 매우 힘들다.

- 어렵거나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나 말을 이해하기 곤란
- 제품 등의 조작이 서투름
- 충돌 등의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함

5)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인은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여 일상생활에 적응에 도움이 필요하다.

- 리듬 있게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들기, 팔과 손을 흔들기, 손뼉치기, 반복하기, 회전하며 손뼉치기, 빨리 달리기 등의 상동행동을 보임
- 물건을 이용하여 두드리기, 냄새 맡기, 돌리기, 흔들기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자기자극 행동을 보임
- 벽이나 마루, 기타 책상 등에 자신의 머리를 박거나 팔로 친다든지 혹은 자신의 주먹으로 머리나 얼굴을 때린다든지, 자신의 신체를 물거나 꼬집는 것과 같은 자해 행동을 보이기도 함
- 동일한 말을 반복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발성과 같은 반향어를 보이기도 함
- 많은 자폐성장애인은 다음의 표[6]와 같이 후각자극을 제외한 감각자극에 비정상적인 지각반응을 보임

표 4. 감각자극에 대한 자폐성장애인의 감각수용 이상 반응

원인	감각수용 이상반응
입력된 자극이 다른 유형의 감각자극으로 혼동을 유발	· 청각 자극인 소리가 시각 자극인 색깔로 처리되어 반응
자극 둔감 또는 무반응	· 바로 옆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물건이 부서져도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소리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소리에는 반응
청각적 정보의 왜곡	· 믹서기, 놀이기구 돌아가는 소리, 환풍기 소리 등은 꺼두어야 함 · 특정 소리의 주파수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
촉각이나 통각에 의한 행동 방해와 집착	· 옷의 상표 라벨, 스웨터의 질감 등 촉각에서 불안함을 느낌 · 심하게 다쳐도 울지 않거나 이상스러운 물건을 만지는 데 집착

6) 정서·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는 우울증, ADHD, 틱, 뚜렛증후군, 정신분열증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 활동의 양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타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잉행동을 보임
- 과제에 대한 주의집중이 짧고 산만함
- 싸움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항하거나, 우리, 소리 지르기, 물건 파손하기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보임
- 갑자기 뛰어가거나, 성인의 질문이 끝나기 전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과 같은 충동성을 보임

6) 김미숙 외(2011). 교사를 위한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창지사

3.3.2 제한 유형에 따른 활동특성 및 접근지원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아동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놀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휠체어가 필요한 아동도 있지만, 팔과 다리가 없어도 이동이나 놀이 참여에 어려움이 크지 않은 아동도 있으며, 이동이나 움직임에는 제한이 없지만, 놀이시설 이용 방법을 모르는 아동도 있다. 이와 같이 한 명 한 명의 아동은 서로 다른 지원 요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장애가 없는 아동의 경우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있다.

따라서 무장애 실내놀이터 구성 시 장애의 모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떤 발달영역이 지체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필요로 하는 지원 역시 다르다. 따라서 특정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 유형보다는 개별 아동이 가진 놀이 참여의 어려움 또는 놀이시설 접근의 어려움을 유형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무장애 통합놀이터 매뉴얼(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 2016)〉과,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 2018)〉에서는 놀이터 사용자 그룹의 제한 유형을 활동, 감각, 인지로 구분했다. 제한 유형에 따른 활동 특성과 접근 지원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제한 유형에 따른 활동 특성 및 접근 지원

제한 유형		활동 특성	접근 지원
활동	보조기구 사용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보행 보조기구나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접근로 · 보행이 용이하고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 · 보행이 용이한 평평한 바닥 · 지지하며 걸을 수 있는 손잡이 · 매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휠체어에서 벗어나 놀이에 참여하는 기회 · 신체 부위의 안정화를 위한 발 지지대와 같이 편안하고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앉는 장치 · 손으로 조작하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자 양 옆에 단단한 소재를 대어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 · 휠체어 조작이 유용하도록 놀이공간 주변에 여유공간 마련
		계단, 긴 거리, 가파른 경사로 사용이 어려움	
		발이 흔들리고 미끄러질 수 있음	
	목발, 지팡이 사용	뛰기 어렵고 넘어지기 쉬움	
		계단, 긴 거리, 가파른 경사로 사용이 어려움	
		발이 흔들리고 미끄러질 수 있음	
	수동휠체어 사용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음	
		앉아서 활동하거나 옮겨 앉아서 활동 가능	

제한 유형		활동 특성	접근 지원
	전동휠체어 사용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음	
		앉아서 하는 활동 가능	
	기타	줄이나 기둥을 잡거나 쥐기 어려움	
		무거운 물체를 밀어내기의 어려움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 기존 놀이시설 사용이 어려움	
감각	저시력	부딪치거나 넘어지기 쉬움	·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접근로 상의 도로 경계, 발밑의 질감 변화 등 · 눈으로 보는 중요한 정보를 소리로 전환한 자료 또는 장치 · 놀이(또는 놀이시설 사용) 경험을 위한 반복 활동의 기회 · 화장실과 출구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관된 색상 코드 · 놀이공간과 주차 공간 등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의 시야 확보 · 입구에 놀이공간 등을 안내하는 촉각지도 제공 · 공간을 구분하고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제한된 양의 향기가 나는 식물 등의 후각자극 사용
		놀이터에서 정상 시력의 아동보다 덜 활동적임	
	난청	다른 장애에 비해 대부분의 많은 활동이 가능	· 중요한 정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 · 잘 설계된 놀이 공간 시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판 등 제공 · 놀이터가 크다면, 놀이 공간의 각각에서 상징적인 소리 또는 촉감 제공
		다른 아동의 목소리나 보호자의 지시를 듣지 못할 수 있음	
인지	낮은 인지	운동능력이 떨어짐	· 부딪치거나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환경 제공 ·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한 장소 제공 · 시소, 그룹 그네와 같이 협력 또는 시선을 마주치게 하는 놀이 제공
		놀이방법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이해 부족	· 놀이(놀이 시설) 사용법 등을 설명하는 그림, 안내문 또는 동영상 등 제공

3.4. 장애아동의 놀이 특성

3.4.1 장애유형에 따른 놀이 특성 및 놀이지원

1) 시각장애

○ 시각장애아동의 놀이 특성

- 시각장애아동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는 종이 소리, 악기 소리 등 소리 듣기
- 놀이를 시작할 때에는 놀잇감, 사물을 탐색하기 위해 더듬기, 밀기 등을 사용함

○ 시각장애아동의 놀이지원

- 놀이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준점을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

  예) 너의 바로 앞에 미끄럼틀이 있어. 미끄럼틀 왼쪽으로 세 걸음 가면 계단이 있어.
- 익숙한 사물의 색깔, 밝기, 모양, 크기에 대해서 설명
- 놀잇감, 놀이, 사물을 탐색하기 위하여 손을 뻗거나 기어가기, 다가가기를 할 때 격려
-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

  예) 음악 소리, 목소리가 나는 놀잇감 또는 장치 마련

2) 청각장애

○ 청각장애아동의 놀이 특성

- 청력 손실로 놀이를 즐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 친구들의 놀이를 관찰하거나 모방하는 시간이 많음
- 혼자 놀이를 즐김
-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음

○ 청각장애아동의 놀이지원

- 주위에 소음이 많으면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소음이 적은 놀이 공간 제공
- 이야기할 때 입 모양을 과장하지 말고, 청각장애아동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
- 소리로 제공되는 놀이 정보를 그림과 문자 등 시각 정보로 함께 제공
- 서로의 눈을 마주 보고 소통하는 놀이 제공

3) 지체장애

○ 지체장애아동의 놀이 특성

-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음
- 신체적 움직임에 제한은 있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다면 놀이 참여 가능
-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른의 활동 지원이 제공된다면 다양한 경험과 놀이가 가능

○ 지체장애아동의 놀이지원

- 지체장애아동이 자유롭게 놀이기구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이나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놀이시설, 자료, 도구 지원
-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 확보
- 놀이 참여와 움직임이 가능한 바른 자세를 잡아주기 위해 보조기구 활용
- 지체장애아동이 힘들어하거나 특정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놀이 지양
- 받침대 엎드리기, 특별히 설계된 의자에 앉기, 옆으로 눕히기 등 자세 잡아주기
- 다양한 상황에서의 시각적 탐색 지원: 지체장애아동의 활동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환경적 장애물 제거, 지체장애아동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위치에 시각적 탐색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잇감 배치

4) 지적장애

○ 지적장애아동의 놀이 특성

-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래에 비하여 놀이 흥미와 관심에 차이가 있음
- 자신의 연령만 고려했을 때, 놀이환경 또는 놀잇감의 수준이 높아 흥미와 관심이 떨어질 수 있거나 참여하지 않으려 할 수 있음
-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상황에 참여가 어려움

○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지원

- 지적장애아동이 자신의 수준이 맞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놀이나,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처음 시도가 어려울 경우, 성인이 시범을 보이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
-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제공

5) 자폐성장애

○ 자폐성장애아동의 놀이 특성

- 자폐성장애아동은 일반적으로 또래의 놀이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나타냄

- 불빛, 특정 촉감을 선호하는 등 감각적인 물체나 사물들을 가지고 노는 경향이 있고, 한 가지 유형의 놀잇감에만 뚜렷한 선호를 보이기도 함
- 혼자 놀이하거나 좋아하는 놀잇감만 가지고 놀이
- 반복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함
- 다른 친구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도 놀이를 제안하거나 함께 놀이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자폐성장애아동의 놀이지원
- 자폐성장애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인정
- 혼자 놀이하는 모습을 인정
-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고, 놀이 방법을 나누어 설명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
- 억지로 놀이 참여를 강요하지 않기
- 손으로 하는 자기자극 행동이 있는 아동의 경우, 손으로 할 수 있는 놀이, 활동, 놀잇감을 제공
- 놀이를 거부할 때 강요하지 않기

6) 정서·행동장애

○ 장애아동의 놀이 특성
- 성인, 친구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임
- 놀이 규칙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고립행동, 과도한 민감성, 과도한 활동, 낮은 반응 등의 다양한 행동 특성을 보임
- 짜증, 떼쓰기, 울기 등의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보임

○ 장애아동의 놀이지원
- 다양한 부적응 행동,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마음을 이해
- 놀이상황에서 ‘하지마’라고 말하기보다는 ‘원하는 행동’을 말하기 (예 : ‘뛰지마!’라고 말하기보다는 ‘걸어서 가자’라고 말하기)
-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놀이 제공(점토, 볼풀에서 볼 던지기 등)
- 처음부터 많은 친구들과 놀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두 명의 친구들과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놀이 필요
- 놀이 시도, 놀이 참여, 놀이 과정에서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놀이공간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시(예 : 질서, 놀이기구 이용 규칙 등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잘 보이게 안내판 설치)

- 복잡한 설명보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 제공

3.4.2 제한 유형에 따른 놀이 특성 및 필요 지원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발달적 특성을 보이며, 비장애아동 역시 서로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 실내놀이터는 모든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제한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 지원을 고려하여 모든 아동의 놀이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놀이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유형과, 그때 나타나는 놀이 특성 및 필요 지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 제한 유형에 따른 놀이 특성 및 필요지원

제한 유형	놀이 특성	필요지원
활동	·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하는 경우 놀이 참여 제약 · 앉아서 하는 놀이나 손이나 팔을 사용하는 놀이를 주로 함	· 의자나 보조기구 교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보조기구 제공
감각	· 놀이 능력은 비장애아동과 동일 · 혼자 놀이하는 비율이 높음 · 상상놀이 시 상상이 적고 물리적 환경의 조작이나 탐색이 적음 · 협동놀이가 적음	· 함께 놀 수 있는 놀잇감 놀이시설 필요 · 제한된 감각자극 이외의 자극 활용 지원 · 조용한 놀이공간 제공
인지	· 운동능력이 떨어짐 · 놀이 또는 놀이시설 이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참여가 낮을 수 있음	· 기존 놀이기구 활용과 함께 안전에 대한 고려 필요 · 동일한 놀이 또는 놀이시설에 다양한 수준을 포함시켜 제시

3.4.3 놀이 환경이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장애가 있다 해도 항상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부적절한 환경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적절한 환경적 요소는 특정 장애아동에게 더 큰 위험으로 작용될 수 있다. 부적절한 환경적 요소와 특정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7]와 같다.

표 7. 환경적 어려움이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부적절한 환경적 요소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시끄럽고 산만한 환경	·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잔존 청력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 · 자폐성장애아동의 경우 청각적으로 감각 정보 처리가 특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이 가져오는 불안과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음
복잡하고 분주한 환경	·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특정 장애를 지닌 아동 또는 감각 자극에 민감한 아동의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	· 장애물이 놓여 있는 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시각장애아동 또는 ADHD 아동과 같이 주변 환경을 살피기 어려운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음
예측이 어려운 환경	· 현재 하고 있는 놀이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안정감을 얻을 수 없음 · 자폐성장애아동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행동 문제를 예방할 수 없으며 놀이 참여를 매우 힘들어 할 수 있음

가능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장애아동이 안정감을 얻고 놀이 및 놀이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놀이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의자나 놀이시설 의자를 교환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

둘째, 줄을 서거나 앉는 자리 표시

셋째, 소근육이 약한 아동을 위한 보조장치 마련

넷째, 놀이방법, 놀이 참여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각 자료(그림, 문자) 제시

다섯째, 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접근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놀이로 볼 수 어렵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놀이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참여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한다.

놀이 참여가 어려운 아동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7) 이소현, 이수정, 박병숙, 윤선아(2018).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 국립특수교육원: 충청남도

첫 번째 유형은 참여가 제한적인 아동이다. 이 유형의 아동은 놀이 중 어른이나 친구, 놀잇감 중 특정 대상하고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참여 시간이 짧은 아동이다. 이 유형의 아동은 또래에 비해 놀이 참여 시간이 매우 짧은 아동이다.

세 번째 유형은, 참여 수준이 낮은 아동이다. 이 유형의 아동은 놀이에서 이탈하지는 않지만 참여하여 놀이하는 수준이 부적절하거나, 단순한 놀이를 반복하거나, 또래의 놀이를 바라보기만 한다.

물론 교사가 상주하는 교육적 환경이라면 장애아동의 놀이를 관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실내놀이터와 같이 한 명 한 명의 아동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적 목표가 제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반 실내놀이터에서와 달리 활동 특성에 따른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활동 방법 및 난이도, 놀잇감에 대한 수정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놀이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 특성에 따른 참여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활동 및 놀이 특성에 따른 참여 지원

활동 및 놀이 특성	참여 지원	
	내용	영역
· 쉽게 산만해지는 아동나 탐색의 시간이 긴 아동	· 시끄러운 놀이공간과 분리하여 조용한 놀이공간 제시	물리적 환경
· 또래 관계 또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 상호작용 기회가 많은 역할놀이, 블록놀이, 게임 등의 놀이공간 마련	
· 많은 수의 또래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아동	· 다양한 크기의 공간, 집단의 크기 및 참여인원 수 조절	
· 놀이공간, 놀이시설, 대기시간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놀이 참여가 어려운 아동	· 공간, 놀이시설, 대기시간 등에 대한 시각정보와 함께 명확한 공간의 구조화	
·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서서 하는 놀이에 참여가 어려운 아동	· 또래와 함께 서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탠더 등 특수 장비 제공	
· 또래보다 성인과의 상호작용과 놀이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아동 · 놀이 방법, 놀이시설 이용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아동	· 아동의 이동을 돕거나 놀이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배치 · 보조인력 또는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놀이방법, 놀이시설 이용 방법 설명	사회적 환경

활동 및 놀이 특성	참여 지원	
	내용	영역
· 실패의 경험이 많아 놀이 참여에 대한 낮은 동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아동	· 똑같은 놀이시설이라도 시설물의 높이, 움직임의 강도, 달성해야 하는 개수 등의 수준을 다르게 제공하여 참여 유도	활동 방법 및 난이도
· 시각 또는 청각 등의 감각정보 활용이 어려운 아동	· 동일한 내용을 청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으로 제공	
· 휠체어에서 일반 의자 또는 놀이시설로 옮겨 타는데 제한이 있어 협력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음	· 휠체어를 탄 아동(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이 포함되어 함께 작동하는 놀이시설을 배치하여 협력의 기회 제공	
· 저시력 아동이 놀이공간을 찾기 어렵거나, 놀잇감 사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	· 선과 색 대비가 뚜렷한 놀잇감 배치 · 색, 크기, 모양 조절	놀잇감 수정
· 소근육 조작이 어려운 아동		

Chapter 4

무장애 실내놀이터 설계

4.1 관련 법규

4.2 항목별 설계 기준

Chapter 4 무장애 실내놀이터 설계

4.1 관련 법규

4.1.1 아동의 놀권리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은 세계가 아동 보호를 할 책임에 대한 고려로서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선포하였고, 아동의 안전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1989년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발표하였다[8].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으로, 4대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하에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협약이다[9].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1989년 채택, 1991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협약의 제31조[10]는 놀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 조)

2) 국내법과 조례

국내 법규를 살펴본 결과 무장애 또는 통합 실내놀이터에 관련한 법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에 국내법에서 놀이공간에 관련하여서는 아동 시설 및 놀이시설 관련법을, 접근성에 관련하여서는 장애 관련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2022년 말 현재 실내놀이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인천광역시, 서울시 도봉구·강남구·양천구·중랑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평창군·삼척시로 모두 8곳이다.

8) 아동 안전을 위한 국내·외 아동놀이시설물 및 놀이용품의 안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9)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10) 법제처 https://www.law.go.kr

표 9. 실내놀이터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현황(2022년 말 기준)

	자치단체	명칭	이용 연령	장애아동 규정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 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4 세~12 세 어린이	
2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 세 이하 어린이	
3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6 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4	서울시 양천구	양천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6 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5	서울시 중랑구	중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6 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6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2 세 이하 어린이	제 6 조(기능)
7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세 미만 어린이	제 4 조(기능)
8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 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인천광역시의 경우 '실내 어린이놀이터', 서울시의 자치구 및 화성시, 평창군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삼척시는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기능,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체로 유사하지만 이용대상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 강남구·양천구·중랑구와 화성시, 삼척시는 미취학 영유아만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봉구와 화성시, 평창군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다.

8개 자치단체 조례 가운데서 무장애 실내놀이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곳은 화성시와 평창군으로 각각 제6조와 제4조에서 장애어린이를 위한 실내놀이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6 조(기능)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인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

3.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

4. 놀이를 통하여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및 편의시설 제공. 다만, 놀이터의 특성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4.1.2 아동 및 어린이시설 관련법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 놀이시설법) / 행정안전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1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 조 (정의)	1.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2 조 제 9 호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11 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 조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 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 1 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 검사기관으로부터 2 년에 1 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 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 놀이시설〉(제 2 조 관련) 5. 「아동복지법」 제 3 조 제 10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 7 조 (설치검사 등)	② 제 1 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 조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법 제 11 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법) /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 ·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제5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년~2024년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표 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2 조 (정의)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 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17 조 (안전 인증 등)	①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 · 수입하거나 1 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 2 조 제 1 항 관련)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 적용 안전기준 2. 어린이 놀이기구 / 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 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3)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행정안전부

표 12.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시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 규정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 인증기준 부속서 2 의 규정에 따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놀이기구, 조형물에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 순환시켜 이용하는 기타 놀이기구(물이용형)는 그 외의 다른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장소의 공간 내에 설치될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화재발생 시 피난장치로 사용되는 탈출용 미끄럼틀이나 소방관 지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비고 1 : 이 기준은 놀이시설 및 기구에 의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술적 측면의 최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놀이시설에서의 사용자 안전은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합한 놀이행동을 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오용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안전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비고 2 :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놀이시설 사용 시 성인이 동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비고 3 : 이 기준은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위한 것이므로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된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놀이시설 및 기구 설치와 관련된 안전사항인 기구의 자유공간, 하강공간, 최소공간, 충격구역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초물 검사를 위주로 구성한다. - 비고 4 : 놀이기구 자체의 움직임이 크거나, 놀이기구의 특성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과 같은 개별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요건에 관한 규정을 II~IX에서 제시하고 있다. - 비고 5 : 놀이기구의 재료,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사항은 제품안전인증검사 시 실시한다. - 비고 6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본 설치검사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 이외에, 정기시설검사기준 중 10. 놀이시설별 추가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비고 7 : 실내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 인증기준 부속서 2(제 8 부. 폐쇄형 놀이기구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인증기관에서 2 년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4. 안전요건	4.1 하강에 대한 보호 4.2 자유하강 높이의 측정 4.3 공간과 영역의 결정 4.4 충격흡수용 표면재 4.5 얽매임에 대한 보호 *세부기준 있음
5.기구의 마감처리	5.1 놀이기구 표면 및 끝처리 5.2 목재 5.3 금속재 5.4 합성수지재 5.5 너트 및 볼트 5.6 〈삭제〉 5.7 충격흡수용 표면재 *세부기준 있음
6. 기구의 움직이는 부분(구동부분)	*세부기준 있음
7. 기초물	*세부기준 있음

4) 실내공기질 관리법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2 조 (정의)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12.「영유아보육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어린이집 12 의 2.「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제 11 조 (오염물질 방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제 2 조제 16 호의 2 에 따른 건강 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 2 조 (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2. 연면적 430 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 의 2. 연면적 430 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5) 환경보건법 / 환경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 · 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 ·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년마다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표 14.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제 2 조 (정의)	7. "어린이"란 13 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기본이념)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제 23 조 (어린이활동 공간의 위해성	⑥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3 조의 2 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관리)	정한다. 〈신설 2014. 3. 24.〉 1.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8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 13 호의 영업소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별표 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 16 조제 1 항 관련) *세부기준 있음
제 16 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기준)	①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 1 조의 2 제 1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 1 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1 조에 따른 기준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 조제 3 항에 따른 기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 11 조의 8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 23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환경안심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1.「환경보건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2.「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5 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영 제 1 조의 2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학교보건법」 제 4 조에 따른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 3.「석면안전관리법」 제 22 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4.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 년간「환경보건법」,「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4.1.3 장애인 관련법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 보건복지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 10 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 10 조의 5 부터 제 10 조의 9 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정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의 5 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 3 조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 노유자시설 (1)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 1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 4 조 (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 조제 2 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4 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 3 조 (안내표시 기준)	법 제 8 조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 BF)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일시적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11)]

인증 대상물은 건축물,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 나뉜다. 건축물 인증지표의 경우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등 6개의 평가부분으로 나뉘며, 각 평가부분은 다시 평가범주로 구분이 되고, 평가범주 하위에 평가항목이 있다.

표 1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물 인증 평가항목

분류	세부분류	항목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1.1.2 유효폭
		1.1.3 단차
		1.1.4 기울기
		1.1.5 바닥 마감
		1.1.6 보행장애물
		1.1.7 덮개
	1.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1.2.2 주차면수확보
		1.2.3 주차구역크기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2008) 제1조(목적)

분류	세부분류	항목
		1.2.4 보행안전통로
		1.2.5 안내 및 유도표시
	1.3 출입구	1.3.1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1.3.2 출입문의 형태
		1.3.3 유효폭
		1.3.4 단차
		1.3.5 전면 유효거리
		1.3.6 손잡이
		1.3.7 경고블럭
2. 내부시설	2.1 일반출입문	2.1.1 단차
		2.1.2 유효폭
		2.1.3 전면 유효거리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2.2 복도	2.2.1 유효폭
		2.2.2 단차
		2.2.3 바닥마감
		2.2.4 보행장애물
		2.2.5 연속손잡이
	2.3 계단	2.3.1 형태 및 유효폭
		2.3.2 챌면 및 디딤판
		2.3.3 바닥 마감
		2.3.4. 손잡이
		2.3.5 점형블록
	2.4 경사로	2.4.1 유효폭
		2.4.2 기울기
		2.4.3 바닥마감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2.4.5 손잡이
	2.5 승강기	2.5.1 전면활동공간
		2.5.2 통과 유효폭
		2.5.3 유효 바닥면적
		2.5.4 이용자 조작설비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2.5.6 수평 손잡이
		2.5.7 점자블럭
3. 위생시설	3.1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3.1.2 안내표지판
	3.2 화장실의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3.2.2 바닥마감
		3.2.3 출입구(문)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3.3.2 활동공간
		3.3.3 형태

분류	세부분류	항목
		3.3.4 손잡이
		3.3.5 기타설비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3.5 세면대	3.5.1 형태
		3.5.2 거울
		3.5.3 수도꼭지
	3.6 욕실	3.6.1 구조 및 마감
		3.6.2 기타설비
	3.7 샤워실 및 탈의실	3.7.1 구조 및 마감
		3.7.2. 기타설비
4. 안내시설	4.1 안내설비	4.1.1 안내판
		4.1.2 점자블럭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4.2 경보 및 피난설비	4.2.1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5. 기타시설	5.1 객실 및 침실	*본 보고서 내용과 관련없음
	5.2 관람석 및 열람석	5.2.1 설치율
		5.2.2 설치위치
		5.2.3 관람석의 구조
		5.2.4 열람석의 구조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5.3.1 설치위치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5.5 피난구 설치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5.5.2 피난의 구조
	5.6 임산부 휴게시설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5.6.2 내부구조
6. 기타설비	6.1 비치용품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표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공원 인증 평가항목

분류	세부분류	항목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1.1.2 유효폭
		1.1.3 단차
		1.1.4 기울기
		1.1.5 바닥 마감
		1.1.6 보행장애물

		1.1.7 덮개
	1.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1.2.2 주차면수확보
		1.2.3 주차면
		1.2.4 보행안전통로
		1.2.5 안내 및 유도표시
	1.3 출입구	1.3.1 진출입 통제 계획
		1.3.2 공원 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2. 유도 및 안내시설	2.1 안내설비	2.1.1 안내판 설치
		2.1.2 안내판의 정보
		2.1.3 통합안내 설비
		2.1.4 경고시설
3. 위생시설	3.1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3.1.2 안내표지판
	3.2 화장실의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3.2.2 바닥마감
		3.2.3 출입구(문)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3.3.2 활동공간
		3.3.3 형태
		3.3.4 손잡이
		3.3.5 기타설비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3.5 세면대	3.5.1 형태
		3.5.2 거울
		3.5.3 수도꼭지
4. 편의시설	4.1 접근 및 이용성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4.2 공원시설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4.3 기타설비	4.3.1 휴식공간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5. BF 보행의 연속성	5.1 공원 내부 보행로	5.1.1 BF 보행로의 지정
		5.1.2 보행안전 공간
		5.1.3 단차
		5.1.4 기울기
		5.1.5 바닥 마감
		5.1.6 자전거 도로와의 접점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4.1.4 가이드라인 및 연구

1) 경기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경기도는 아이러브맘카페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에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실내놀이터는 26개 시·군에 총 78개소이고, 경기도는 22개소의 아이사랑놀이터를 신설하여 2022년까지 총 100개소를 설치·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민간시장에서 제공되는 상업적이고 일시적인 호기심 충족을 위한 공간과는 차별화되 는 공공성을 갖춘 아이사랑놀이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민하여 매뉴얼에 반영하였다.

표 18. 경기도 아이사랑놀이터 매뉴얼의 내용

구분	항목	세부항목
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설치·운영주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설치방식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 설치
	설치장소	-
	적용법령	-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항	소화기
		옥내 소화전
		화재발신기 및 감지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요령
	위해성 관리에 관한 설비기준	-
	교구 및 실내자재기준	-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공기질 상태 고지	-
	CCTV 설치	-
	신고등록 및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신고
		어린이활동공간검사(환경보건법 제 23 조)
운영 매뉴얼	사업인력배치 - 놀이지도사	놀이지도사 지원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놀이지도사의 업무	놀이지도사 업무 개요
		놀이지도사 세부 업무
		육아정보 및 콘텐츠 지원
		: 육아정보 수집 기획 및 DB 화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 관리
		사업 홍보
		어린이집 놀이지원
	행정사항	주체별 역할분담

		사업 운영비 기준
		놀이지도사 채용 및 임면
	놀이지도사 교육	교육 개요
		교육 세부 내용
	아이사랑놀이터의 운영일반사항	운영요일 및 운영시간
		이용연령 및 대상
		관외 거주자의 이용
		운영인력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아이사랑놀이터 운영의 실제	자유놀이실(영유아놀이터)
		놀이(체험)프로그램
		장난감도서관
		수유실
		부모쉼터
		상담실

2)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2018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시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률이 정리되어 있다.

표 19. 키즈카페 운영 관련 단어 정의

단어	정의
키즈카페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 2 조제 9 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어린이제품:	만 13 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단어	정의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안전인증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표 20. 업종 신고에 따른 관련 법규

구분	항목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경우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2)
	안전성검사 및 점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40 조제 4 항 등)
	안전교육(「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42 조)
	보험가입(「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11 조제 2 항)
	사고보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33 조의 2)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 등의 취급(「식품위생법」 제 3 조)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식품위생법 제 7 조제 1 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 5 장)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 40 조)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 41 조)
	식품위생업자 준수사항(「식품위생법」 제 44 조제 1 항)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2 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5 조, 제 16 조)

	안전교육(「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 20 조)
	사고배상 보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 21 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준수사항
어린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 20 조제 2 항)	-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제 23 조)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환경보건법」제 23 조)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기준(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및 하위법령)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소방시설법 제 22 조, 다중이용업소법 제 8 조)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법 제 13 조의 2 제 1 항)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3) 사이즈코리아를 활용한 장애인용 보조기구 디자인 가이드라인 / 국가기술표준원, 2016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주한 “2016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와 인체치수 정보의 활용 및 보급사업” 중 ㈜알마덴디자인리서치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세부 과제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수동·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의 사이즈와 그와 동반되는 인체 치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등 기본적으로 국제표준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은 장애인법(ADA)과 그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건조환경 및 그에 따른 시설에 대한 치수와 설치요소의 개수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표준) 개요 함께 어린이 놀 각 나라별 장애관련 법과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법 및 가이드로 정리할 수 있다.

4.1.5 국제표준 가이드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표준[12)]

ISO는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지적,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분야에서 국제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인 표준화 및 그 관련 활동의 발전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2월 23일에 설립된 비정부간 기구로서, 전기 관계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규격을 제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이다[13)]. 「ISO 21542, Building construction –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12) https://www.iso.org/standard
13) 네이버지식백과, 전세계 규격사전, 2010. 6. 25., 국제규격연구회)

built environment」를 통해 건조환경의 접근성 내용 기준 및 세부치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ISO 8124, Safety of toys」를 통해 출생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장난감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에 관련 테스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럽표준위원회(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유럽 표준(EUROPEAN TECHNICAL STANDARDS[14])

유럽 공동체(EC) 및 유럽 자유 무역 지역(EFTA) 회원국 국가 표준 기관·단체의 연합으로 유럽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단일화(통합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표준 제정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유럽 전기통신 표준 협회(ETSI)와 유럽 전기 표준 회의(CENELEC)가 관장하지 않는 분야의 표준을 직접 제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유럽 표준 위원회(CEN)가 산출하는 표준을 ENs라고 하는데, 이것을 CEN이 발표하지 않고 각국 표준 기관으로 하여금 자국 내의 세부 시행 절차와 함께 발표하고 출판하도록 하고 있다[15]. 「EN 1176」는 공공 놀이터 환경, 놀이터 장비 및 표면 처리 기준과 관련된 안전 기준[16]으로 'EN1176-1'은 놀이터의 일반안전요건, 'EN1176-2~7'은 놀이터시설별 안전요건, 「EN 1177」는 놀이터 장비에 대한 EN 1176-1의 안전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놀이터 바닥재 충격감소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을 제공한다[17].

표 21. 유럽표준 EN 1176

Part 1	General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Part 2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swings
Part 3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slides
Part 4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runways
Part 5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carousels
Part 6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rocking equipment
Part 7	Guidance for installation, inspe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Part 10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fully enclosed play equipment
Part 11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spatial networks.

14) http://www.en-stanudard.eu
15) 네이버지식백과,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6) BS EN 1176-1:2017
17) BS EN 1177: 2018

3) 「Playground equipment accessible for all children」

2007년 유럽표준위원회(CEN)은 놀이터에서 장애아동의 접근성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고, 2012년「Playground equipment accessible for all children」라는 기술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의 아동 접근성 및 이용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ICF(기능, 장애, 건강에 관한 국제 분류)의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관점에서는 안전기준 EN1176을 보완하고 있다. 수치가 아닌 장애아동의 놀이 지원을 위해 각각의 시설물 디자인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4.1.6 국외 현황

국내와 마찬가지로 놀이공간을 만들 때 놀이시설물에 관한 안전기준과 놀이용품에 관한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나라별로 구분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19].

표 22. 나라별 놀이시설물 안전 기준 및 개발기관

나라별	기관명	안전기준(제정년도)
미국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Standard for Public Playground Equipment and Standard for Playground surfacing (1995)
미국	The 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USCPSC)	A Handbook for Public Playground Safety, vol I&II (1994)
영국	British Standard Institution(BSI)	Play Equipment Intended for Permanent Installation Outdoor(1994)
캐나다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CSA)	Draft for Children's play Spaces and Equipment(1984)
호주	Child Accident Prevention Foundation of Australia(CAPFA)	Playground Equipment for park, School and Domestic Use(1983)
독일	Deutsche Institut fur Normung(DIN)	Playground Equipment for Children: Concepts, Safety Requirement, Testing (1985)
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CEN)	Playground Equipment (1998)
스웨덴	Standardiseringskommissionen I Sverige(SIS)	Swedish Standard (1989)

18) KRIEA 포럼「무장애 통합놀이터의 기준과 사례」강사 김연금 발표 내용 중, 2022.11.22.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최
19)「아동 안전을 위한 국내·외 아동놀이시설물 및 놀이용품의 안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신동주 외 1인 / 1999, 한국아동학회

표 23. 나라별 놀이용품 안전 기준 및 개발기관

나라별	기관명	안전기준(제정년도)
미국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Standard for Public Playground Equipment and Standard for Playground surfacing (1995)
미국	The 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USCPSC)	Consumer Product Safety Act(1972)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1960)
영국	British Standard Institution(BSI)	British Standard for Toy Safety
일본	제품안전협회 일본상품과학연구소	소비자생활제품안전법(1986 년 개정) 완구안전기준(1997)
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CEN 71: Toy Safety (1998)
스웨덴	Standardiseringskommissionen I Sverige(SIS)	Act on Toy Safety: Swedish Standard (1998)
OEC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afety for Toy: ISO-8859-1 (1998)

1) 미국

어린이 놀이터 및 놀이기구는 미국 장애인법인 ADA 규격을 의무적으로 맞추어야 하는 법규는 없으나, 대부분의 제품은 ADA 규격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국공립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조건으로 1) 제조 업체가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회원이어야 함. 2) 제품 품질이 ASTM Standard F 1487 조건에 부합해야 함. 3) 제품이 미국 CPSC 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20].

①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ADA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미국 민권법으로, 장애는 ADA에서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의된다[21].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는 「ADA에 따른 접근성 가이드라인 (ADA Accessibility Guideline, ADAAG)」과 「접근성을 위한 ADA 표준 디자인((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 내의 접근성 위원회(United States Access Board)는 ADA 및 ADAAG에 따라 놀이공간의 접근성을 위한 매뉴얼인 「접근 가능한 놀이공간(Accessible Play Areas)」을 개발하였다.

20) https://dream.kotra.or.kr 상품·산업 〉 상품DB 「미국 어린이놀이터 시장 동향」, 2015.02.27
21) playworldsystems.com/inclusive

표 24. Accessible Play Areas 기준 예시

구분	기준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의 통로	· 최소 50% 이상 접근 가능한 통로에 설치 · 통과 유효폭 36 인치(915mm) 이상 · 조합놀이대의 구조상 유효폭 확보가 어려울 때는 최소 32 인치(815 mm) 유효폭 확보, 단 통과 길이 24 인치(610mm) 이내 · 경사로의 상승 높이는 12 인치(305mm) 이내 · 통로의 양측에는 높이 20 인치(510mm)~28 인치((710mm) 높이의 손잡이 설치
경사로	· 높낮이가 있는 놀이기구의 최소 25%는 경사로 설치 · 높낮이가 있는 놀이기구를 연결하는 경사로의 상승 높이는 12 인치(305mm) 이내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내 · 경사로의 유효폭은 36 인치(915mm) 이상 · 경사로 전후면과 경사로 내 회전공간은 최소 60 인치(1525mm) 이상 수평참 확보
손잡이	·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를 연결하는 경사로 양측에는 손잡이 설치 · 손잡이는 벽에서 최소 1 1/2 인치(38mm) 이상 이격
옮겨타기 시스템	·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가 20 개 미만일 경우 놀이 구성 요소의 최소 50%는 옮겨타기 시스템 설치 ·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가 20 개 이상인 경우 놀이 구성 요소의 25% 이상 경사로로 연결하고, 최대 25% 이내에서 옮겨타기 시스템으로 연결 · 옮겨타기 플랫폼 너비는 최소 24 인치(610mm)
옮겨타기 플랫폼	· 옮겨타기 플랫폼의 높이는 11 인치(280mm) ~ 18 인치(455mm) · 옮겨타기 플랫폼의 너비 최소 24 인치(610mm) · 옮겨타기 플랫폼의 깊이 최소 14 인치(35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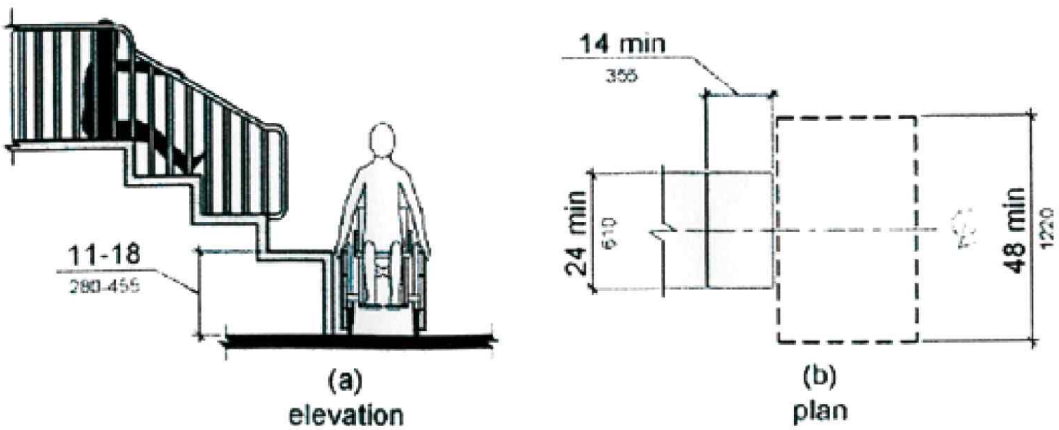

구분	기준
옮겨타기 계단	· 옮겨타기 계단의 디딤판 너비 최소 24 인치(610mm) · 옮겨타기 계단의 디딤판 길이 최소 14 인치(355mm) · 옮겨타기 계단의 챌면 최대 높이 8 인치(205mm)
옮겨타기 지지대	옮겨타기 플랫폼과 옮겨타기 계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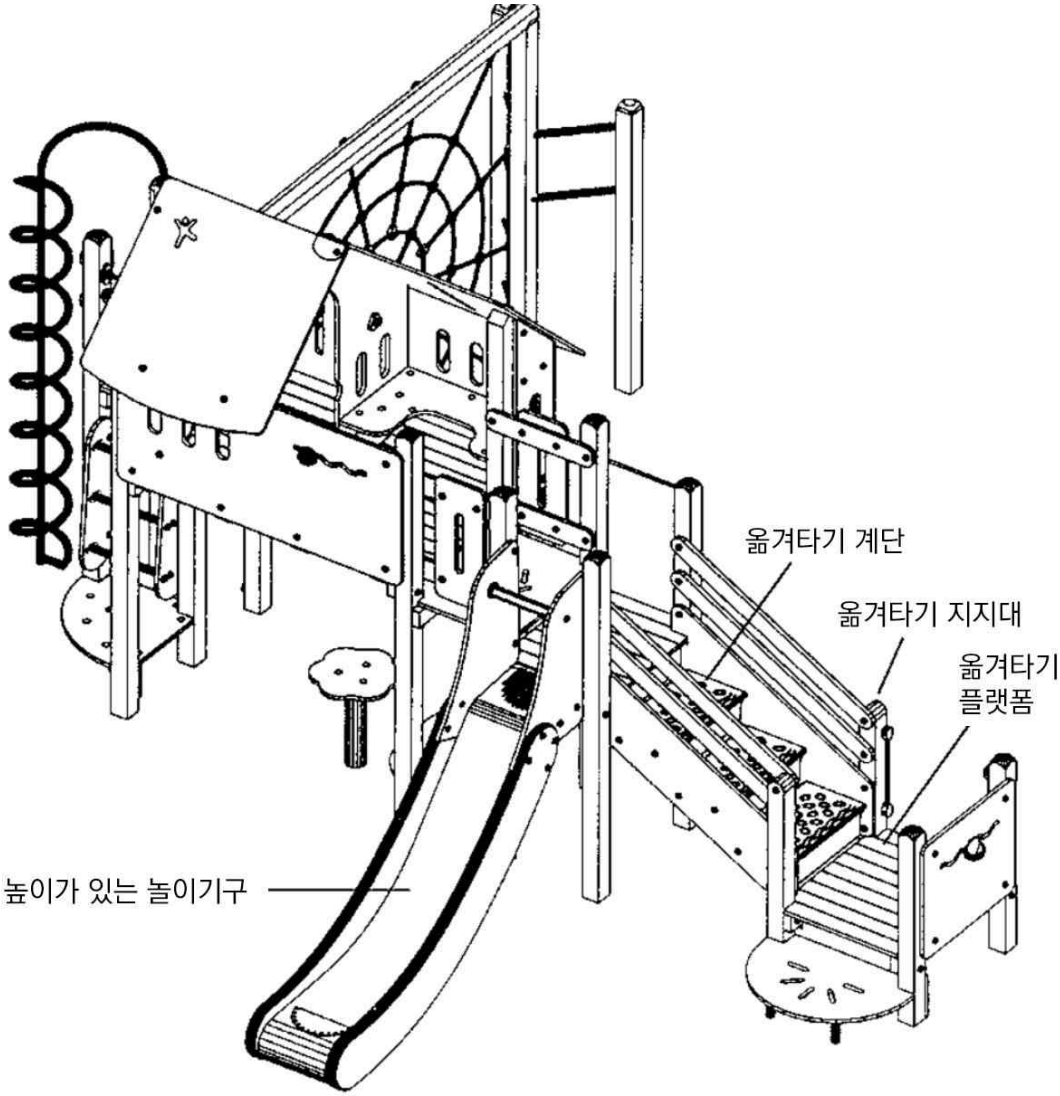

회전공간	· 휠체어가 180 도 회전하는 데 필요한 공간 · 회전반경 : 60 인치(1525mm) · T 자형 회전공간의 너비/깊이 60 인치(1525mm)· 모든 방향에서 · 모든 방향에서 1:48 이하의 기울기

구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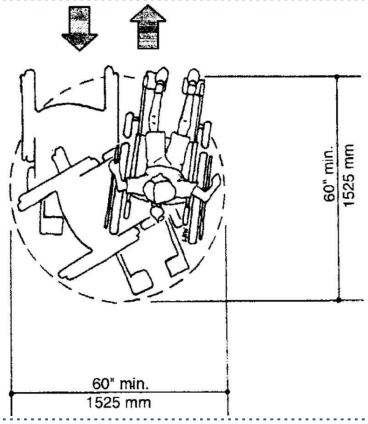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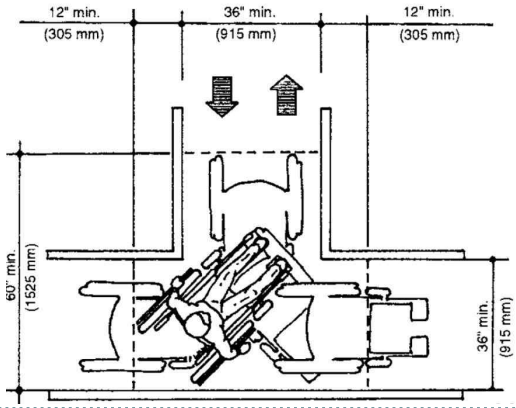
놀이테이블	· 모래와 물놀이, 모임 및 기타 활동을 위해 설계된 테이블 · 최소 높이 24 인치(610mm) · 최소 너비 30 인치(760mm) · 최소 깊이 17 인치(430mm)
손 도달범위(높이)	· 3~4 세 아동용 20~36 인치 · 5~8 세 어린이용 18~40 인치 · 9~12 세의 경우 16~44 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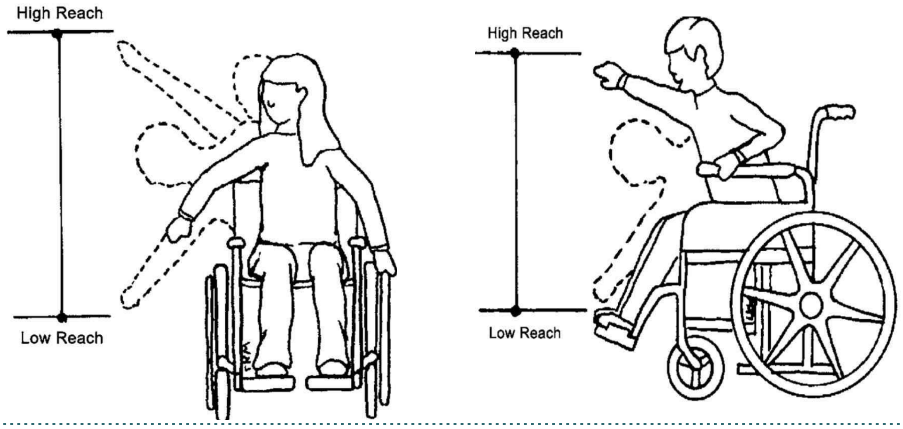	
	*자료 출처 ACCESSIBLE PLAY AREAS

②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USCPSC,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소비자제품안전법(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의해 1972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연방 정부기관으로 아동 놀이용품의 안전기준뿐 아니라,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 문헌과 아동의 놀이 관찰을 근거로 하여 상품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놀잇감 사용자의 연령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다[22].

특히, 어린이 및 육아용품 중 3세 이하의 어린이의 놀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조된 보육 용품과 어린이들 입

22) 「아동 안전을 위한 국내·외 아동놀이시설물 및 놀이용품의 안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신동주 외 1인 / 1999, 한국아동학회

속으로 들어가거나 핥을 수 있는 용품 등은 프탈레이트(Phthalates) 성분 중 DEHP, DBP, BBP성분 외 추가적으로 DINP, DIDP, DnOP 성분 함유량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CPSC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있어서 어린이용 제품 인증(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을 받아야만 하며, 이는 CPC에서 인정하는 연구소에서 안전도 실험 결과를 받아야 함. CPC 인증 결과는 제품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비 시 미국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23]

「Public Playground Safety Handbook」*, 「Outdoor Home Playground Safety Handbook」*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24].

*Public Playground Safety Handbook: 공공 놀이터 장비에 대한 안전 정보 및 지침 제공

*Outdoor Home Playground Safety Handbook: 가정 및 주거 보육시설의 놀이터 안전 안내

(https://playgroundsafety.org 참고하여 작성)

③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공산품, 화학제품, 환경과 관련된 재료와 시험방법을 표준화하고 연구하기 위해 1898년 발족된 미국의 협회로 재료 및 그 시험 방법의 규격 (ASTM 규격)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매년매년 'ASTM 규격'을 새롭게 지정해 〈manual book of astm standards〉란 이름의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25].

2) 유럽

유럽연합에서는 유럽표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EN1176 Playground equipment standard」 기준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26] 놀이업체나 비영리단체에서 본 기준을 바탕으로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어린이 놀이터는 법과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EN-Normen」과 독일의 규정인 DIN을 통해 설치, 운영 및 관리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 놀이터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만들어 전담부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의 위해 놀이시설들에 대한 시각검사, 기능검사, 정기검사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검사와 보수작업은 문서화 되고 있다[27].

「DIN 33942: Barrier-free accessible playground equipment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를 통해 무장애 놀이기구 표준과 그에 해당하는 요구사항과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23) https://dream.kotra.or.kr 상품·산업 〉 상품DB 「미국 어린이놀이터 시장 동향」, 2015.02.27
24) https://playgroundsafety.org/safetm-resources/guidelines-standards-and-best-practices
25)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26) https://www.rospa.com
play safety〉advice and information 〉 Legal aspects of safety on children's play areas
27) 「사회시설로서의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기초연구_독일의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김철환 / 2020년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제2호(통권39호)

「DIN 18034: Playgrounds and outdoor play areas – Requirements on planning, building and operation」에서는 놀이터와 외부 놀이공간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요구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 호주

① 아동사고방지기구(CAPFA, Child Accident Prevention Foundation of Australia)

1979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어린이의 의도하지 않은 사망 및 부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3년에 Kidsafe라는 이름을 채택한 후 2003년 7월 연방구조를 채택하며 각 주에 지부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28] 1983년 「놀이터 안전에 관한 안내서」 발간하였다.[29] (https://www.kidsafevic.com.au)

② Inclusive Design Manual_A guide to creating play spaces which welcome children of all abilities

Playground Ideas는 호주의 비영리 단체로 놀이와 시설 등에 관련된 「Playground Starter Kit」, 「The Case for Play」, 「The Playground Builder's Handbook」, 「Playground Safety Handbook」, 「Loose Parts Manual」 가이드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30]. 2015년 「Inclusive Design Manual」는 통합성을 고려하여 놀이를 디자인하고 장애의 한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아동들의 강점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동을 지원하는 놀이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31].

4) 캐나다

1984년 아동건강기구(Canadian Institute of Child Health)에 의해 캐나다표준위원회(Canadian Standard Association)에서 안전한 놀이터 설계를 위한 국가 기준 보고서를 발간했다.

① 캐나다 표준 협회(CSA, http://www.csa.ca/cm/ca/en/home)

독립된 비정부 조직으로 캐나다 최대의 규격제정기관이다. 공업제품 및 기타 광범위한 분야의 규격을 개발, 제정함과 동시에 제품을 평가하여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적합평가 서비스를 실시한다[32].

캐나다 표준 협회(CSA)는 어린이 놀이 공간 및 장비에 대해 국가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표준을 개발하였다. CSA 표준에서는 각 유형의 장비에 대한 재료, 설치, 장비의 강도, 표면 처리, 검사, 유지 보수, 성능 요구사항 및 놀이터 접근, 놀이공간 배치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3].

28) https://kidsafe.com.au
29) 「아동 안전을 위한 국내·외 아동놀이시설물 및 놀이용품의 안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신동주 외 1인 / 1999, 한국아동학회
30) https://playgroundideas.org/handbooks/
31)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8
32) 「캐나다 표준인증협회」, 홍재희 / 안전21. 2008 171: 44-25
33) playworldsystems.com/inclusive

5) 일본

일본의 경우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은 사단법인 일본공원시설업협회(이하 JPFA)가 만들고 지켜나가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2018년부터 법률상 1년에 1회 정기점검을 전문기술자가 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놀이시설 안전관리사와 공원시설 제품 정비사들이 놀이시설 제품의 설계부터 판매, 안전인증 갱신까지 맡고 있다. 일본의 놀이시설 안전기준은 「JPFA-SP-S : 2014」*로 목적과 대상, 특성, 용어해설, 인용규격과 기준, 일반규정을 담고 있으며 「JPFA-QSMS-S : 2016」* 인증을 획득한 기업만이 놀이시설의 설계와 제조, 판매, 시공, 점검, 수리 등 적합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인증 절차는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외부 감사기관이 ISO 심사위원이 실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JPFA-QSMS에는 ISO9001 기준이 포함돼 있기에 인증획득은 어려운 실사검증이 기다리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ISO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34].

* 「JPFA-SP-S : 2014」 : 놀이기구의 안전에 관한 표준

* QSMS: Quality and Safety securement Management System, 품질 및 안전확보 관리 시스템 (https://www.jpfa.or.jp/ 참고하고 작성)

① 일본공원시설업협회 (JPFA, Japan Park Facilities Association)[35]

1980년에 창설된 협회로 「놀이기구의 안전에 관한 규격」「일반 공원 시설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규격」「공원 시설의 정기 점검에 관한 규격」등에 근거해, 안심· 안전한 공원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회원 기업을 인정하고, 인정 기업에만 안심·안전한 놀이기구의 표시인 「SP 마크」등의 표시를 인정하는 「기업 인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SP 마크는 가전제품 등에 붙이는 SG 마크와 같이, 안심・안전한 놀이도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인증이다.

표 25. 일본 놀이시설 관련 인증 마크

	SP 마크	SG 마크	BAA 마크	ST 마크
인증마크				
대상 제품	공원 놀이시설	공공제품	자전거	장난감
인증기관	(사)일본공원시설업협회	(재)제품안전협회	(사)자전거협회	(사)일본완구협회

34) http://www.latimes.kr 「일본의 놀이터 안전인증“민간단체에 일임”」,2019.11.10
35) https://www.jpfa.or.jp/

4.2 항목별 설계 기준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놀이공간을 접근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별, 항목별 설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다만, 권두에서 이야기했듯 무장애 실내놀이터 조성에서는 사용자의 필요와 관점이 중요하므로 여기에서 다루는 항목별 설계 가이드를 참조하되, 기본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을 포함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설계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다.

4.2.1 기본 활동공간[36)]

- 다양한 사용자가 동작하면서도 주요한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다양한 사용자가 모든 것을 안락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손이나 잡는 것의 다양한 크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조기구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3. 시각장애인 활동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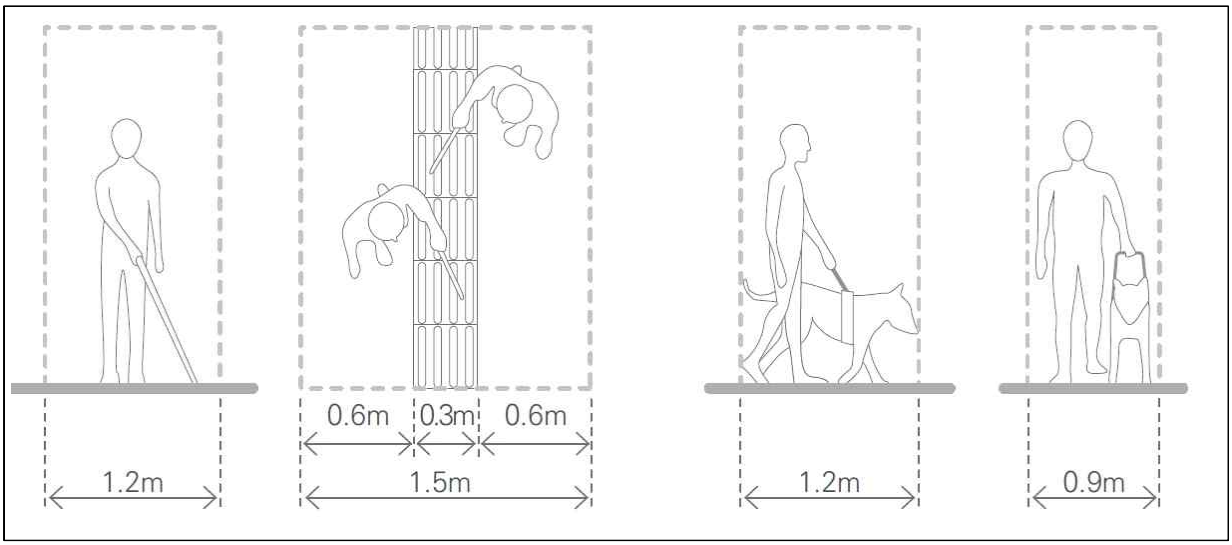

- 통로는 보행보조기인 지팡이(목발, 클러치 등),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유효폭을 최소한 1.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6) 그림 3, 그림 4, 그림 5의 다양한 사용자의 활동범위 그림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수정2판,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그림 4. 목발 사용자의 활동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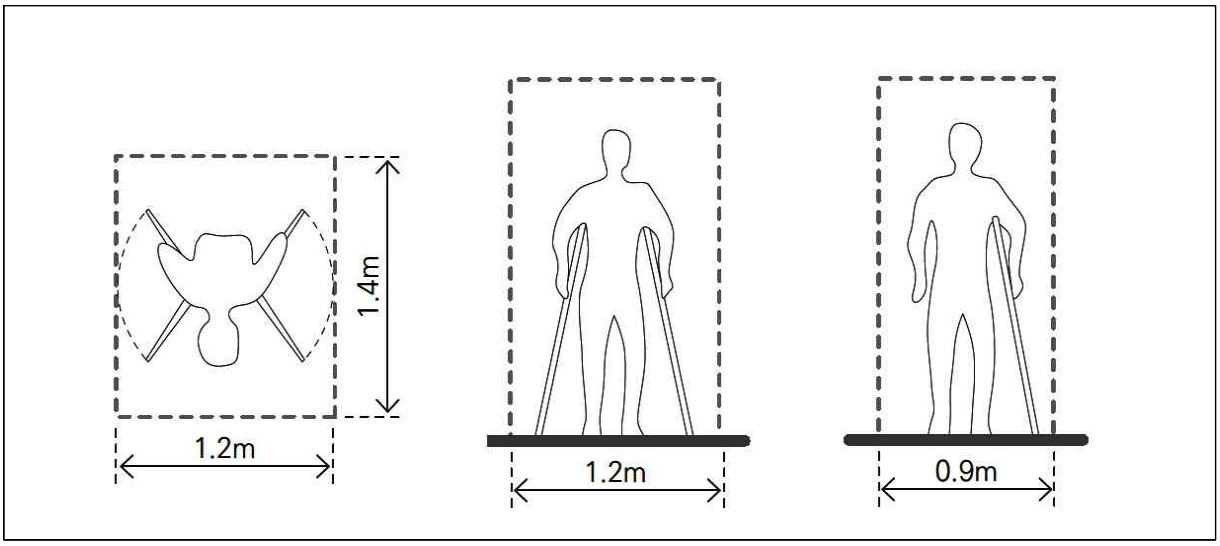

그림 5. 유모차 사용자의 활동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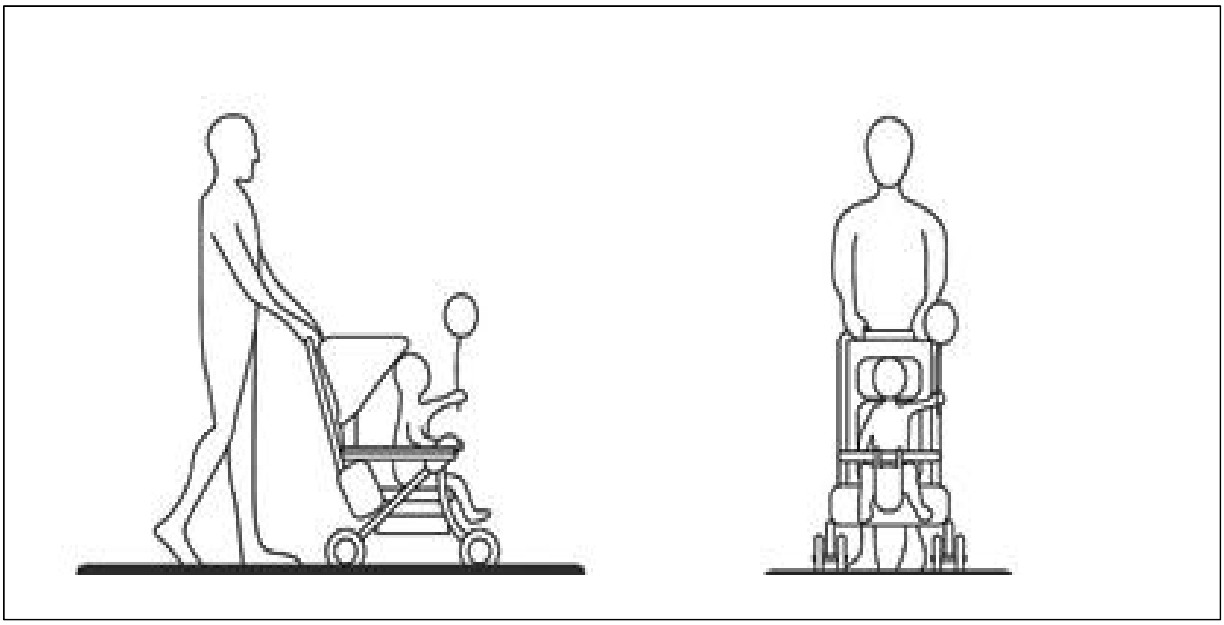

- 회전공간은 전동휠체어의 경우는 1.8m×1.8m, 수동휠체어인 경우는 1.5m×1.5m가 필요하다[37].

37) 그림 6, 그림 7 의 그림 출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그림 6.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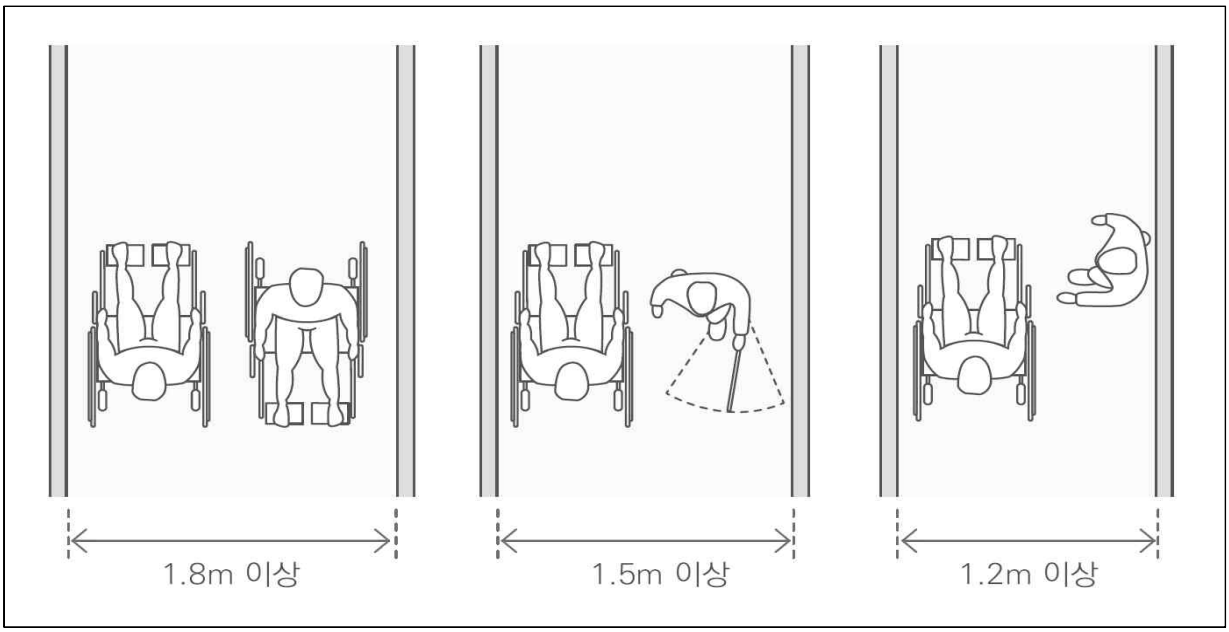

1) 손의 도달범위

- 휠체어 사용자의 손의 도달범위는 400mm~1600mm이다. 아동의 손 도달 범위는 3~4세인 경우 500~900mm, 5~8세인 경우 450~1000mm, 9~12세의 경우 400~1200mm이다.

그림 7. 휠체어 사용자의 손 도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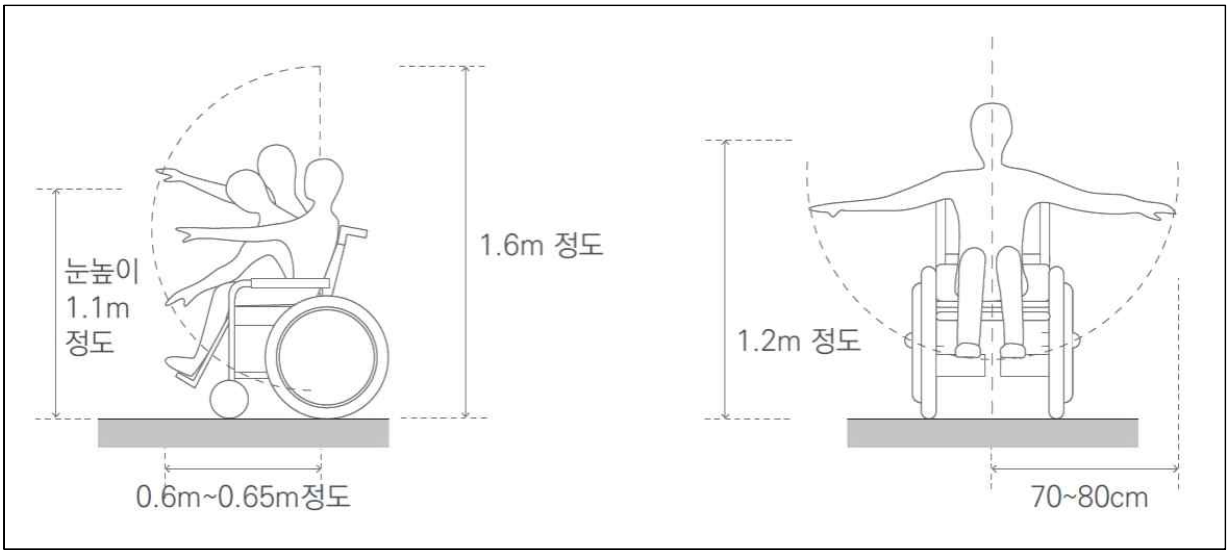

2) 돌출물(보행장애물)

- 통로상에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보행하기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통로의 벽면은 바닥면으로 휠체어사용자가 벽에 안전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0.15m~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하여야 한다.
- 통로의 벽면 및 바닥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장매물이 전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벽면에 돌출물이 있는 경우 0.1m 이내로 설치한다.
- 통로에 소화기, 달대형 안내표지판 등의 장애물이 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놀이공간에 독립기둥이 있는 경우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고 부딪힐 경우를 고려하여 푹신한 마감재로 처리하여야 한다.

4.2.2 진입 접근공간

- 진입 접근공간은 건물외부에서부터 안전하게 장애인 및 유아 등의 사용자의 진입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진입 접근공간은 장애인 등이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폭, 무단차, 기울기, 마감재, 보행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외부에서 사용하는 휠체어는 내부에서 수동휠체어로 옮겨 타기도 하나 개인 휠체어만을 사용가능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 자폐성장애아동이나 보호자에게 특히 중요한 공간이며, 처음 방문한 장소에서 낯선 느낌을 최소화하고 놀이공간에 들어가기 전 놀이기구 배치, 특징, 활동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출입구

무장애 실내놀이터(통합놀이터)의 출입구는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무단차,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 0.9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38]는 1.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자동문이 아닌 출입문은 출입구 옆에 0.6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발을 벗는 공간인 경우 출입문 입구와 신

38) 전후면유효거리는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말한다

발을 벗는 공간이 이질재료를 사용할 경우 무단차 처리해야 한다. 2cm 이하의 단차가 있는 경우는 모따기처리 등으로 단차를 완화해야 한다.

② 문의 형태

- 문의 형태는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하고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 사용자를 고려하여 버튼식 자동문으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손끼임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센서식 자동문을 설치할 경우 감지 범위를 바닥으로부터 0.4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미닫이문은 설치 시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한다.

③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손잡이는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문을 여는 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아동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기타설비

- 출입문 등이 유리문인 경우 보행자의 인지 가능하도록 바닥에서 1.2~1.5m 높이에 유색 띠지 등을 부착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2) 안내데스크

- 안내데스크는 장애인 및 유아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수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가까운 곳에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안내데스크는 휠체어사용자 및 유아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안내데스크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8. 안내데스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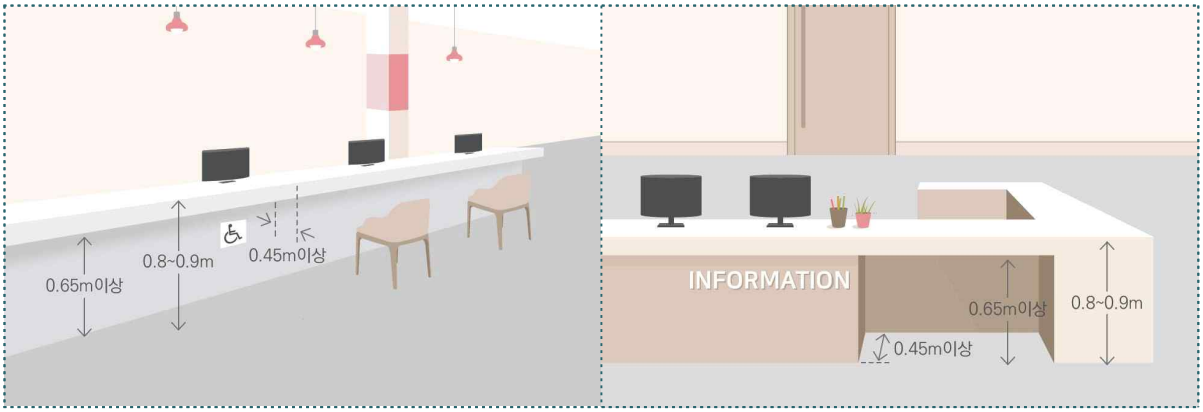

3) 개찰구

- 입장권 등이 있는 실내놀이터에 개찰구가 설치된 경우 자동 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보관공간

- 외부에서 사용한 휠체어나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아동이나 보호자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지한 휠체어를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실내놀이터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자 및 아동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은 일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다.

그림 9. 보관공간

4.2.3 대기 및 휴식공간

- 대기 및 휴식공간은 보호자를 공간이기도 하며 아동이 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공간의 분위기는 편안해야 하며 놀이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볼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장애인 및 유아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위치는 입구 근처 또는 놀이공간 안에 배치하고 공간의 분위기는 조용한 사적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대기 및 휴식공간의 가구는 장애인 및 유아 등 다양한 사용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 휴게실

- 보호자 및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휴게실 테이블은 장애인 및 유아 등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의자는 장애인 등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에 고정된 형태보다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선택해야 한다. 눕기를 원하는 장애아동을 위해 넓은 소파 등의 검토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10. 휴게실

2. 음료대

- 음료대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인 및 유아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하여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갖추어야 한다.
- 음료대는 휠체어를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음료대는 성인과 영유아가 모두가 마실 수 있도록 2가지 높이로 설치한다.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한다. 조작기는 광감지식 · 누름버튼식 ·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음료대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부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이상 확보하여야한다.
- 냉온수 사용이 가능하면 수도꼭지에 점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림 11. 음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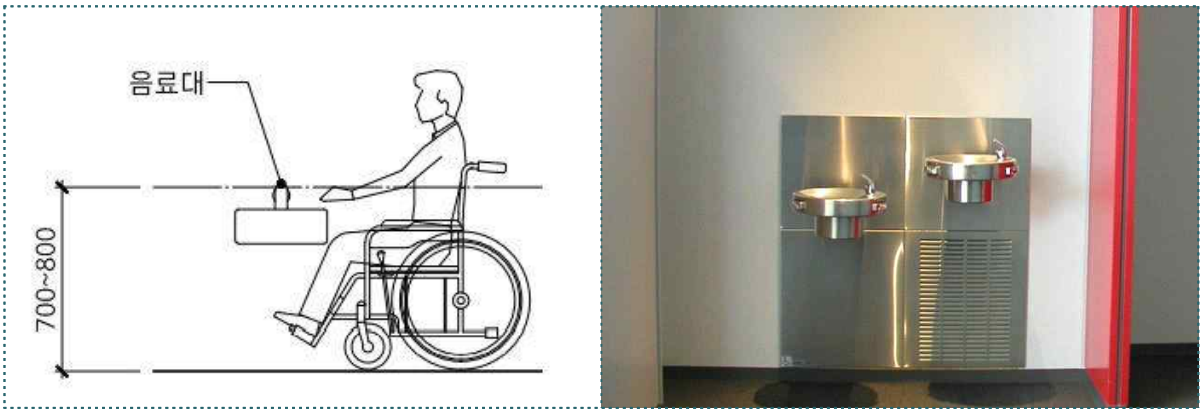

3) 매점

- 매점이 설치된 경우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매점 내 계산대는 휠체어 사용자 및 유아 등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하고 계산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상품 매대 간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유효폭 최소한 0.9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 수유실

- 공공건축물 내에 있는 실내놀이터의 경우는 공공건축물 내 있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실 내에 있는 수유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공공건축물 내 수유실이 없는 경우는 실내놀이터 설치 시 근접해서 배치한다.
- 실내놀이터 단독건물을 세울 경우 수유실을 설치해야 한다.
- 수유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유실은 휴게실에 인접하고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수유실은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수유실은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설치되어야 하고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또는 측면에 활동공간 1.4m×1.4m를 확보한다.
-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접이식으로 설치할 경우 영유아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저귀교환대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을 위하여 침대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2. 수유실

4.2.4 위생시설

1) 화장실

- 장애인, 유아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및 유아용 화장실을 일반화장실 내 또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남녀 별도의 단독형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또는 가족화장실을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남녀 화장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물 내에 있는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과 유아용 화장실이 미설치된 경우는 실내놀이터 내 또는 실내놀이터와 근접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접근을 위한 통로는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유효폭 및 무단차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화장실 내 바닥마감재는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선정한다.
- 화장실 내 출입구는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유효폭 0.9m 이상 및 무단차를 계획한다.
- 안내표지판은 장애인 및 유아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출입구 옆에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한다. 안내표지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 및 그림과 병용하여 표시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신발을 벗는 공간에 설치된 경우는 점형블록은 설치하지 않고 점자표지판만 설치한다.
-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칸막이 출입문, 활동공간, 대변기 형태, 손잡이, 세정장치, 비상호출벨, 등받이, 유아용거치대 등을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춰 설치한다. 장애아동 및 유아 등을 고려하여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한다.
- 소변기는 장애인 및 유아 등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바닥부착형으로 한다. 손잡이는 편의시설 기준에 맞춰 설치한다.
- 세면대는 어른과 유아를 고려하여 2가지 높이차가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장애인 이용 가능 세면대는 형태, 거울, 수도꼭지 등을 편의시설 기준에 맞춰 설치한다.

그림 13. 장애인용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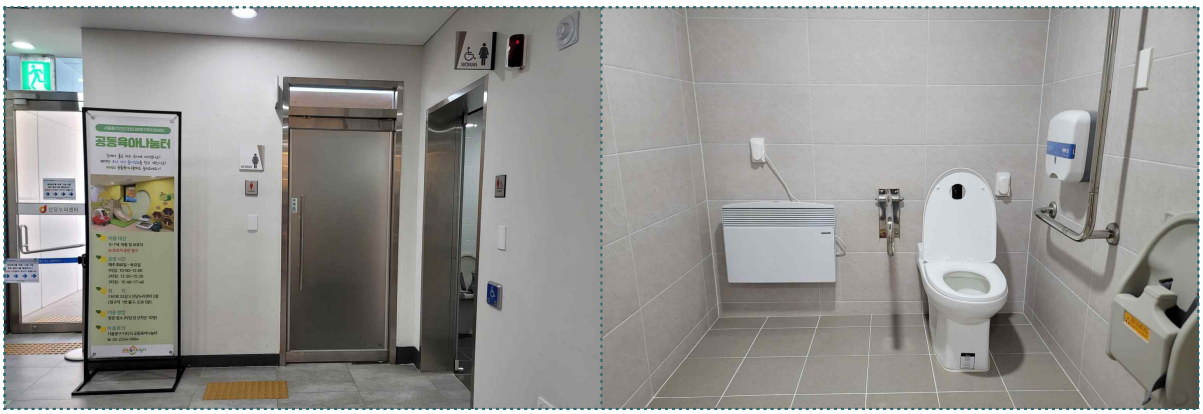

4.2.5 놀이공간

- 놀이공간은 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을 구별하여 구성하기보다는 모든 아동의 능력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달리해서 배치한다.

- 다른 연령과 다른 능력 수준을 가진 아동들이 서로 소통하고 놀 수 있도록 한다.
- 놀이기구에 난이가 다른 놀이를 결합하여 배치하여 아동이 서로 배우며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높낮이가 있는 놀이시설은 놀이공간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놀이공간이 협소할 경우는 경사로를 구비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차선책으로 옮겨타기시스템을 활용하여 놀이기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1) 놀이공간의 기본 요소 기준

① 놀이기구 접근

- 모든 놀이기구의 출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유효폭, 무단차, 보행장애물 등의 유무를 고려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놀이공간의 접근 통로의 유효폭은 1.2m~1.5m 이며, 권장 유효폭은 1.5m 이며, 놀이공간이 협소에서 어려울 경우는 1.2m도 가능하지만 휠체어 사용자의 회전을 고려하여 1.5m×1.5m 회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접근하는 공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높낮이가 있는 놀이기구의 입구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경사로 및 옮겨타기 시스템이 있다. 높낮이가 있는 놀이기구에 접근하는 방법은 경사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놀이공간이 협소할 경우는 경사로를 구비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차선책으로 옮겨타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놀이기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경사로는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0.75m 초과시 수평면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옮겨타기시스템[39)]

옮겨타기 시스템은 미끄럼틀과 같은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옮겨타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옮겨타기 플랫폼(transfer platform), 옮겨타기 계단(transfer steps) 및 옮겨타기 지지대(transfer support)로 구성된다.

① 옮겨타기 플랫폼

- 휠체어에서 바로 놀이시설물로 옮겨탈 때 아동 스스로 혹은 보호자의 도움이 최소화하도록 하단부위 높

39)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2018)

이를 높게 한다.

옮겨타기 플랫폼	옮겨타기 플랫폼 접근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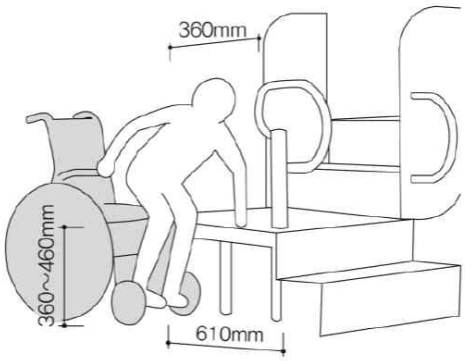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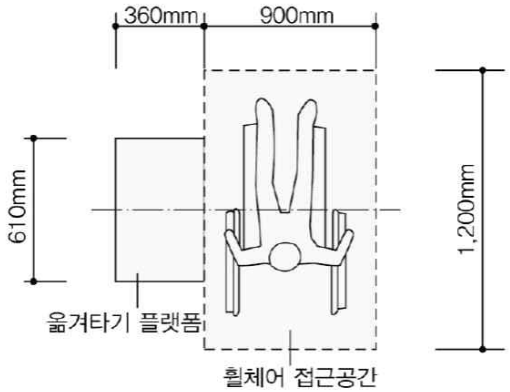
• 옮겨타기 플랫폼 크기는 높이 360mm~ 460mm 정도이고 최소너비 610mm, 최소 깊이 360mm 이다.	• 옮겨타기 플랫폼 접근을 위한 휠체어 접근공간은 900mm×1200mm 을 확보해야 한다, • 옮겨타기 플랫폼의 610mm 면과 평행하게 접근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② 옮겨타기 계단

- 아동 스스로 시설물에 오를 수 있도록 계단 폭과 넓이를 고려한다.
- 옮겨타기 계단의 단 높이(챌면)는 최대 200mm 이하로 한다. 사용 연령에 따라 계단 높이 100~200mm로 조정이 가능하다.
- 디딤판의 최소 너비 610mm, 최소 깊이는 360mm이다. 계단의 높이는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옮겨타기 지지대

- 옮겨타기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 옮겨타기 지지대는 손잡이형과 바닥형으로 구분된다.

손잡이형	바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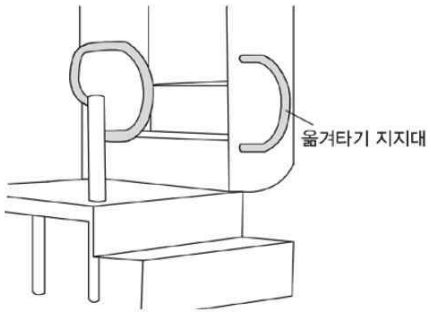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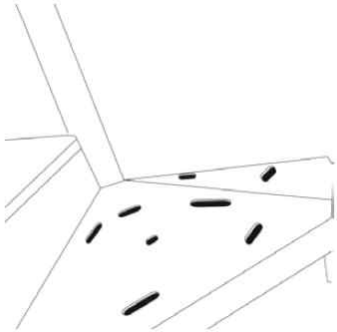
• 손잡이형은 옮겨타기 플랫폼 및 계단 시작점에 있으며 손잡이 형태는 안전을 고려하여 곡면으로 처리한다. • 종류는 핸드레일, 핸드그립 또는 맞춤형 손잡이 등이 있다.	• 옮겨타기 플랫폼의 바닥에 구멍을 내어 손으로 잡기 쉽게 하는 장치이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발, 다리, 손가락의 얽매임 방지를 고려하여 개구부(구멍, 틈)의 크기를 제한한다. • 바닥의 틈은 진행방향과 평행할 경우 30mm 미만으로 설치한다. • 개구부가 1m 이상에 위치한 경우 개구부의 크기는 8mm 미만, 25mm 초과하도록 설치하여 손가락 등이 끼이지 않도록 한다.

3) 손 도달 범위

- 손 도달 범위는 휠체어 사용자가 앉아서 팔이나 손을 확장하여 물건을 만지거나 조작할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 놀이패널, 망원경, 모래테이블 등의 지면 설치 놀이기구를 손 도달 범위 내에서 다양한 높이로 배치하여 신체 조건이 다른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측면활동	정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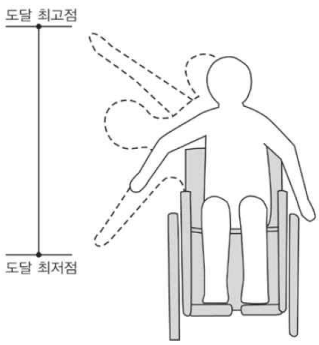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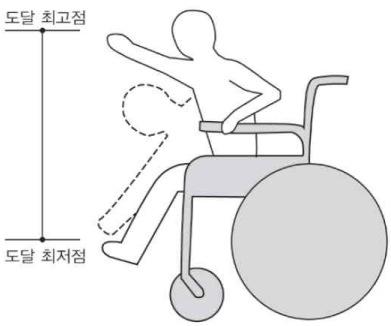

3~4 세 : 500~900mm
5~8 세 : 450~1,000mm
9~12 세 : 400~1200mm
13 세 이상 : 400mm~1600mm

4) 손잡이(handrail)

- 손잡이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 손잡이는 높낮이가 있는 놀이기구를 접근할 때 계단, 경사로 설치하는 경우 양측면에 잡고 올라가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
- 휠체어 앞바퀴, 목발과 클러치의 끝이 가장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사로 양측면에 5㎝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 손잡이는 성인과 아동이 사용 가능하도록 2중으로 설치하고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한다. 손잡이 굵기는 3.2㎝~3.8㎝가 적합하고 벽면에서 5㎝ 이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시설물 진입점과 앉는 부분

- 아동이 높낮이가 있는 놀이기구의 진입 부분에 앉거나 설치 높이에 쉽게 올라타고 이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입점과 앉는 높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그네의자, 스프링 로커 의자 및 크롤러 튜브 구멍 등은 앉은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 권장 높이는 450mm 이지만 유아의 신체 조건 및 놀이기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300~600mm로도 가능하다.
- 이동해서 앉거나 기구에 올라타기 용이하도록 경계부에 옮겨타기 계단과 지지대를 둘수 있다.

6) 유효바닥면적

- 휠체어 사용자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면 최소유효공간이 필요하다. 휠체어 사용자 및 이동보조기구 사용자가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에 접근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시 최소 유효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사용자가 이동 시 통로 유효폭 1.2m 및 회전공간1.5m×1.5m를 확보하여야 한다.

유효바닥면적 및 경사로	회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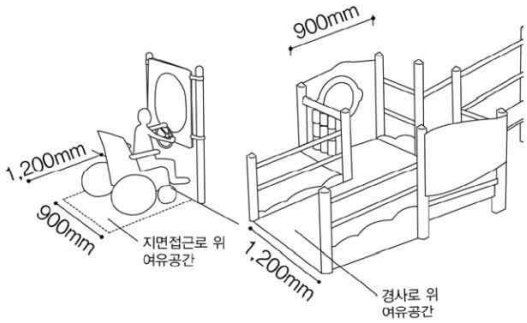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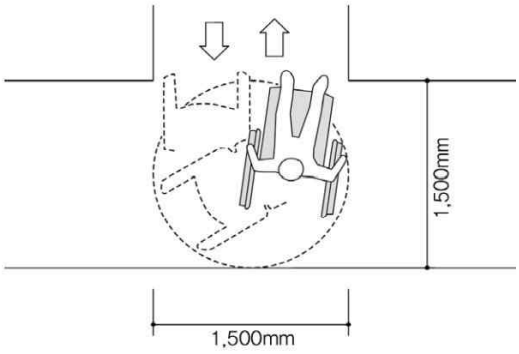
• 최소바닥면적 900mm×1200mm 확보 • 모든 방향에서 1:50 이하 경사 • 경사로는 1/12 경사	• 회전공간은 1500×1500 확보해야 한다. • 회전공간은 1:50 이하 경사

4.2.6 놀이기구설계

1) 놀이테이블 및 주방놀이기구

- 놀이테이블이나 주방놀이기구는 휠체어 사용자나 서 있는 자세의 아동이 접근해서 협력하면 놀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신체 조건이 다양한 아동을 고려하여 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높이 차이가 있는 놀이대, 테이블, 놀이기구 등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 놀이테이블과 주방놀이기구는 휠체어 사용자 및 아동의 무릎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상단 높이는 600~800mm 정도이다. 높이 테이블의 폭은 최소 750mm 이상, 깊이 450mm 이상 확보해야 한다.

2) 그네

- 그네는 앉아 있는 동안 중립적 신체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자신에게 맞는 놀이법이나 도전 수준, 도움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그네 유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같은 구역에 다양한 유형의 그네를 설치한다.
- 그네의 종류는 신체조건이 다양한 아동을 고려해서 등받이 형태와 신체 양 옆면을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바구니형, 카시트형, 기저귀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네 주변에 안전을 고려하여 울타리 형태를 설치하는 경우 약시나 색각장애아동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색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바그니형 그네	카시트형 그네
• 여러 아동들이 함께 이용가능한 시설로 다양한 연령, 장애,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 가능하다. • 앉기가 곤란한 아동이 눕거나 엎드려 타거나 어른이 아동을 안고 탈 수도 있다.	• 벨트가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가 있다. • 벨트 사용 시 체격에 맞춰 안전벨트 정착이 가능하다. • 등받이가 있어서 몸을 가누기 힘든 아동이나 유아들이 이용 가능하다.
요람형 그네	**기저귀형 그네**
•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동 및 유아들을 위한 형태이다. • 아동이 누워서 탈 때 전신 경험할수 있으나 간혹 불안전을 느낄 수 있다.	• 다리를 넣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네이며 다리가 고정된 상태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미끄럼틀

- 다양한 미끄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유형의 미끄럼틀을 제공하며 누구나 각자 능력과 페이스로

오를수 있도록 경사로. 오르막, 옮겨타기 시스템, 계단, 사다리, 네트오르기, 벽오르기 등으로 구성된다.

- 높이가 다른 미끄럼틀, 아동이 자세를 유지하기 쉽도록 측면 높은 미끄럼틀, 반원형 형태의 미끄럼틀, 손잡이 형태가 있는 미끄럼틀, 성인 아동을 탈수 있는 폭이 넓은 미끄럼틀, 난이도가 다른 이중 미끄럼틀 등으로 구성된다.
- 미끄럼틀 시작점과 착지부분에 휠체어에서 옮겨타고 앉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 출발부에 앉았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바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약시자와 색각장애아동이 인지하기 쉬운 색을 사용하고 다치지 않는 소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 미끄럼틀을 올라가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옮겨타기 계단을 함께 설치하면 좋다.

시작점 플랫폼	도착점 플랫폼
• 플랫폼 높이 450mm • 미끄럼틀 시작점은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높이 및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다른 아동들을 고려해서 넓은 공간과 계단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 플랫폼 높이 450mm • 휠체어 옮겨 앉기에 용이하다. • 착지부분을 길게 하여 몸을 가누기 어힘든 아동들이 쉽게 착지할수 있다. • 아동놀이시설의 시설기준은 기술기준은 활강지점의 길이에 따라 도착점 높이를 최대 350mm 이하로 되어 있어 높이 검토가 필요하다.

4) 회전놀이기구

- 다양한 회전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기구는 지면 접근할 수 있도록 바닥 레벨에 설치하고 단차를 제거하여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타는 위치에는 안전바를 두어서 원심력을 고려하여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그립·손잡이·등받이 유무, 서서·앉아서·누워서 다양한 자세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두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다.

5) 흔들놀이기구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균형감각이 부족해 네트, 해먹, 캔틸레버 그네 바구니에 앉을 수 있는 없는 아동을 위한 시설이다.
- 다양한 흔들림이나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형태의 진동, 상하운동을 제공한다.
- 땅에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놀이기구처럼 회전할 수도 있고 엉덩이 주위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빠르고 다이내믹한 놀이가 가능하다.
- 넓은 좌석과 손잡이가 있는 경우 균형감각이 좋지 않은 아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그립·등받이·발 받침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서서·앉아서·누워서 다양한 자세로 즐길 수 있는 것, 체격이 큰 사람이 타거나 성인이 아동을 앉고 탈 수 있도록 시트의 폭이나 깊이가 넓은 놀이기구도 함께 설치한다.
- 놀이기구의 종류는 시소, 해먹, 트램펄린, 세로로 흔들릴 수 있는 스프링 놀이기구, 전후나 좌후 흔들리는 로킹(rockimg) 놀이기구 등이 있다.
- 지면은 평탄하고 충분한 넓이를 확보해야 한다. 바닥마감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추락시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규모에 따라 휠체어에 탄 채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6) 오르기놀이기구

- 기거나 오르기를 할 수 있는 네트, 터널 및 튜브 형태의 오르기, 장애물매달리기 등 난이도 낮은 놀이기구는 유아나 장애아동이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 높은 것과 낮은 것, 경사가 급한 것 완만한 것,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손이나 발을 받치는 부분, 참, 디딤판의 크기 등 난이도를 달리할 수 있다.
- 휠체어 등에서 옮겨타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아동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단부의 높이를 높일 수 있다.
- 낙하 높이가 큰 오르기 놀이기구는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7) 볼풀 놀이기구

- 볼풀 놀이기구는 공기로 채워진 얇고 탄성 있는 플라스틱 공을 가득 채운 공간에 아동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 볼풀 놀이기구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도 놀 수 있는 공간이다.
- 볼풀 놀이기구 공간 설치 시 휠체어를 탄 채 놀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볼풀 놀이기구 접근 시 출입문과 완충지대를 설치할 경우 보조기구 이용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하다.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접근을 고려하여 옮겨타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2.7 안내설비

- 장애인 등이 건축물 내부의 위치 및 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출입구에 음성안내를 포함한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은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촉지도식안내판 전면 300mm 이격해서 점형블록 2장을 설치한다.
- 실내놀이터와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 및 그림과 병용하여 표시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로 한다.

촉지도식 안내판	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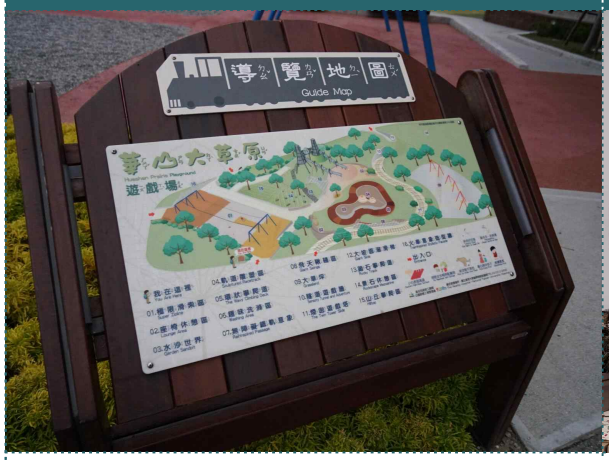	
• 그림과 문자, 점자를 함께 사용한 테이블형 촉지도	• 그림과 문자를 함께 사용한 벽부형 안내표지판

- 건물 내 안내표지판은 실내놀이터,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접수대, 주요실 등에 표기한다.

-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 실내놀이터, 화장실 등에는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외부출입문 및 1층을 제외한 계단실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경보기	음성 점멸 피난구 유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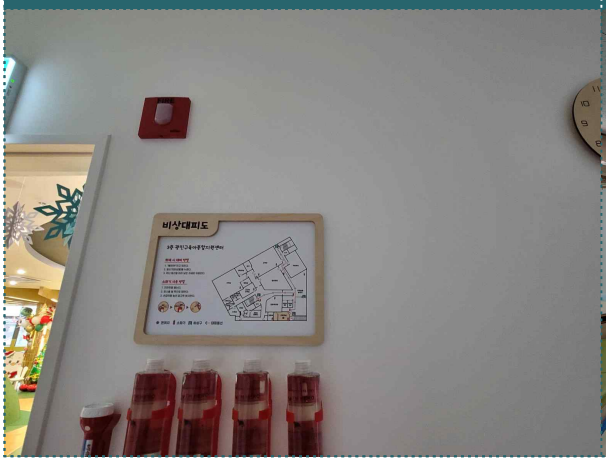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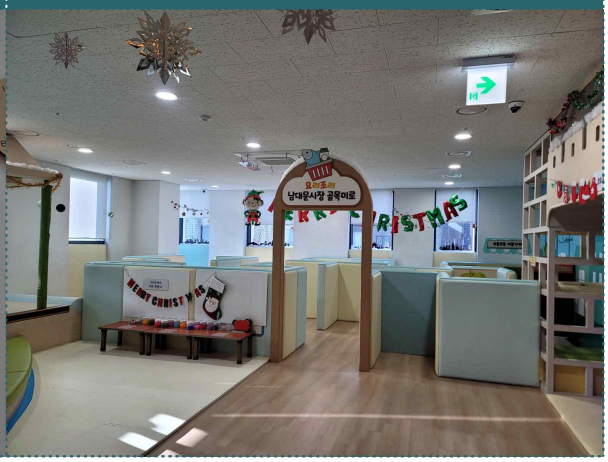

Chapter 5

무장애 실내놀이터 운영

5.1. 무장애 실내놀이터 운영 가이드

Chapter 5 무장애 실내놀이터 운영

5.1 무장애 실내놀이터 운영 가이드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실외놀이터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좁은 실내공간에 아동놀이시설물의 구성과 동선의 계획, 장난감 및 놀이도구 들의 배치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의 실내놀이터 이용과 통합놀이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이번 장에서는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운영에 대하여 Q&A로 알아본다.

5.1.1 무장애 놀이터 이해]

Q.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장애로 인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이 함께 놀이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개인의 요구에 적합하게 놀이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Q. 능력과 발달 수준이 다양한 모든 아동이 놀이할 수 있도록 보편적 학습 설계를 무장애 실내놀이터에 반영한다면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할까요?

- 보편적 학습설계는 능력과 발달 수준이 다양한 모든 아동 개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허용하기 위해서 교수 자료와 활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장애 실내놀이터에 적용해 본다면 장애로 인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공간, 놀이시설, 놀잇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양한 수준
  - 놀이시설
  - 놀잇감의 단순함 VS 복잡함
  - 쉬움 VS 어려움 등

- 다양한 방법의 참여 지원

시각적 정보, 청각적 정보 등에 대한 이해와 표현 수준이 다양한 아동들을 위해서 문자, 그림, 사진, 구체물 등의 정보를 함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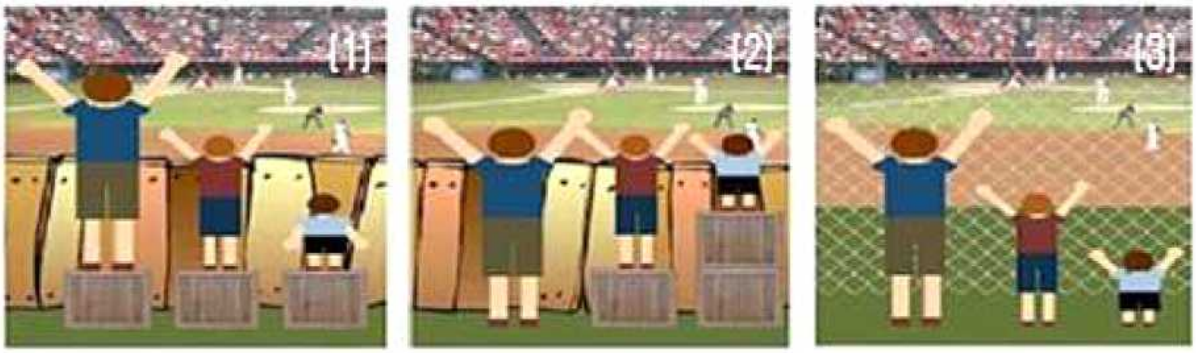

(1)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보조를 받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

(2) 개별적인 보조를 받아 동일한 혜택을 누림으로써 공평하게 대우 받음

(3) 보조 없이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공평한 원인을 제거한 상태

※ 이미지 출처: Advancing Equity and Inclusion: A Guide for Municilpalities(캐나다 City for Al Women Intiative와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2018)에서 재인용[40)]

Q. 무장애 실내 놀이터는 장애아동에게 발달을 촉진하는 기회의 장소가 아닌가요?

때때로 장애아동 부모는 놀이 시간을 치료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문적으로 고안된 놀이와 활동만이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동은 자신이 선택한 놀이에서 즐거움, 유능감, 성공감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물론 놀이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 이용 신청이 필요함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보호자가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장애를 사전에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Q. 보호자와 활동지원인의 동반 입장을 제한하지 않아요.

- 장애가 있는 경우 성인의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또는 활동지원인의 동반 입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꼭 보호자 또는 활동지원인의 동반 입장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가 있는 날을 사전에 공지하여 보호자가 무장애 실내놀이터 방문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40)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2018). 이소현, 이수정, 박병숙, 윤선아. 충청남도: 국립특수교육원

Q. 놀이공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 주세요.

- 보호자가 놀이공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장비를 준비할 수도 있으며, 자녀에게 놀이 방법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 공지가 필요합니다.

Q. 놀이공간, 놀이방법, 시설 이용방법 등을 다양한 감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세요.

- 놀이방법, 시설 이용방법이 문자로만 제시되어 있다면 시각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데 어렵습니다.
- 소리로만 안내된다면 청각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감각정보를 포함한 안내물을 제작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특별한 감각자극에 반응을 보이는 장애아동이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5.1.2 공간

Q. 고정적 놀이공간 이외에 필요한 공간이 있을까요?

- 고정적인 놀이공간과 함께 융통성 있는 놀이공간을 배치해야 합니다. 고정적인 놀이공간은 트래펄린, 정글짐, 짚라인과 같은 고정적인 놀이 또는 놀이기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 융통성 있는 공간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놀이터라는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이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낯선 놀이터 공간에 적응이 필요한 아동, 잠시 휴식이 필요한 아동, 자녀와 함께 동반한 보호자가 머물 수 있는 것과 같이 융통성 있는 공간을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 물론 모든 공간은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공간과 사물에 대한 인지를 돕는 표시가 함께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아동이 낯선 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 조용한 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애아동 중에는 실내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소음, 너무 많은 친구들, 새롭고 다양한 놀이기구와 활동으로 인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때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내적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잠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조용한 공간은 책꽂이 같은 부분적 경계나 칸막이를 이용하여 조용한 공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있어요.

- 낯선 친구들과의 놀이 시작이 어려운 경우, 친구와의 놀이를 힘들어 하는 아동을 지원해주세요. 안정적

으로 느끼는 물리적 공간에서 1~2명의 친구와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 이 공간에서 1~2명의 친구와 익숙해진 다음 점차 놀이 친구의 수를 늘려가거나 새로운 친구와 놀이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 의자의 수로 놀이 참여자의 수를 제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잇감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반응적인 환경 마련

-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장애가 없는 아동 모두 자신의 행동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반응적인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예를 들면, 누르면 설명이 재생되거나 소리가 나는 환경 등입니다.

Q. 안전하고 독립적인 접근이 가능한 환경

- 출입문
  - 바닥면의 단차 제거
  - 문 열기와 닫기가 쉬워야 함
  -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표준 기준의 문보다 0.8m 이상 넓어야 함
  -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으로 충분해야 함
- 화장실
  - 변기의 높이는 다양해야 함
  - 화장실 칸막이는 휠체어에서 변기로 이동하기 쉽도록 36인치(92cm)이상
  - 변기와 세면대: 출입문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책상 높이와 의자
  - 장애아동이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책상 높이를 조정하거나 의자 수정이 가능

놀이시설

  - 접근 가능한 통로
  - 옮겨타기 시스템

Q. 이용순서가 필요한 놀이기구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줄을 서는 것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 시각장애아동,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차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의자, 발자국 등 시각적인 줄서기를 안내해 주세요.
- 이때 이용안내 동영상이 제시된다면 아동들도 즐겁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안전한 시설 이용의 시작이 됩니다.

Q. 편의시설 공간도 확인해주세요.

- 휠체어나 유모차 보관 공간이 필요해요.
- 그리고 척추,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하여 베드(간이침대)가 준비된 화장실 이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5.1.3 놀잇감

Q. 융통성 있는 공간 또는 조용한 놀이공간에 어떠한 놀잇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 건전지를 넣거나 조작되는 놀잇감은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 중도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 좋아하는 놀잇감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놀잇감보다는 감각을 자극하는 놀잇감이나 사물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각장애

① 저시력

- 밝은 조명
- 큰 책, 굵고 분명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책, 촉각적 탐색을 할 수 있는 점자책
- 후각적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놀잇감도 도움이 됨
- 만약, 미술 공간이 제공된다면 선이 잘 보이는 굵은 펜을 주거나, 자르는 선을 촉감으로 구분 할 수 있도록 실 등을 붙여 제공

② 잔존시력이 남아 있지 않다면

- 촉감이나 후각을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자료를 제공

청각장애아동은 소음이 있으면 말을 이해하거나 놀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용한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영상으로 놀이방법이나 놀이기구 활용법을 알려주세요.

지체장애아동 중 소근육 조작이 어려운 지체장애아동이 있다면 활동을 지원해주세요.

- 그리기 보조도구
- 퍼즐조각에는 손잡이를 붙여 줄 수 있음
- 자석이 붙는 책상과 자석이 붙어 있는 놀잇감을 제공하여 놀잇감 조작 지원

Q.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특정 감각자극에 예민함이 있어요.

- 시각적 탐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놀이환경을 제공합니다.
- 지체 장애아동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위치에 시각적 탐색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배치해 주세요. 신체의 움직임의 어려운 아동에게는 좋은 놀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벽으로 쏘여지는 동영상
- 조작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움직이는 놀이
- 라이트 브러쉬와 같이 빛을 활용한 시각적 탐색이 가능한 놀잇감

라이트 브러쉬[41]	라이트 테이블[42]

Q. 보행이 어렵고 손을 사용할 수 없어요.

- 발을 이용하여 놀이할 수 있는 환경, 놀잇감을 제공합니다. 발로 밟는 전자 피아노 매트, 발에 끼울 수 인형, 누르면 색이 변하는 매트[43] 등이 있습니다.

Q. 뇌병변장애아동을 위한 놀잇감

- 뇌병변장애아동은 몸을 움직이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놀잇감[44] 제공이 뇌병변장애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41) 이미지 출처: Play31
42) 이미지 출처: 4차 개정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장애 영유아 놀이지원 교육
43) 이미지 출처: 아이소리몰
44) 이미지 출처: 아이소리몰

잡기 쉬운 놀잇감: 꼭지 달린 퍼즐 등	적은 힘으로 고정하고 분리하기 쉬운 놀이감: 벨크로가 부착된 인형 등

소근육 운동을 유발하는 놀잇감: 무독성 점토, 밴드 등	

Q. 놀이 지원을 위하여 잡기 쉬운 보조기[45] 제공

펜슬그립	링 라이터 클립	연필 홀더

이미지 출처 : 에듀에코(www.eduecho.com)

45) 이미지 출처: 지체장애(뇌변병장애) 양육 길라잡이(2016).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2 인용 가위	루프 가위

이미지 출처 : 굿에듀(www.goodedu.com)

5.1.4 놀이지원자 및 자원봉사자

Q. 놀이지원자 및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 장애 및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
  - 장애는 이상하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는 다양성 존중, 다름 수용
  - 장애가 있다고 놀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놀이해요.
- 장애유형에 대한 기본 이해
  - 장애유형에 따른 발달 특성 및 지원방법
- 무장애 실내놀이터와 운영에 대한 이해
  - 놀이에 장애아동을 분리시키지 않음
- 방문하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
- 언제나 안전한 놀이를 강조

Q. 놀이지원자 및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밀착하여 1:1 놀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놀이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있다면 놀이기구 사용 방법을 알려주거나, 또래 친구와 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함께 놀이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이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까?”, “같이 미끄럼틀 타자고 물어볼까”와 같이 힌트를 주세요.

Q.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놀이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양한 탐색(빨기, 만지기 등)이 가능한 놀잇감을 주변에 제공해 주세요.
- 놀이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딱딱한 느낌이네', '뚜껑이 삼각형 모양이네'와 같은 관심과 상호작용을 해 주세요.
- 무장애 실내놀이터 환경에 익숙해졌다면, 놀이터 안에 있는 놀이시설, 공간을 소개해 주세요.

Q.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놀이 지원 시 고려할 점

- 장애를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놀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반복 놀이를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면 새로운 놀이로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시도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 즐겁게 놀이한 후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줍니다.
- 성인이 놀이를 지도하려 하기보다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처음 만난 친구이지만 친구를 사귀고 싶어한다면 다음과 같이 지원해주세요.

-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비장애아동에게 '도와주자'의 말을 사용을 조심하고,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과 함께 놀이할 때 부담스럽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서로 동등한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부록

1. 실내놀이터 배리어프리 인증 기준 가이드
2. 포커스그룹 인터뷰
3. 실내놀이터 이용자 설문조사
4. 실내놀이터 사례조사

부록 1. 실내놀이터 배리어프리 인증 기준 가이드

1. 개요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또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 BF)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일시적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46].

•우리나라에는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BF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제도」는 건축물, 공원,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과 지역 등을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인증지표에 따라 일반(70% 점수 취득), 우수(80% 점수 취득), 최우수(90% 점수 취득) 등급으로 나뉘며, 취득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과의 관계

• 본 가이드라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BF 인증 기준)」 중 최우수 등급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등급은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고려한 기준이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2017)』역시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최우수 등급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 따라서 BF 인증 최우수 등급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본 가이드라인은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가이드라인의 구성

• 본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의 건축물 인증 지표의 순서에 따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정리하였으며, 놀이시설에 대해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공원 인증지표의 휴게시설을 마지막에 추가하였다.

2. 항목별 가이드라인

1) 매개시설

4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2008) 제1조(목적)

▌ 접근로

•모든 출입구와 연결되는 접근로의 50% 이상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도록 설치한다.
•접근로의 유효폭은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접근로의 전체 구간에는 전혀 단차가 없어야 한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24(4.17%, 2.39°)이하로 하여야 한다.
•모든 출입구와 연결되는 접근로의 50% 이상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접근로에 가로수, 간판 등이 있을 경우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거나 보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거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는 높이차가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내놀이터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서 가장 가까우며 수평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외부 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실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는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2%, 1.15°)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만큼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이 있을 경우 최소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폭 3.5m 이상(휠체어 활동공간 포함), 길이 5m 이상으로 설치하고, 1.2m 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노면에 표시하며, 다른 주차면과 구분이 쉽도록 바닥면 색상을 다르게 하고 입식 및 바닥 표시를 한다. 바닥에는 1.3×1.5m의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며, 주차구역선에도 0.5m×0.58m의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한다.
•입식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5m의 높이로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벽부착형으로 설치하고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되는 전화 번호 등을 잘 보이도록 안내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안전통로는 1.8m 이상 연속되게 설치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입구에서 바로 보이게 설치하거나 연속적인 유도 표시를 설치한다.

▌ 출입구(문)

•실내놀이터의 출입구는 단차 없이 수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2c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을 경우 1/18(5.56%, 3.18°)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일 경우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경사로 양측에 설치한다.
•모든 출입문의 60% 이상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 단차는 전혀 없도록 한다.
•전면 유효거리는 1.8m 이상으로 설치한다.
•자동문이 아닌 출입문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에 설치하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실내놀이터 시실명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출입문 전후면 0.3m에 출입문의 유효폭 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2) 내부시설

▌ 실내 출입문

•모든 실내 출입문에 단차가 전혀 없도록 한다.
•모든 실내 출입문의 유효폭은 1.0m 이상으로 한다.
•모든 실내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1.8m 이상으로 한다.
•실내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자동문으로 설치하며,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으로 실명을 부착한다.
•자동문이 아닌 실내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한다.
•미닫이문의 경우 반자동문으로 설치하거나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복도 및 통로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복도는 단차가 전혀 없도록 하며, 2c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을 경우 기울기 1/18(5.56%, 3.18°) 이하, 유효폭 1.2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복도의 바닥은 미끄럽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벽면에 돌출물이나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도록 하며,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도록 한다. 복도의 벽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0.15~0.35m 까지 킥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한다.
•복도에 안내판, 조명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높이 2.1m 이상으로 설치한다.

▌ 계단

•모든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8m 마다 수평면으로 된 휴식참을 설치한다.
•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하고,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모든 계단의 디딤판의 너비는 28cm 이상, 챌면의 높이는 18cm 이하로 설치한다.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챌면과 디딤판이 명확히 식별되도록 한다.
•계단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을 하고, 디딤판은 식별이 잘 되는 색상과 재질을 사용하거나 계단코의 색상을 바닥재의 색상과 다르게 설치한다.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은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모든 계단의 양 측면에는 높이 0.8~0.9m 로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은 수평으로 0.3m 연장하며, 손잡이의 양 끝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를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손잡이의 지름은 3.2~3.8cm로 하고 벽에서 5cm내외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2중으로 설치할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경사로

•경사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5.56%, 3.18°) 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도록 한다.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으며,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경사로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0.75m마다 수평으로 된 1.5m 이상의 휴식참을 설치하며,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경사로의 양 측면에는 5cm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경사로의 높이가 0.15m 이상일 경우 경사로의 양측에 연속손잡이를 2단으로 설치한다. 윗 손잡이 높이는 0.85m, 아랫 손잡이 높이는 0.65m로 하되, 굵기는 3.2~3.5cm로 하며, 손잡이의 양끝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와 위치를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승강기

•2개 층 이상의 실내놀이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되, 1대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용 승강기로 설치한다.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승강기 전면에는 1.5×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고, 되열림장치를 설치한다.
•승강기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 확보한다.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 및 승강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부착한다.
•승강기 외부 조작설비는 높이 0.8~1.2m로 설치하되, 고정식 점자표시를 부착하고, 조작버튼 전면 0.3m 전방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버튼은 양각형태의 버튼식으로 설치하되, 누르면 표시등이 켜지도록 설치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높이 1.5m, 점자표시), 어린이 및 휠체어 사용자용(0.85m 내외)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 크기는 2cm 이상으로 설치한다.
•승강기 내부 세로 조작설비는 양각형태의 버튼식으로 설치한다. 버튼의 크기 2cm 이상으로 하며, 누르면 점멸등 및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하고, 높이 1.5m의 범위 내에 설치하며 버튼에 점자표시(고정식)를 한다.
•승강기 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양각형태의 버튼식으로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 및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하도록 한다. 가로 조작 설비의 높이는 0.85m 내외로 하되 수평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벽 중앙에 설치하고, 밑면을 25°정도 들어 올리거나 손잡이에 연결된 형태로 설치한다. 버튼의 크기는 2cm 이상으로 한다.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 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한다.
•두 번 눌러 취소가 되는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는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승강기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높이 85cm±5cm에, 지름 3.2~3.8cm로 설치하되, 벽과 손잡이 간격은 5cm 내외로 하고,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한다.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2장을 설치한다.

3) 위생시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1층을 포함하여 전체 층의 50% 이상의 층에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각각 따로 설치한다.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녀 구분을 안내하는 점자표지 설치 및 점자표지 전면 0.3m에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접근

•화장실로 접근하는 통로에는 단차가 전혀 없으며 1.5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바닥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줄눈이 0.5cm 이하인 판석으로 마감한다.

▌ 출입구(문)

•화장실 출입구(문)은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하며,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은 유효폭 1.0m 이상의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버튼식 잠금장치와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를 함께 설치한다. 자동문 버튼은 바닥으로부터 0.8~0.9m 높이에, 벽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으로 설치하되,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1.4m 이상 확보한다.
•대변기는 벽걸이형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4~0.45m로 하며, 비데를 설치한다.
•대변기 양옆의 수평손잡이는 0.65m 높이에, 변기 중심에서 0.4m 내외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 간격은 0.7m 내외로 한다. 벽면 쪽 수평손잡이는 수직 손잡이와 연결할 수 있으며, 0.9m 길이로 설치하고, 다른 쪽 손잡이는 상하회전식 손잡이로 설치한다. 손잡이의 두께는 지름 3.2~3.8cm로 한다.
•대변기에는 등받이와 비상호출벨을 설치하되,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 걸이 및 비상호출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비상호출벨은 1개는 0.6~0.9m 높이에 변기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다른 1개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2m 내외, 변기 끝에서 0,2m 내외의 거리에 설치한다.

•조명스위치와 화장지걸이는 바닥으로부터 0.8~1.2m 사이에 설치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식을 설치한다. 광감지식의 경우 센서가 변기 뚜껑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하되, 높이가1.2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가족 화장실

•가족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별개로 설치한다.
•가족화장실의 출입문 유효폭은 1.0m 이상으로 하되, 미닫이나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가족화장실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확보한다.
•가족화장실에는 성인용 대변기 외에도 어린이용 대변기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용 대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성인용 대변기 양측에는 높이 0.65m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며 0.75m 이상의 측면 공간을 확보하고, 측면 공간이 확보된 쪽의 수평손잡이는 상하 회전식으로 설치하고 다른 쪽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성인용 대변기 전면 및 세면대 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1.4×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출입문에서 대변기 및 세면대로 이어지는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한다.
•세면대는 내부에 단독형 또는 카운터형으로 설치하되, 단독형 세면대의 좌우에는 세면대 높이와 동일한 높이의 상하 회전형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세면대 상부의 높이는 0.85m 이하, 하부의 높이는 0.65m 이상, 깊이는 0.45m 이상 확보한다.
•거울은 전면 거울로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9m에 하단이 오도록 한다.
•수도꼭지는 레버형으로 하되, 냉·온수 점자표시를 한다.
•기저귀 교환대는 0.85m 내외의 높이로 설치하되, 기저귀 교환대 전면에는 1.5×1.5m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가족화장실에는 소변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소변기

•장애인용 소변기는 소변기가 설치된 곳에 1개소 이상 설치하되, 바닥 부착형 소변기로 설치한다.
•장애인용 소변기에는 수평손잡이를 높이 0.8~0.9m에 설치한다. 수평손잡이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 하고,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 내외로 설치한다.
•소변기의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1.2m,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설치하되, 하단부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3.8cm가 되도록 하며, 차갑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다.

▌ 세면대

•독립형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 칸 내에는 단독형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세면대 및 세면대 손잡이는 휠체어의 대변기 접근 및 회전에 방행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단독형 세면대 좌우에는 기준에 맞는 수평손잡이를 양측에 설치해야 하며, 수평손잡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카운터형(테이블형)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운터형 세면대의 경우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0.85m 이하, 하부 높이는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독형 세면대의 양측면에는 세면대 상부와 동일한 높이로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되, 상하회전식 손잡이로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세면대 전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세면대의 거울은 하단 높이 바닥으로부터 0.9m 내외, 너비 세면대의 유효폭 이상, 길이 0.65m 이상의 전면 거울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꼭지는 누름버튼식, 레버식, 광감지식으로 설치하되, 레버식에는 냉·온수 점자표지를 하여야 한다.

4) 안내시설

▌ 안내설비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 가능한 안내판을 이동 경로에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되, 촉지도식 안내판 및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안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1.2m 범위 내에 설치하고 60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갖춘 조명을 설치한다.
•점자블록은 크기 0.3×0.3m, 색상은 황색 또는 바닥과 구별하기 쉬운 색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되, 매립식으로 설치한다.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하거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거나 또는 색 대비를 통해 안내를 하며, 대지 경계선에 접근 할 때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한다.
•안내판의 안내표시는 고딕체 등 읽기 좋은 글자체를 사용하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하고, 그림 및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한다.

▌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장애인 대피용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 설치한다.
•청각장애인 대피용 경광등 및 조명이 포함된 문자 안내 설비를 연속 설치한다.
•경광등은 남·여 화장실 내부(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족화장실 포함), 샤워실 및 탈의실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음성과 점멸이 동시에 나오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을 피난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시설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출입문 옆 또는 출입문 전면에 설치하고, 접근로 상에 단차가 전혀 없도록 설치한다.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상단 높이는 0.8~0.9m, 하부 높이는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매표소의 상부 높이 0.7~0.9m, 하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하고 매표소 0.3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설치한다.
•모든 판매기의 동전(카드) 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 높이는 0.4~1.2m로 하며, 판매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설치한다. 조작버튼에는 품목과 금액을 점자로 표시한다.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0.8m로 하며, 조작기는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음료대 대신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의 조작기, 분출구 및 종이컵 비치대 높이는 0.7~0.8m 로 하며, 종이컵 및 음료대 전면에는 1.5×1.5m 이상의 수평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피난구 설치

•실내놀이터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하고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피난구까지 안내한다.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과 피난 훈련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 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을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 임산부 휴게 시설

•접근 통로에는 1.5m 이상의 통로폭을 확보하고 단차가 전혀 없도록 한다.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단차가 없도록 설치한다.
•임산부 휴게시설의 내부에는 유효폭1.5m 이상의 통로, 1.4×1.4m 이상의 휠체어 회전공간을 확보한다.
•내부 공간에는 수유 공간 및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한다.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는 상단 높이 0.85m 이하, 하단 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한다.
•수유 공간에 의자를 설치할 경우 의자의 전면 및 측면에는 1.4×1.4m 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마련한다.

▌ 놀이시설

•놀이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는(통합) 시설로 설치한다.

▌ 휴식공간

•휴식공간의 진입구는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단차가 전혀 없거나 2cm를 초과하는 단차의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휴식공간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1.4m의 회전공간을확보한다.
•휴게의자가 설치될 경우 등받이 및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부록 2. 포커스그룹 인터뷰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놀이공간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장애아동과 실내놀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장애아동의 부모와 비장애아동의 장애인부모 20명이며, 실제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과 필요사항, 제안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심층인터뷰는 사전에 기초 질문지를 제공한 후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방식은 온라인 줌회의를 통한 비대면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 2가지 방식이었으며, 비대면 인터뷰의 경우 개인 또는 그룹인터뷰로 진행되었고, 대면 인터뷰는 인터뷰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2) 기초 질문지

기초 질문지는 연구진이 사전 논의를 통해 현재 장애아동의 놀이 패턴과 실내놀이터에서의 놀이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놀이에 대해서는 학원이나 태권도장, 복지관, 공부방 등에서 놀이를 결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행사 참여 등의 목적성을 띈 놀이활동을 제외하고 아동의 순수한 자발적, 주도적 놀이에 한정하여 질문 및 답변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아동 및 장애인 보호자의 생활 패턴이나 특성에 따른 자유로운 질문이나 다양한 경험을 제한 없이 경청하기도 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답자 인적사항

(1) 이름 :
(2) 아동 장애 여부, 종류 및 정도 :
(3) 응답자 장애 여부, 종류 및 정도 :
(4) 아동의 교육기관, 소속, 유형, 기간, 연령 등 :
(5) 연락처 :
(6) 기타 특이사항

2. 아동의 놀이 형태

(1) 장애가 있는 자녀가 가장 많이 놀이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친구네 집, 치료실 등)

(2) 장애가 있는 자녀의 평소 놀이 형태(혼자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 등)나 놀이 시간(놀이 유지 시간, 놀이 시간대-방과후, 저녁 등)은 어떠한가요?
(3) 장애가 있는 자녀가 놀이활동(놀이터, 실내놀이터, 가정이나 학교 등)을 할 때 보호자 없이 스스로 놀 수 있나요?
(4) 장애가 있는 자녀가 비장애아동과 보호자 없이 스스로 놀 수 있는 기회, 공간이 있나요?

3. 실내놀이터 이용
(1) 평소에 실내놀이터(키즈카페, 공공 실내놀이터, 도서관놀이터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
(2)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
- 평균적으로 실내놀이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실내놀이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3)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실내놀이터가 없어서
- 거리가 멀거나 주차 등 접근성이 떨어져서
- 실내놀이터에 가도 놀이할 수 없는 편의성이 떨어져서
-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 편안함과 소속감이 떨어져서
- 기타

4. 실내놀이터에서의 놀이 가능성
(1) 실내놀이터까지 이동 방법 및 이동 소요시간
(2) 실내놀이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3)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4) 장애가 있는 자녀가 실내놀이터에서 스스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5)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해결방식은 어떠했나요?
(6) 놀이를 더욱 잘 하기 위하여 놀이공간, 놀잇감, 놀이지원(선생님, 도우미 등) 등 어떠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까요?
(7) 놀이시설 이외에 주차시설, 접근로, 주출입구 등 매개시설과 화장실, 내부 시설 등에서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무장애 실내놀이터

(1) 장애 및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면 자녀와 함께 이용할 의향이 있나요?
(2) 만약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3) 무장애 실내놀이터에 대한 안내문,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장난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자세히 게재되는 안내방식(안내판, 사인물, 픽토그램, 그림, 타이틀 표기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그밖에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3) 심층 인터뷰 참가자 기본정보

-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이 있는 보호자(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 인터뷰는 참가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 대면, 개인 온라인, 그룹 온라인 형태로 진행
- 인터뷰 참여자는 “2022 무장애 실내놀이터 지원사업”의 어린이 워크숍 참가자의 보호자와 장애아동 단체의 추천 및 온라인 참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장애아동 보호자 18명이 참여
- 본 인터뷰 참가자는 지체장애(근육장애 포함),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보호자가 참여하였으며, 구성은 아래와 같음

번호	이름	인터뷰 방식	인터뷰 형태	보호자의 장애유형	아동의 장애유형	아동 연령	아동과의 관계
1	권00	온라인	그룹	비장애	지체장애	10살	모
2	백00	온라인	그룹	비장애	지적장애	11살	모
3	문00	온라인	그룹	비장애	지체장애	6살	모
4	배00	온라인	그룹	비장애	지체장애	6살	모
5	이00	온라인	그룹	비장애	자폐성장애	13살	모
6	이00	온라인	그룹	비장애	뇌병변장애	10살	모
7	이00	온라인	그룹	비장애	지적장애	13살	모
8	이00	대면	단독	비장애	지적장애	10살	모

번호	이름	인터뷰 방식	인터뷰 형태	보호자의 장애유형	아동의 장애유형	아동 연령	아동과의 관계
9	이00	대면	단독	비장애	자폐성장애	9살	모
10	박00	온라인	그룹	지체장애	비장애	13살	모
11	장00	온라인	그룹	지체장애	비장애	11살, 9살, 8살	모
12	김00	온라인	그룹	비장애	자폐성장애	10살	모
13	박00	온라인	그룹	비장애	지체장애	10살	모
14	노00	온라인	그룹	지체장애	비장애	13살	부
15	남00	온라인	단독	지체장애	비장애	11살, 7살	부
16	조00	대면	단독	비장애	지적장애	10살	모
17	김00	대면	단독	비장애	자폐성장애	11살	모
18	구00	대면	단독	지체장애	비장애	13살	모

4) FGI 주요 결과

① 아동의 놀이 형태

□ 놀이 장소 및 시간대

아동의 놀이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놀이가 주로 이뤄지는 장소와 시간대, 놀이상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주된 놀이 장소는 집이었고 학교 또는 유치원 등의 놀이공간, 놀이터에서도 놀이가 이뤄졌다.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방과 후 치료실이나 센터 등에서 놀이치료나 놀이를 동반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노는 경우가 많았다. 순수한 놀이로 보기는 어려우나 보호자는 대부분 치료를 겸한 놀이활동을 놀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아동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치료나 교육과 같은 별도의 목적을 겸한 놀이활동 이외에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놀이에 대한 인식은 적었으며, 이러한 놀이는 학교나 유치원, 학원, 치료실 등의 외부 일정을 마친 후 저녁식사 전후의 시간대에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방과 후 병원이나 치료실 일정들이 이어져 놀이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는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후 한두 시까지 학교를 다녀온 이후에 치료실이라던가 그런 데를 많이 다녀요. 학교를 가고 나서부터는 키즈카페나 보통 실내놀이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 시간 기회가 많이 줄어서 지금은 주

로 체육센터나 이런 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룹으로 놀이를 한다든지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체장애아동)

학교에서 하교하면, 어린이집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하교 하면 저녁 6시까지 치료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6시 이후에 집에 들어와요. 근데 저희 아이가 경련이 있어서 일찍 잠들어요. 경련이 있는 친구들의 특성이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6시에 저녁 먹고 바로 자기 때문에 사실 놀이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폐성 및 지적장애)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 친구다 보니까 놀이터가 좁고 놀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불편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공원 산책이나 숲놀이터 같은 곳을 좋아했어요. 숲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 줄 잡고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활동들을 좋아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폐성장애아동)

저도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엄마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센터를 갔다 오고 나면 무조건 집으로 간대요. 빨리 일정을 끝내고 빨리 쉬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좋기는 좋은데 발달장애인 부모들 애들한테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저 또한도 그렇고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집에 있지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자폐성장애아동)

□ 놀이 형태 및 유지시간

자폐성장애아동의 놀이 형태는 주로 혼자놀이 형태가 많았다. 또래의 다른 아동과 어울리고자 하는 동기가 적고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다른 아동과 함께 어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화나 의사소통은 적더라도 함께놀이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교사나 보호자 등 중재자가 개입하여 놀이를 유도하는 경우에 함께놀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체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가정 내 등 실내놀이에서는 특이점은 없었다. 그러나 실외놀이터에서 놀 때에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 아이가 혼자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봐요. 휴대폰을 못 보게 하면은 진짜 어두워져요. 아무것도 안하고 할 게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다른 것을 가지고 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면 놀긴 노는데 아이들이 다르다는 걸 아니까 놀아주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함께 놀고 안 놀아 줘요. 어느 정도 선까지 놀고 딱 벽을 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걸 알고 점점 그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안 나가더라고요. (자폐성장애)

친화력 좋은 애들은 또 진짜 엄청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장애여도 그것도 확실히 다른데 저희 아이는 사실 아직 혼자놀이 하고 있긴 하고요. 놀이 시간이 되게 사실은 짧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집중이 15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진짜 탐색을 정말 오래 해요 근데 집중력은 좀 짧은 편이에요. (지적 및 자폐성장애아동)

집 안에서 혼자 놀아요. 근데 놀이터를 가든 어딜 가든 사실 저하고 놀지는 않아요. 발달장애 아이들의 특성이 특히 어릴 때는 지적장애든 자폐성장애든 크게 차이가 없이 사회성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혼자 놀면서 엄마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지적 및 자폐성장애아동)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익숙한 친구와는 피하지는 않고 친구랑 손잡고 같이 산책하기 이런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비장애 아이들처럼 장난감 서로 주고받기 하면서 같이 노는 건 아직 힘들어요. 보조를 해줬을 때 약간 가능한 정도. (자폐성장애아동)

□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이용 가능성

아동이 실내놀이터를 비롯해 야외놀이터, 가정이나 학교 등 장소에서 놀이활동을 할 때 보호자가 함께 놀지 않아도 놀이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가에 대해서는 장애 여부보다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은 놀이-그림 그리기, 클레이 만들기 등-는 자발적으로 혼자서 노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만, 상호작용이나 2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보호자 등 함께 놀 사람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혼자 노는 놀이 위주로 놀이가 나타났다. 놀이를 함께 하는 상대는 거의 대부분이 보호자나 활동지원사, 자주 만나는 친구 등 익숙한 관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지체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조작이나 소근육 발달이 늦어 도구나 놀이기구 이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놀이에서 원하는 만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 가지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쉽게 싫증을 느끼게 된다. 또래 친구와 함께 놀다가도 속도나 활동에서 격차가 느껴질 때 놀이를 포기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이유는 다르지만, 보호자는 아동 가까이에서 탐색이나 놀이를 지켜보거나 도와주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는 자폐 중증이에요. 아직은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거는 잘 안돼요. 근데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있으면 쳐다는 보지만 이제 막상 누가 다가오면은 피해버리더라고요. 관심은 있지만 같이 노는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되요. (자폐성장애아동)

저희 아이는 방방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는데 가서 탐색을 조금 하다가 자기가 소근육 발달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참여했던 놀이 워크숍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설명도 해주고 같이 이끌어주니까 놀이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지체장애아동)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진짜 혼자 노는 경우가 많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탐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좀 약간 취약점이에요. 뭔가 물건이 많으면 그걸 다 봐야 되고, 장소가 넓으면 다 돌아봐야 하고 그래요. 키즈카페 가서 한 2시간 있다고 하면 2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뭔가 놀이시설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이거 다 보고 탐색하는 건데, 2시간 내내 그러는 거죠. 그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신나 있는 거예요. (지적 및 자폐성장애아동)

감각 추구가 강한 아이다 보니 모든 걸 걸어가면서 손으로 쓸면서 가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만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조심스러워서 걸을 때 다른 사람과 안 닿게 한다든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른 아이들을 터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예 혼자 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폐성장애아동)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 놀이 기회

평소에 놀이터나 실내놀이터 등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서로 어울려 놀거나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장애아동의 보호자 중에는 사회성을 기르거나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놀이터나 실내놀이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호자가 놀이를 도와주거나 중재하는 경우에 조금 쉽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었다. 비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사실은 비장애아동과 놀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좀 많이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도로에 뛰어들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특수학교로 전학을 하고 나니까 (비장애)동생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죠. 우선 장애아동들 대부분은 비장애 형제가 있으면 형제나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적장애아동)

놀이터에서 제가 훌라후프 같은 걸 가지고 아이랑 같이 놀아주면 주변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더라구요. 어쨌든 어른이 같이 놀아줘야 이 아이들도 여기 저희 아이도 같이 그 아이들 속에서 놀게 되지 이렇게 아이만 둬서는 좀 심한 장애다 보니까 같이 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놀아주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런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번 그냥 제가 쑥 빠져보고 혼자 같이 놀아보라고 하기는 하구요. (자폐성장애아동)

실외놀이터는 친구들끼리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고학년이라든지 이렇게 나이 많은 친구들도 언니 오빠들도 오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 아이가 다가갔을 때는 많이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아요. 실내놀이터에 가면 저도 편하고 아이도 좀 더 자연스럽게 사회적 놀이를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어느 곳을 가든 장애아동보다는 비장애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편이에요. (지적장애아동)

②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

□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

평소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모두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이 있었고, 주로 민간 실내놀이터인 키즈카페 또는 스포츠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기도 했다.

실내놀이터의 이용 빈도에 관해서는 보호자 동반과 위치 등의 요인으로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 1회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월 1~2회 정도였다.

키즈카페를 아예 작정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방방을 간다든지 이런 실내 대형 실내놀이터를 수원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다녔는데 김포공항도 많이 갔었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주구장창 갔던 것 같아요. (비장애 자녀 지체장애 보호자)

□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유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장애 및 비장애아동 보호자 모두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너무 넓고 오픈되어 있는 실외놀이터에서는 충동적으로 외부로 이탈하는 아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실외놀이터의 시설물이 실내놀이터에 비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씨, 미세먼지 등에도 실내놀이터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저는 솔직히 주차고 거리고 상관없어요. 좋다면 어디든 가요. 거기 가서 다른 아이들 특히 비장애 아이들, 엄마는 상관 없는데 비장애 아이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 때문에 저희 아이가 받는 상처 때문에 주저하는 게 많아서 요즘 실내놀이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일부러 실외놀이터를 많이 찾아요. 숲속놀이터 같은 곳이 많잖아요. 전에 갔던 곳은 아무것도 없고 땅만 고르고 뾰족한 돌은

좀 갈아서 다치지만 않는 선에서 해놓고 크게 공간 해놓고 펜스하고 센서만 달아놓고 거기 장애인 아이들과 엄마들이 주로 갈 수 있게 해놓고 거기에서 상처 안 받고 놀 수 있었어요. 그게 여기서 아이들이 뭘 배워 뭘 해? 사회성은? 하고 걱정을 했는데, 너무 편안해하는 거예요. 그걸로 됐다 생각해요. (자폐성장애아동)

요즘 아이가 자발적으로 일반 실외놀이터는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해요. 이유는 실외 놀이터는 일단 미끄럼틀이라든지 장애물 건너기라든지 이런 게 다 대부분 높게 돼 있잖아요. 그런 높은 곳을 일단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하는데 일단 실내에서는 마음껏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실내놀이터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엄마인 저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다 보니까 실내놀이터를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적장애아동)

어렸을 때는 공동 육아 같은 것도 관심이 되게 많고, 또 아이들 친구 만들려고 많이 다녔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그냥 장애인 부모들끼리 좀 더 이제 정보 교환도 하고 친구들을 만들어주려고 그때부터는 친구들하고 다녀요. 실내놀이터는 날씨 타지 않고 미세먼지 걱정 안 해도 되어 많이 갑니다. 되도록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가야 저희가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어요. (지적장애아동)

저희가 공동체 사업도 좀 하면서 만나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실내놀이터에 우리 아이들만 아예 전세 내서 가면 진짜 그거야 말 그대로 눈치를 안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트러블이 생기는 거면 그건 오히려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아이는 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면 상호 얘기 들어보고 중재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아예 생판 모르는 어머님들 그러니까 비장애아동들의 어머님들 하고보다는 더 원활하지요. 그리고 야외에도 가봤는데 야외에는 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내 놀이터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죠 어머님들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실내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지적장애아동)

□ 실내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실내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이 적거나 재미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불편한 시선 때문인 경우와 거리나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보호자는 이동수단이나 거리를 이유로 실내놀이터보다는 가까운 실외놀이터를 주로 데리고 다닌다고 답했다.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실내놀이터의 이용 가격과 부대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도 실내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였다.

키즈카페를 이때까지 딱 두 번 간 것 같아요. 한 번은 아이가 6살 때 친구 생일 때 초대받아서 한 번 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던 게 전부예요. 제가 키즈 카페를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던 게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누워 있는 친구다 보니 아이를 안고 다니니까 시선이 다 저한테로 오더라고요. 아이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제가 그 시선들이 조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키즈카페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지체장애아동)

가본 적은 있는데 자주는 못 갔습니다. 두 번 갔나. 거리가 멀어요. 차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걸어가기는 좀 거리가 멀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키즈카페를 이용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내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면은 논 다음에 식사하는 거 아이가 원하는 걸 또 그런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되니까요. (비장애아동 지체장애 보호자)

거기를 왜 자주 이용을 하냐면 그곳은 시야가 확보되어 있어서 안전하니까요. 놀이터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이게 휠체어를 타고 전동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네 살 다섯 살 때 정말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다칠까 봐 오히려 실내놀이터를 가면 거기 조금 안전하거든요. (비장애아동 지체장애 보호자)

저도 무장애놀이터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다녔거든요. 어린이대공원에 있고 전국에 몇 개 있잖아요. 그냥 이런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보통 평범한 놀이터는 아무래도 불편한데, 신경을 좀 쓴데라 아무래도 좀 나아요. (지체장애아동)

□ 실내놀이터 선택 이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실내놀이터의 놀이시설물의 종류와 매력도에 따라 어느 실내놀이터를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이나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비롯한 시설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분위기나 관리자의 태도 등이 실내놀이터 선택에 가장 큰 조건이 되었다. 또한 활동 공간이 여유 있는 넓은 실내놀이터를 선호했다.

특히 놀다가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트러블을 줄일 수 있도록 실내가 혼잡하지 않고,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는 공간 배치를 선호하였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필요할 때 정적인 분위기와 개인적인 공간으로 숨어들어 자극을 줄일 수 있는 곳을 선호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돌발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아동의 특성상 어린이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조용한 곳에 설치된 실내놀이터의 경우 관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대응에 불편을 느껴 이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실내놀이터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안전성이었다. 최근에는 실내놀이터에 보호자 입장이 제한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보호자가 아동의 놀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지, 시설물이나 공간, 관리

자 배치 등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을 선택한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시야 확보 여부가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했다.

우선 제가 도서관(의 실내놀이터)은 잘 안 가요. 책을 찢을까 봐요. 그리고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나가라고 하거든요.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말란다고 안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는 게 좋아,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한 번으로 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 실랑이를 하느니 이제 안 가게 된 거죠. 근처에 어린이 미술관(의 실내놀이터)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아동)

목적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다른 아이들보다 적은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치료 위주의 경험으로 가야하고 블록놀이 하나 하더라도 치료목적으로 해야 하고 운동을 하나 해도 순수하게 즐겁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수체육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을 이용해 봤지만 그냥 가장 애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뇌병변장애아동)

저희 아이 발달 수준은 아직 이제 어린 아이들 수준이라 사실 그런 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이제 10살이 되니까 덩치가 커서 못 가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우선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은 안 가요 저는 한눈 팔았다가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쳤는데 아이가 너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지적장애아동)

③ 실내놀이터의 선택 요소

□ 이동 방법 및 소요시간

장애아동의 보호자들은 실내놀이터까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소요시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동에게 맞는 실내놀이터라고 판단하면, 시간이나 거리, 비용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차로 이동하는 이유로는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외출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나 소지품 등이 많기 때문이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점 등을 들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보호자의 경우에는 도보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거나 장애인콜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다소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소요시간은 30분 내외, 1시간 이내의 실내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자차로 거의 대부분 다녀요. 이것도 근데 좀 특성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지하철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어쩔 수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차로 다녔어요. (지적장애아동)

자주 이용하는 곳은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집 근처를 많이 이용했어요. 전동휠체어로 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을 도보로 다녔고요. 좀 먼 곳은 지하철이나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곳을 갔었죠. (비장애아동 지체장애 보호자)

가깝진 않았어요. 항상 차 타고 이제 움직여서 가는 거였지 왜냐면은 사실 그냥 저희도 아파트 안에는 놀이터가 있긴 한데 거기도 우레탄 같은 폭신폭신한 바닥이 아니고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기도 불편하고 저는 제일 큰 게 그 공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쉴 곳도 마땅치 않고 놀 곳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돈을 주면 이제 넓은 공간으로 갈 수 있어서 저는 애들 어렸을 때 키즈카페를 많이 이용했던 건데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체장애아동)

□ 선호하는 놀이시설

기존 실내놀이터의 놀이기구 중에서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로는 트램펄린을 가장 많이 꼽았다. 활동적인 놀이를 선호하는 가운데서도 아동과 보호자 모두 부딪힘이나 안전 등을 늘 신경쓰고 있었고, 난이도가 높은 놀이에 무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놀이기구나 놀이 유형에서도 난이도를 다양하게 설치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선호했다.

놀이기구의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체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손잡이나 지지대 같은 설비를 필요로 했다. 보호자들은 자녀가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놀이를 원하였지만, 다른 아동과 충돌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었다.

키즈카페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신나는 분위기에서 트램펄린을 방방 뛰면서 정말 신나게 넘어지면서도 뛰고 놀아요. 그 옆에 있는 아이들 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걸 본인이 느끼든 아니든 그냥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요. 거기서 어울러져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인 곳이었으면 싶더라고요. (뇌병변장애아동)

아직까지는 거의 탐색이 많고요. 트램펄린을 진짜 좋아해요. 그밖에 우리 아이들은 감각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냄새를 맡으러 다니거나 새 물건 한 번씩 다 만져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쪽 좋아해서 두들기는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좀 두들겨보거나 하는데, 집중은 좀 짧아요. 대근육이

좋은 거에 비해서 겁을 내는 편이어서 정글짐 같은 것은 오래 하지는 않아요. (지적장애아동)

어떤 특정한 기능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놀 수 있거나 요새 박물관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쪽 면 튀어나오고 한쪽 면 튀어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는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가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지체장애아동)

트램펄린이나 떨어지는 거 심장 쫄깃해지는 것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짚라인, 트램펄린, 번지점프 같은 놀이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 위험한 것들을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폐성장애아동)

이동하는 놀잇감이요. 아이가 혼자 스스로 이동하는 게 많이 제한되고 어렵다보니까 우리 아이는 짚라인이라든지 이동하는 형태의 놀이기구를 많이 경험하고 싶어해요. (지체장애아동)

우리 아이는 미니 기차를 참 좋아해요. 작은 실내놀이터에는 없지만 규모가 큰 키즈카페 같은 곳에는 있더라고요. 기차 타고 실내놀이터를 한 바퀴 트랙을 따라 도는 건데 재밌어해요. (지적장애아동)

□ 실내놀이터에 필요한 시설

여러 실내놀이터와 놀이터를 경험한 보호자가 볼 때 아동과 보호자 모두를 생각할 때 실내놀이터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 물었다. 놀이기구에 대한 의견과 함께 기타 시설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에 어느 정도 활동적인 놀이를 하면 자극을 정리할 수 있도록 차단된 개인적 공간을 필요로 했다.

적어도 약간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해요. 약간 좀 차단되어 릴랙스할 수 있는 곳이요. 요즘에 키즈 놀이터 가보면은 너무 휘황찬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너무 음악도 크도 불빛도 너무 번쩍거려서, 이게 모든 공간이 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은 너무 분산되고 부담이 되거든요. (자극이 강해서) 문제행동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폐성장애아동)

턱이요, 우선은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법도 한 얘기인데 요즘에는 무장애 숲이라고 해서 이제 산을 오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사로를 뱅글뱅글 돌면서 그리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평지 거의 평지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한 적은 있는데 계단이 있으면 그 이상은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집라인처럼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혼자 탈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이랑 같이 엄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아줘서 타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체장애아동)

일단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을 위한 공간도 있었으면 해요. 아이가 2~3시간 놀고 나면 30분은 충분히 쉴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요, 실제로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2층 3층 침대들처럼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비장애 지체장애 보호자)

□ 실내놀이터에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놀이

장애아동의 경우 실내놀이터에서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할 수 없는 놀이시설이나 놀이가 있을 것이라 보았다. 아동이 선호하는 인기 놀이기구 중 트램펄린이나 짚라인 같은 놀이는 지체장애아동의 경우 구조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활동적인 놀이기구들은 난이도가 높아서 두려움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다. 쉬운 난이도의 기구를 함께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는 키즈카페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 하나가 아이가 호기심도 정말 많고 되게 적극적이에요. 열정도 강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초롱초롱하니 또렷한데 본인이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한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체장애아동)

순간순간 내가 못 타는 것 저거 타고 싶은데, 짚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거를 하고 싶어해요. 다른 애들 내려오는거 보면 스릴 있고 좋아보이잖아요. 그거를 타고 싶은데 못 타니까 시무룩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장비나 우리 장애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미끄럼틀도 리프트라든지 어떤 방법들로 아이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체장애아동)

거기는 무장애놀이터였기 때문이 이거보다(일반 놀이터보다) 경사가 더 완만하고 했는데도 아이가 못 올라가더라고요. 밟는 게 거기도 있었고 끈도 있었는데, 조금 더 유아틱하게 아이에게 더 완만하고 발판도 여러 개 더 촘촘하게 설치하고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우리 아이도 탈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무장애 놀이터였는데도 아이가 탈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지체장애아동)

웬만한 놀이기구 같은 거는 좋아하는데 볼풀장이라든지 터널이런 건 좋아하는 편이고. 실외놀이터 그네 같은 거는 아이가 잘 못 타요. 그네 타는 걸 어려워 하고 근력을 요하는 놀이 예를 들어 철봉 같은 건 아이가 너무 어려워해요. (지적장애아동)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놀이는 같이 하는 놀이인 거죠. 사회적 놀이들이 좀 많이 아쉬운 편이에요. 친구들 중에 사회성이 많이 올라와 이제 대화가 가능해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도 대화가 좀 많이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른 아이들하고 소꿉놀이 같은 것을 하고 싶지만 잘 하지 못하니까.. 본인도 관심은 있거든요. 하지만 관찰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무장애 놀이터가 되고 비장애아동들이나 발달도 빠른 친구들이 와서 노는 거를 계속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적장애아동)

실내는 아니지만 놀이터에서 제가 안아서 그네는 탄 적은 있었거든요. 그네 제가 앞으로 안아서 근데 지금은 다리가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제가 안고 타는 것도 그렇고 이 아이도 엄마가 안고 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타고 싶다, 저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라고 부탁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체장애아동)

□ 아동 단독으로 놀이기구 이용이 어려운 점

실내놀이터의 놀이기구 중 아동이 단독으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필요 시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하였다. 장애아동은 아동 스스로가 다치거나 부딪힘 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놀이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지켜보고 있어야 안심하고 이용하였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아 다른 아이들과 놀이나 놀이기구 이용 시 놀이 규칙이나 순서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특히 줄을 서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보호자나 중재자의 설명과 통제가 필요한 점을 어렵게 보았다.

키즈카페는 몇 번 가기는 했지만 솔직히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면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더라고요. 뭐 방방을 뛴다든지 다른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다가도 주저하게되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엄마 집에 가자 집에서 노는 게 더 좋아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고요. (지체장애아동)

사회성이 없다는 게 이제 의미하는 게 이렇게 놀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회성에는 규칙이라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약간 규칙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 저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애 같으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들하고도 좀 무서워 무서움이 좀 많거든요. 겁이 많은 스타일인데 이런 미끄럼틀이나 그리고 이제 침대 놀이터 가면은 좀 챌린지 이런 놀이 시설들이 많잖아요. 평소에 잘 못 봤던 약간 용기를 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 높은 데 좀 올라간다든지 잡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면 이제 못하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기다

리지 못하고. (지적장애아동)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뒤에서 재촉을 하면, 우리 애는 못 탈 거 같으면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또 이제 특징이 대부분 못하는데도 계속 거기 집착을 해요. 우리 애들이 예 그냥 무서우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면서 자꾸 그거를 또 회피하는 거는 또 그게 마음에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죠. (지적장애아동)

저희 아이는 내려오는 데 다른 비장애아동들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이거를 비장애아동들이 얘네들도 애들이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비장애아동들은 민첩성이 있어서 피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동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아 부모들은 노심초사하는 거죠. (지적장애아동)

소통이 일단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소리를 꽥 지른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랬을 때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의 이런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아이가 뭐 의도는 없는데 갑자기 툭 치고 지나가거나 할 때 제가 이제 또 우리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고 달래야 하는 거예요. 또 아이가 같이 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아이가 자기만 타겠다 그런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지는 거예요. 계단을 막는다든지 그럴 때 제재하면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상황이 반복돼요. (지적장애아동)

발달장애인은 좀 또 어려운 게 아이들이 감각적인 문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신체장애가 있는 아이들처럼 못 보거나 못 듣거나 하는 건 아니더라도 발달이 느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놀이시설을 정확하게 다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통증에 대해서도 저희 아이가 또 특히 통증에 서도 되게 무뎌가지고 5살 이전에는 저희가 아픈 거를 잘 몰랐더라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아파도 어디가 다쳐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지적 및 자폐성장애아동)

□ 아동의 놀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실내놀이터 이용 경험을 통해 장애 및 비장애아동이 좀 더 잘 놀 수 있으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물었다. 물리적인 부분을 비롯해 프로그램이나 인적 지원, 운영방침 등 제한 없이 의견을 들어보았다.

실내놀이터의 대부분이 미취학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 및 지체장애아동의 인지 정도와 활동성에 맞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연령 때문에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지 못하는 실내놀이터의 경우에 보호자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 놀이터 이용

이 어려웠다. 반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실내놀이터의 구조나 입구의 시설물 등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실내놀이터 관리자나 안전요원 등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놀이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꼽았다. 보호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통한 놀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통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놀이터는 대상이 유아들 대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인 키즈카페도 예전에는 유아틱한 곳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트램펄린을 쫙 깔아놓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지루하지 않도록 한 곳도 많아졌어요. 우리 아이도 너무 놀고 싶어 했는데,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옆에 들어가서 잡아주고 많이 그랬는데,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고 나서는 다 포기하게 됐죠. (지체장애아동)

익스트림 같은 실내 놀이터에서는 그런 개별적인 놀이기구마다 그 기구 이용을 도와주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우리 아이의 특성이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해요. 밀 때 천천히 밀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이런 얘기를 늘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붙어서 말을 안 해도 아이들의 특성을 알아서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지적장애아동)

요즘에는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키즈 카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 기구 되게 크게 이제 만들고 약간 정글 정글짐 키운 것처럼 해서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 어른이 들어가기에는 좀 작은 곳들도 사실 있거든요. 따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이를 혼자 들여보내기엔 어디에서 멈춰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이가 미끄럼틀을 내려가야 되는데 막고 있을 수도 있고 잠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갑자기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지적 및 자폐성장애)

놀이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용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동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영상이나 그림으로 내가 어떻게 놀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될 것 같아요. (비장애아동 지체장애 보호자)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인력을 상시 배치 이렇게는 힘들기 때문에 생각했던 게 유니버설디자인 입각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공식적으로 규칙을 다 같이 지키게 하자였어요. 중재해줄 수 있는 관리

자나 선생님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상시 근무를 하면서 지체장애 아이들이나 발달장애를 아이들이 선호하는 요일에 와서 자유롭게 올 수는 있게끔. 그렇지만 이날은 지체장애만 노는 날 발달장애만 노는 날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하고요. (자폐성장애아동)

발달장애 친구들도 키오스크를 잘 다룰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림을 보고 이렇게 타는 거구나 이렇게 놀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거 우선 그거를 보고 사실 놀이기구 앞에도 저는 여건이 되면은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씩 포스터처럼 이제 그거는 딱 그 놀이기구에 있는 그 내용만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폐성장애아동)

시소를 타려고 할 때 아빠가 안아서 태워줘야 하거든요. 시소를 올라탈 때 다리를 들어서 올라가 타야 하는데 혼자서는 그게 안 되니까요. 아이도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엄마랑 있을 때는 얘도 이제 엄마가 힘이 약하다는 걸 아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부탁하기가 자기도 불안할 때도 있는 거예요. 놀이시설물 타는 걸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좋죠. (지체장애아동)

옆에 있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어 쟤는 왜 그림을 저렇게 그리지? 아니면 비교하는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도 그런 말을 한 번만 들어도 아이는 그 기억만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안 좋은 기억 같은 것들을요. 보조적으로 선생님이 조금 도움을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간격이 더 있다든가 그런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뇌병변장애아동)

독일인지 유럽 쪽 나라에서는 놀이터에 선생님이 있어서 애들 놀 때 규칙 같은 거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이가 뛰는 거가 안 되니까, 다른 아이들 노는 걸 보면서 얼마나 재미있어 보이겠어요. 얘는 놀이에 끼면 바로 술래가 되는 거예요. 애들끼리는 이걸 조화롭게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엄마인 제가 자꾸 끼면은 애들이 아무래도 불편해하죠. 그러면 점차 아이를 멀리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놀이터에 상주하는 그런 선생님이 도와준다면 멀더라도 찾아갈 것 같아요. (지체장애아동)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를 발달장애인은 인지가 어렵잖아요. 실내놀이터에 기구들은 대부분 유아들 몸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몸이 크니까 기구에 몸이 끼인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놀이기구의 크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는 법이나 놀이에 대한 규칙이나 순서를 지키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때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어요. (지적장애아동)

교육 매뉴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누가 인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그 시스템대로 중재하고, 잘못한 거에 보상을 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아무리 발달장애라 하더라도 얘가 발달장애라 뺏었는데 애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자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행동의 원리를 다 같이 이해하고 그 중재를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장애아동)

키즈카페를 가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없어져버려요. 동생을 한 번 데려갔다가 동생을 보는 사이에 아이가 혼자서 나가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깐 혼자 밖에 나가는데 직원이 제지를 안 하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아이가 키가 좀 크니까. 좀 똘똘하게 봤는지. 그래서 그때 혼자 밖에 나가서 실종신고하고 막 난리를 쳤던 적이 있거든요. 무장애 실내놀이터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폐성장애아동)

기차 운영할 시간이 되니까 "기차 운영합니다, 타실 분?" 하길래 애를 안고 갔어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가 인식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애 몸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거 탈 수 있을까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사고 나기 전에 이용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잘 잡고 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안 된다고만 했어요. 어른이 주는 상처는 이거는 진짜 해머로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른인데도 그런 인식이 안 되어있고 다르다는 걸 안 된다는 걸로만 차별을 하고 제안을 둬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벌벌 떨면서 중심을 잡더라고요. (지체장애아동)

내가 키즈카페를 갔었을 때에 중재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도 저분은 뭐 하시는 선생님이지 저분은 저런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시구나 하고 엄청 그 부분에 있어서 좋게 받아들이신 것 같기도 해요. (지체장애아동)

아이들 차례 지키는 거를 사실 의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의식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딱 봤을 때 의자가 차례로 놓여 있다면은 아 이 순서대로 기다려서 저걸 이용할 수 있구나 하는 형식적인 그런 뭔가의 틀에 맞춰주는 기다림의 공간, 질서체계를 형식으로 갖춰놓으면 좋겠어요. 대기하는 공간, 기다리는 공간에 자리를 우리 장애아이들이 다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질서를 지키되 이것도 하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내 차례 되면 그거를 이용하면 되는구나를 형식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아동)

저는 애들하고 같이 체험한 게 없어요. 우리 큰애는 놀아보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이거

체험했는데 이렇더라. 아빠는 어때? 저는 참 난감해요. 상상해야 되거든요. 그 체험을 그거는 내가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문을 하죠. 너는 어땠어? 애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다시 어땠어?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이랬어. 하고 이야기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한테 제가 설득력이 없어지고, 점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빠가 어떻게 알아? 엄마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부모하고 애들 사이에 경험의 어떤 벽이 생기는 거죠. (지체장애인 보호자)

□ 놀이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의견

실내놀이터 이용시 놀이공간 이외에 주차장, 접근로, 휴게공간, 화장실 등 위생시설 등 기타 시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장애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보호자가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려고 할 때 놀이공간 이외에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 편의시설과 인적 지원 등이다.

이동과 접근에서는 주차장과 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필수이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기에 적합한 곳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키즈카페 같은 곳은 매점 같은 경우, 너무 오픈이 돼 있거든요. 판매를 하시려고 일부러 노출을 많이 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장애아이들에게 주의해야 하는 게, 아이들이 만진단 말이에요. 훈련이 될 수 있게 사람이 항상 상주해 있어서 적절히 제지하거나,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절차를 가르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아이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키즈카페 갈 때 매점이 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노출돼 있는 것들은 좀 많이 피해요. (지적장애아동)

실외놀이터에서의 경험이긴 한데 공공놀이터라고 써져 있는데, 화장실이 없었어요. 아이가 잘 못 걷고 걷는 게 근육병이 좋지가 않대요.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단순 이동은 줄여줘야 하고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놀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짐은 많고 화장실은 없고 물은 마셔야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지체장애아동)

저희는 휠체어가 실내놀이터에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좀 안 돼요. 제가 어디든 실내는 제일 걱정하는 게 휠체어를 타는 애들은 그 휠체어 바퀴가 더럽다고 하니까요. 얼마 전에 워터파크에 갔는데 휠체어를 가져왔더니 바퀴를 닦으라고 그래서 입구에서 저랑 저희 남편이랑 걸레 가지고 막 휠체어를 닦아서 들어갔거든요. (지체장애아동)

제가 애들 데리고 조금 먼 데를 갔다 왔는데 우여곡절을 좀 많이 했거든요. 화장실,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등. 그랬더니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어디 가는 것도 좋은데 아빠가 한 번 나오면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대요. (지체장애 보호자)

키즈카페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문이 좁아서 휠체어도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투명한 창을 통해서 애를 그냥 이렇게 지켜 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비장애인 보호자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블록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저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지체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화장실이라면 모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실제 불편한 장애가 더 많이 사용이 되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귀 교환대처럼 세웠다 누웠다 하는 배드가 필수거든요. 그게 설치된 곳이 거의 없어요. (지체장애아동)

저희 아이는 아직 유모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놓다보면 주출입구나 이런 데가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유모차이지만 나중에 휠체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 보조기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요. (지체장애아동)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한 그 외의 다른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것들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캐비넷 같은 것도 필요해요. (자폐성장애아동)

주차장에 주차장 라인이 조금 더 넓었으면 해요. 아이들이 내릴 때, 저희 아이는 괜찮지만 다른 부모님들을 보면은 아이를 내릴 때 안고 내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모나 휠체어는 트렁크에서 꺼내지만 보통 아이를 안고 내리실 때 옆에 차가 있으면 공간이 협소하니까 엄마들이 팔과 이런데 굉장히 무리도 가고 아이를 내릴 때 조심스럽게 내리다보니까 다른 차 신경 쓰다가 내 아이가 머리를 찍힐 때도 있어요. (자폐성장애아동)

출입구가 너무 오픈된 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휠체어 타는 친구들하고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막 튀어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키즈카페 위치 같은 것도 물론 이게 무슨 미로 속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출입이 너무 뚫려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폐성장애아동)

화장실도 이제 물론 훈련해서 혼자 잘 처리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데리고 가야 될 때가 많아요. 아이가 9살만 돼도 이제는 엄마가 여자 화장실을 데리고 가는 거는 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장애인용 화장실 아니면 가족 화장실 같은 게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자폐성장애

아동)

굉장히 큰 실내놀이터를 일부러 세 번이나 갔어요. 처음 갔을 때는 입구가 좁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다른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동휠체어가 다른 아이들한테 어떤 안전 문제를 일으키느냐 항의했더니 빨리 달리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 싸워가지고 들어갔어요. (지체장애 보호자)

실내놀이터들이 턱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비장애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곳은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전동휠체어가 출입이 안 된다, 거기는 이제 구조 자체가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결국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체장애 보호자)

유모차도 밖에 놓고 오는데 전동휠체어도 밖에 놓고 오라는 곳도 있어요. 전동휠체어는 실내에 들어가면 더럽다는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닦고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수건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지체장애 보호자)

장애인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네 살 다섯 살일 때는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실내 놀이에 조금만 높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떨어질까 봐. 그런 것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접근이 안 되는 시설물의 형태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지체장애 보호자)

한 번은 제가 아예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애들 데리고 되돌아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자꾸 제가 못 들어간다고 애들까지 못 들어가면 애들이 실망할까 봐 그냥 애들만 들여보내고 저 대신 활동지원사를 보내고 저는 밖에 있었죠. (지체장애 보호자)

놀이터를 함께 갔는데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장애가 있는 부모는 보호자로서 이 아이를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런 정서적인 위축감을 느껴요. (지체장애 보호자)

내가 보호자로서 같이 못 가는 것은 삭힐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거절과 출입이 안 됐을 때 오는 위축감이라는 거는 평생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애 부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장애 부모의 자녀도 같이 그런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서 한두 번의 거절과 차별도 평생 가요. 그리고 특히 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도 소외되고 배제되는 경험은 작은 경험이 아니거든요. (지체장애 보호자)

요즘 공공기관의 세미나 룸 이런 것들을 대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거랑 최대한 가깝게 지어주시면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따로 떨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훨씬 장애 부모들이 뭔가 마을의 어떤 사업에 참여하거나 약간 이런 사회에 나가는 거 확실히 가능해지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사실은 다 아이 때문에 거의 사회생활이 멈춰 있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지적장애아동)

④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이용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하도록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 어느 정도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 살펴보았다. 또한 무장애 실내놀이터에 대한 안내 방식이나 사인물 등에 대한 선호도 질문하였다. 무장애 실내놀이터가 조성될 경우 어느 정도 거리가 되더라도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안내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이나 안내가 충분히 노출 되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안내 제공 방식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그림 활용을 선호했다.

저희 둘째(비장애)도 일부러 통합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출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더 둘째 아이에게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 얘기도 물어보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싶으면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적장애아동)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아이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사실 되게 고맙고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자폐성장애아동)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무장애 실내놀이터라는 콘셉트 자체가 일반 실내놀이터랑은 다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같인 동영상을 본다든가 3~5분 정도는 안내문을 듣는다든가 그러면 엄마, 아빠, 친구들 이렇게 같이 들었을 때는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체장애아동)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편안하게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장애에 대해서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많아질수록 사실 저는 좋다고 봐요 (지적장애아동)

장애 인식 개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자꾸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걸 끼워넣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으니까 무장애 실내놀이터에는 껴 넣어주시면 되게 좋을 거같아요. (지적장애아동)

장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라고 보이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는 장애아동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장애를 숨겨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애라는 말이 금기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폐성장애아동)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우리의 장애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한 낙인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숨기면 오히려 그 숨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후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지체장애 보호자)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거가 서로서로 불편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장애인이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표현 방식과 뉘앙스에서 잘 선택해야 하겠지요. (자폐성장애아동)

장애가 드러나게 한다든지 다른 아이들한테 배려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조심스러워요. 장애라고 이 아이를 꼭 집어서 했을 때는 아이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장애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비장애의 범주에서 봤을 때는 애가 이상한 애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큰애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 학교에서 장애인식 교육을 하면서, 주변에 장애인을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서 반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지목해 아이가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해되기 쉽게 뭘 붙여 놓으시더라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개발을 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뇌병변장애아동)

5) 결론

① 무장애 실내놀이터 이용을 위한 공간 계획

□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가고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

□ 매개시설(주차장, 접근로, 주출입구), 위생시설(장애인용 화장실 등), 놀이공간, 휴게공간, 기타시설 등의 계획에서 비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아동, 장애가 있는 보호자, 휠체어 등 보조기구, 유모차 등의 이용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보

□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공간에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자(보호자 포함)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놀이시설물 계획 시에는 동일 놀이유형에 다양한 놀이기구 계획, 동일 놀이기구에 다양한 난이도 계획, 놀이기구로의 접근, 놀이기구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

□ 놀이시설물의 통로, 높낮이, 기울기 등은 성인 보호자, 관리자, 지도자 등이 필요시 진입하고 놀이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

□ 발달장애아동을 위하여 동적인 공간뿐 아니라 정적인 공간, 개인적인 공간을 적절히 구성

□ 빛, 색상, 소리 등 시청각 자극이 과도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필요시 이러한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함께 계획

② 무장애 실내놀이터 이용을 위한 운영 가이드

□ 단순히 연령만으로 이용 대상을 제한하기보다는 놀이시설물의 난이도에 따라 아동이 활동성,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특성 및 이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

□ 누구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시설의 이용 및 아동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설, 안내, 사인물 등을 동영상, 그림 등을 활용한 쉬운 방식으로 제공

□ 실내놀이터의 관리자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특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되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제공, 교육 훈련 매뉴얼 구비

□ 장애 유형별 권장 이용 시간, 이용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이용과 놀이 참여를 위한 인적 지원(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놀이지도 등)

□ 보호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놀이 지원을 위한 충분한 인적 지원 제공

□ 개인이 실외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실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척이나 실내 이용에 필요한 도구, 비품 등을 구비하고 정보 제공 및 안내

부록 3. 실내놀이터 이용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장애 및 비장애아동의 실내놀이터 이용에 대하여, 비장애아동의 실내놀이터 이용에 관한 제약이나 욕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장애아동(5~13세) 및 보호자, 교사,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장애아동의 놀이 및 실내놀이터 이용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무장애 실내놀이터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평소 실내놀이터를 이용한 경험도

구분	응답(명)
이용한 경험이 있다	96
이용한 경험이 없다	4
계	100

실내놀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용한 경험이 있다' 96명(96%), '이용한 경험이 없다' 4명(4%)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이용 경험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도 장애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사자 등으로 실내놀이터에 대한 사용자 의견에 유의미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하였다.

□ 평균적으로 실내놀이터 이용빈도

구분	응답(명)
일주일에 1번	22
일주일에 2~3번	10
일주일에 4번	3
한달에 1~2번	29
자주 이용하지 않음	36
계	100

평균적으로 실내놀이터 이용빈도에 대해서는 '자주 이용하지 않음' 36명(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달에 1~2번'이 29명(29%), '일주일에 1번'이 22명(22%)로 높게 나타났다.

□ 실내놀이터 이용 시 특정 실내놀이터 이용빈도

구분	응답(명)
주로 가는 곳 이용	63
주차하기 편한 곳 이용	3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때그때 가고 싶은 곳 이용	10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을 그때그때 선택	1
가까운 곳을 이용	12
갈때마다 새로운 곳을 이용	5
친구들과 함께 갈 곳을 결정	6
계	100

실내놀이터를 이용 시 특정 실내놀이터 이용빈도에 대해서는 '주로 가는 곳 이용' 63명(63%), '가까운 곳 이용' 12명(12%)으로 주로 가는 곳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63%에 달하는 데에 장애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경험을 선호하는 아동의 경우 새로운 실내놀이터 경험을 즐거워하지만, 익숙한 곳을 선호하는 아동들은 새로운 곳을 방문할 경우 놀이에 몰입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동안 밀도 있게 놀기를 원하는 보호자들은 익숙한 곳을 선호하기도 하고, 아동 또한 마음에 드는 곳이나 놀이시설이 있는 경우 '좋아하는 놀이터'에 가고 싶어 한다.

□ 다음 중 이용해 본 적 있는 실내놀이터 여부(중복 응답)

구분	응답(명)
민간 실내놀이터	46
시립 또는 구립 실내놀이터	46
키즈카페	53
계	145

다음 중 이용해 본 적 있는 실내놀이터 여부에 대해서는 '시립 또는 구립 실내놀이터' 24명(24%), '키즈카

페' 23명(23%)으로 시립 또는 구립 실내놀이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키즈카페가 높게 나타났다. 민간 시설과 공공 시설의 이용 비율에서는 공공 시설의 이용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때 우선하는 이유

구분	응답(명)
거리가 가까워서	87
비용이 저렴해서	56
놀이시설이 좋아서	54
계	197

실내놀이터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2가지 이유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거리가 가까운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87명(43.9%)로 가장 많았다. 비용(28.4%)이나 놀이시설(27.4%)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경우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분	응답(명)
비용이 저렴해서, 거리가 가까워서	44
거리가 가까워서, 놀이시설이 좋아서	41
비용이 저렴해서, 놀이시설이 좋아서	12
거리가 가까워서, 기타	2
놀이시설이 좋아서, 기타	1
계	100

이 항목은 2가지 이유를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 응답의 경향도 살펴보았다. 비용과 거리를 우선하는 경우는 44명(44%), 거리와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41명(41%)로 나타났다. 거리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놀이시설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는 12%였다. 기타 의견으로 '넓어서 이목을 끌 일이 적고 안겨서 하는 활동이 있는 대형카페 위주'로 선택하는 경우, '원래 가던 곳이라 편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 및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 등이 있었다. 기타 의견에서 대체로 이목을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실내놀이터까지의 이동수단

구분	응답(명)
자가용	66
도보	21
대중교통(버스)	9
대중교통(버스+지하철)	2
대중교통(지하철)	2
계	100

실내놀이터까지 이동수단으로는 '자가용' 66명(66%), '도보' 21명(21%)으로 자가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보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경우 거리가 가까울 때에는 주로 도보를 이용하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때에는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 실내놀이터까지 소요시간

구분	응답(명)
30분 이내	60
10분 이내	29
1시간 이내	10
계	100

평소 실내놀이터까지 소요시간으로는 '30분 이내' 60명(60%)가 가장 많았고, '10분 이내' 29명(29%)가 뒤를 이었다. 실내놀이터까지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10% 가량 되었다. 실내놀이터까지의 소요시간은 교통수단 이용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주로 30분 내외의 거리, 왕복 1시간 정도를 적당한 이동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

□ 실내놀이터 시설 만족도(실내놀이터 입구에서 내부시설, 편의시설 등)

구분	응답(명)
어느 정도 만족	50
대체로 만족	39
매우 만족	6
불만족	5
계	100

실내놀이터 시설 만족도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 50명(50%), '대체로 만족' 39명(39%)으로 어느 정도 만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놀이공간 이외에 실내놀이터 이용을 위한 매개시설 및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었다.

만족한다는 의견 중에는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아서', '시설이 깔끔하고 다양해서', '장애아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은 아니지만,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에 안전하다고 느껴서', '장애인용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장애아동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편의시설이 다양함', '만족하는 곳만 주로 간다', '아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등이 있었다. 시설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앞선 항목에서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미 시설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한 5명은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아이를 무조건 안고 들어가야 하고 입구도 좁아서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다', '장애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비교적 없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위험한 물건이 많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중증장애아동을 받아주는 곳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다닌다', '장애가 있어 위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비해 특별히 시설이 나쁘지 않아서', '아무래도 몸이 불편한 아이 위주로 만들어진 곳은 아니어서', '최근 키즈카페 시설은 지체장애를 제외하면 대체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되어 있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장애아동과 이용하기 편하고 좋아서 만족한다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어 장애를 감수하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만족도

구분	응답(명)
대체로 만족	48
매우 만족	8
불만족	9
어느 정도 만족	35
계	100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 48명(48%), '어느 정도 만족' 35명(35%)으로 대체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만족하는 경우도 9%로 나타났다.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91%가 어느 정도 이상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었다.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에는 '놀이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놀이가 가능해서', '장애아동이 잘 놀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다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신체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하였음에도 '비장애 아이들 기준에 맞춰진 놀이기구이긴 해도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경험은 해볼 수 있고 놀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증장애로 손 사용이 어려운데 대부분 손을 많이 쓰는 장난감이고 작아서 사용하기 어렵다', '미끄럼틀이나 하늘자전거 등 아이를 안고 타기에 너무 힘든 구조, 의자 등의 보조장치가 전혀 없음'과 같이 놀이시설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불만족하는 경우도 '초등학생용 키즈카페는 부모 동반 불가여서 시도도 못 해보았다', '아이 연령에 맞는 게 없음' 등 놀이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데 대한 불만 위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 중에서는 놀이기구나 장난감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서, 안전해서 등과 같이 놀이성보다는 안전이나 관리 측면에서의 만족도 위주로 응답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놀이시설물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앞선 항목에서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거리, 시설물 만족도 등을 함께 고려해서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실내놀이터 이용시간

구분	응답(명)
1시간 이내	24
1시간~2시간	50
2시간 이상	26
계	100

실내놀이터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2시간' 50명(50%), '2시간 이상' 26명(26%)으로 1시간~2시간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내놀이터들의 이용 시간이 대체로 2시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실내놀이터 이용 시 실제 놀이에 쓰는 시간

구분	응답(명)
1시간 이상	39
2시간 이상	12
30분 이내	15
30분~1시간	34
계	100

실내놀이터 이용 시 실제 놀이에 쓰는 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39명(39%), '30분~1시간' 34명(34%)으로 1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분~1시간 이용이 많았다. 대체로 실내놀이터 이용시간이 1~2시간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실내놀이터 이용 시간 가운데 절반 정도는 놀이 이외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실내놀이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놀이시설(3개 선택)

구분	응답(명)	비율(%)
미끄럼틀, 오르내리기 등 여러 놀이기구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조합놀이대	64	21.3
미끄럼틀	48	16
짚라인	20	6.7
볼풀	47	15.7
그물오르내리기	16	5.3
아지트 공간	30	10
블록놀이(레고 등)	37	12.3
인형, 로봇 등	20	6.7
역할놀이(소꿉놀이, 놀이집, 유모차 등)	16	5.3
기타	2	0.7
계	300	100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중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미끄럼틀, 오르내리기 등 여러 놀이기구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조합놀이대'가 21.3%, '미끄럼틀' 16%, '볼풀' 15.7%, '레고 등의 블록놀이'가 12.3%, '아지트 공간'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유 가운데 집에서 갖고 놀기 힘든 놀잇감이나 놀이기구 등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생각해보면 역할놀이나 인형, 로봇 류와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잇감보다는 규모가 있는 놀이시설물이나 종류나 구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블록놀이, 볼풀 등의 선호가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 트램펄린, 곤돌라 등의 탈 것도 제안되었다. 곤돌라는 대형 키즈카페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물로, 보호자가 장애아동을 안고 탈 수 있는 구조이다.

□ 실내놀이터에서 좋아하지 않는 놀이시설(2개까지 선택)

구분	응답(명)	비율(%)
조합놀이대	6	3.3
그물오르내리기	25	14
미끄럼틀	11	6.1
짚라인	38	21.2
볼풀	5	2.8
블록놀이(레고 등)	21	11.8
소꿉놀이(놀이집 등)	29	16.2
아지트 공간	8	4.5
인형, 로봇 등	34	19
없음	2	1.1
계	179	100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중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짚라인' 21.2%, '인형, 로봇 등' 19%, 소꿉놀이(놀이집 등)' 16.2%, 그물오르내리기(14%), 블록놀이(레고) 11.8% 순으로 응답했다.

짚라인이나 그물오르내리기와 같이 신체활동이 큰 놀이나 인형, 소꿉놀이, 블록놀이에 대한 비선호 의견이 높게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신체활동이 원활치 않아서', '뇌병변장애아동이라 보행이나 손 사용이 어려워 보호자와 함께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편이다. 짚라인이나 그물오르내리기와 같은 놀이는 할 수 없다', '도움을 받더라도 아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을 선호함. 다른 아이들처럼 할 수 없거나 불편한 놀이는 하지 않으려 함', '손에 힘이없어 이용이 어려움',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 선호', '미끄럼틀, 짚라인은 혼자 이용할 수 없어서'와 같이 놀이 자체를 싫어하기보다는 장애아동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적인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소꿉놀이 같은 역할놀이나 인형놀이, 블록 같이 손 조작이 필요한 놀이를 어려워하거나, 정적인 놀이나 테이블 놀이 같은 것에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었다. 폐쇄된 공간을 무서워하는 경우와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을 선호하는 경우도 함께 나타났고, 활동적인 놀이와 정적인 놀이에 대한 선호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실내놀이터가 아니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나 놀잇감에 대해서 아동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장애아동과 실내놀이터 이용 시 불편한 경험(복수 선택)

구분	응답(명)	비율(%)
실내놀이터까지 이동이 불편	32	27.1
실내놀이터 입구와 복도 등 실내 공간 불편	16	13.6
놀이시설 이용 불편	23	19.5
화장실(장애인용화장실 포함) 이용이 불편	40	33.9
기타	7	5.9
계	118	100

장애아동과 실내놀이터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화장실(장애인용화장실 포함) 이용이 불편' 40명(33.9%), '실내놀이터까지 이동이 불편' 32명(27.1%), '놀이시설 이용 불편' 23명(19.5%), '실내놀이터 입구와 복도 등 실내 공간 불편' 16명(13.6%) 순으로 응답했다. 실내놀이터의 놀이시설 등 놀이공간에 대한 불편도 크지만, 장애인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이유로, 입구가 좁아 휠체어나 유모차 입장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용화장실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아이를 안고 이동하거나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키즈카페 구석진 곳에서 기저귀를 갈았다, 장애인용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실내놀이터 내부에 없어서 이용이 어렵다,
장애인용화장실이 너무 좁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동하기가 힘들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거나 너무 멀어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지체장애아동에게 맞춰진 놀이시설이 없다,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차가 있어야만 갈 수 있다, 내부에 턱이 많아서 힘들다 등 내외부 시설 및 놀이시설 등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다른 일반 화장실에 비해서 청결이나 공간관리 등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점도 지적되었다. 앞선 문항들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불편사항을 질문하자 상반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은 장애로 인한 차별이나 불편을 참아가며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실내놀이터 방문 시 이용하게 되는 시설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항목이었으나 '갈등 상황 시 장애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함', '다른 이들의 시선', '비장애아동 엄마들 눈치를 보게 됨, '주눅 들고 눈치를 볼 때가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의식을 곳곳에서 느낀다'와 같은 정서 및 태도로 인한 어려움도 들을 수 있었다.

□ 실내놀이터 이용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경험

구분	응답(명)
모르겠다	17
없다	48
있다	35
계	100

장애아동과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면서,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가 장애 또는 비장애아동과 동반한 경우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별을 경험해 본 적은 없다고 답한 사람이 48명(48%)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차별의 경험은 크게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과 시선이나 태도에 의한 차별 경험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대놓고 입장 거부는 하지 않지만 비장애아동을 대하는 것처럼 반가워하지 않는 경험, 장애아동을 무시하거나 기다리는 걸 못한다고 욕을 하는 경우, 주변에서 놀면 다른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 따가운 눈초리, 장애아동을 보며 '집에서 놀지 이런 데를 왜 데리고 왔냐'는 식으로 수군대는 경우, 발달이 늦은 건데 버릇이 없다고 야단치는 경우, 의식하며 자리를 피하는 경우, 불쌍하게 쳐다보는 등 장애아동이나 보호자를 향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에도 장애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제약이 있다거나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항상 느낀다든지, 겉으로 티가 별로 나지 않는 장애라서 잘 경험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별로 없을 때 다니기 때문에 등의 답변이 있었다.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케이스도 10여 건에 달했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가 나온 이유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에 차이를 들 수 있다. 사람 간에 나타나는 편견이나 태도, 직접적인 이용 제한 등 직접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은 반면 시설물의 이용 불가나 불편,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서비스가 없는 경우를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로 이용해 본 실내놀이터 가운데서 이용하기 편하고 부담이 없는 곳을 다시 찾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차별 경험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무장애 실내놀이터 이용 대상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명)
일부 장애 종류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10
장애아동, 장애가 있는 보호자, 동반인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7
장애아동은 별도의 전용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5
적어도 장애아동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8
계	100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아동 및 보호자, 동반인이 장애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장애 및 비장애아동이 실내놀이터를 함께 이용하고,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포함한 보호자의 이용 접근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명(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어도 장애아동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도 28명(28%)이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장애아동은 별도의 전용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5%의 응답률을 보였다.

□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만든다면 가장 필요한 놀이시설

구분	응답(명)
그물오르내리기	5
미끄럼틀	13
볼풀	11
블록놀이(레고 등)	7
소꿉놀이(놀이집 등)	4
아지트 공간	10
조합놀이대	43
짚라인	6
계	100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만든다면 가장 필요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조합놀이대' 43명(43%), '미끄럼틀' 13명(13%), 볼풀 11명(11%), 아지트 공간 10명(10%) 순으로 응답했다. 실내놀이터의 주요 놀이시설에 조합놀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조합놀이대와 미끄럼틀, 볼풀, 아지트 공간 등 기존에 주로 구성되

어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 무장애 실내놀이터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구분	응답(명)
놀이지도사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	30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미술(그리기, 만들기 등) 프로그램	27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아동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34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자유놀이	9
계	100

무장애 실내놀이터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아동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34명(34%), '놀이지도사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 30명(30%),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미술(그리기, 만들기 등) 프로그램 27명(27%)로 골고루 의견이 나왔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자유놀이도 9명의 응답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91%로 높게 나타났다.

3) 소결

기존 실내놀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아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놀이유형, 놀이시간 등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르지 않았다. 기존 실내놀이터에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점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놀이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지체장애아동의 경우 아동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발달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어울리거나 놀이시설에 적응하는 데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눈에 띄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 불편하여 놀이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거나 불편해서 놀고 싶어도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놀이시설 이외에도 이동수단, 실내외 시설 접근성,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등이 충분히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여 장애아동은 실내놀이터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시설뿐 아니라 시선 및 태도와 같은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장애아동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비장애아동과 보호자, 다른 장애유형의 아동과 보호자 등 장애와 아동의 활동과 놀이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적기 때문에 시선 및 태도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놀이가 이뤄지기 힘들다. 놀이시설의 장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매뉴얼을 비롯해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련 법과 가이드

등을 참고로 현행 법제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놀이시설과 놀잇감을 고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인 측면의 개선을 위하여는 운영규칙을 정비하는 것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 및 안내사인물 등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5장을 참고하면 된다.

부록 4. 실내놀이터 사례조사

1. 실내놀이터 사례 조사 개요

급격한 기후변화와 계절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놀이환경의 제약으로 실내놀이터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소규모 실내놀이터부터 테마파크를 연상시킬 정도의 대규모 키즈카페까지 다양한 실내놀이터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키즈카페 등 실내놀이터 이용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들로 최근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속속 조성되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강원도 삼척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의 사례를 통해장애아동의 접근성 및 놀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실내놀이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례조사에 사용된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자의 입장과 이용을 위하여 최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놀이시설물의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놀이기구 및 놀잇감에의 접근성도 살펴보았다.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바가 없기 때문에, 2장의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원칙에 준하여 체크하였다. 다만,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기준만으로 판단하였다.

□ 접근로

실내놀이터의 접근로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하여 전체 구간에 단차가 없어야 한다.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2cm 이하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단차를 제거해야 한다. 보행자와 유모차,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자가 마주치는 경우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접근로는 최소한 1.2m 이상은 확보해야만 통행이 가능하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은 모두 접근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며, 접근로 상에 단차가 있을 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지형상 경사 구간의 기울기가 기준보다 가파른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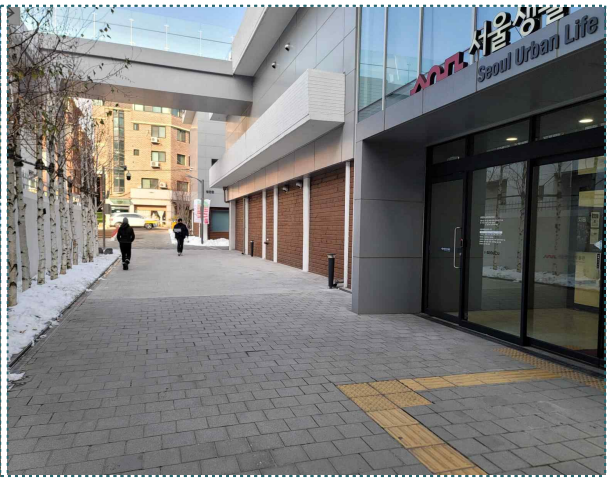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이 없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개소 이상은 설치하여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의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이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비나 눈이 올 때 노출되지 않도록 출입구까지 지붕을 설치하고, 실내주차장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 9곳에 부설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9곳 중 8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 및 승강기까지는 단차가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다만, 2개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구획선 없이 설치되어 일반 주차면과 구분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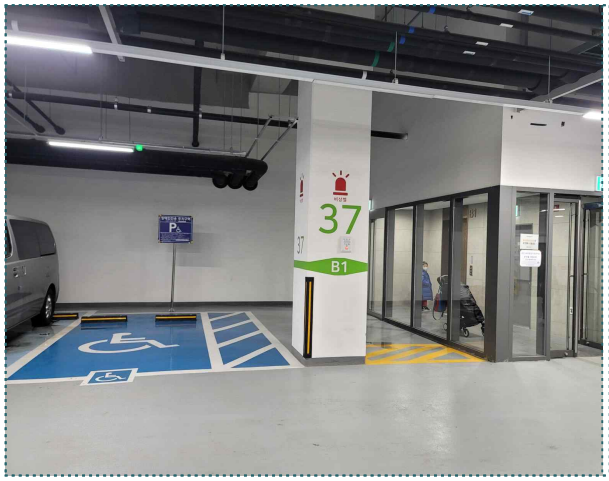

□ 주출입구(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주출입구는 모두 단차 없이 수평접근 가능했으며,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가 설치되었다. 공공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주출입구 접근성을 의무로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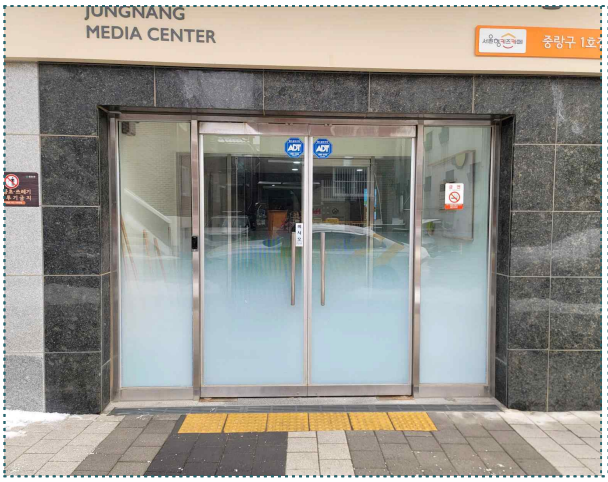

□ 통로

복도 및 통로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전 구간에 유효폭 1.5m 이상을 확보하여 보행자 및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 등과 마주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은 모두 복도 및 통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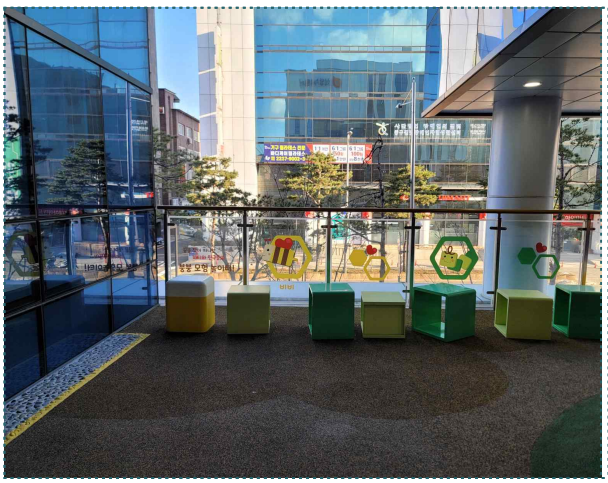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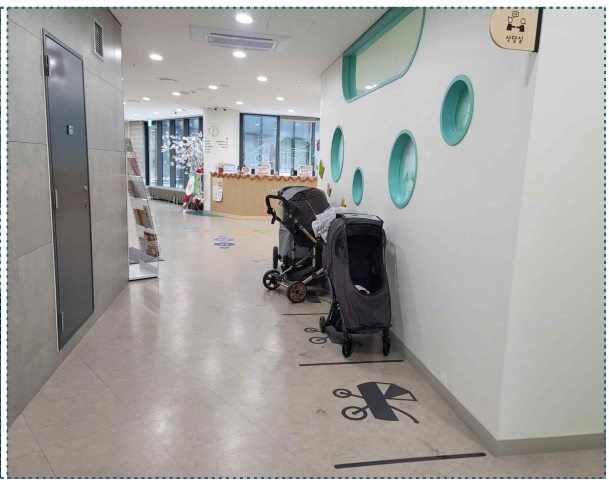

□ 계단

공공형 실내놀이터 내의 계단에는 법적 기준에 맞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유희시설, 유원시설에는 아동의 높이에 맞추어 높이 0.65m 내외의 손잡이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

형 실내놀이터 10곳 중 기준에 맞게 손잡이를 2단으로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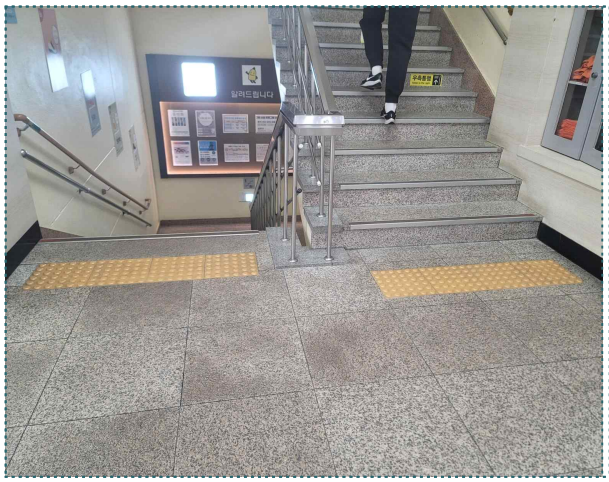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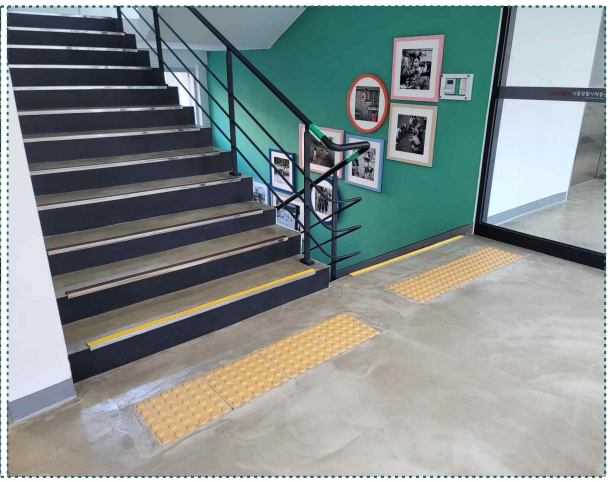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때 층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층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실내놀이터가 1층 이외의 층에 위치해 있는 경우,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이 다른 층에 있어서 층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 층간 이동이 필요한 곳은 모두 8곳이었으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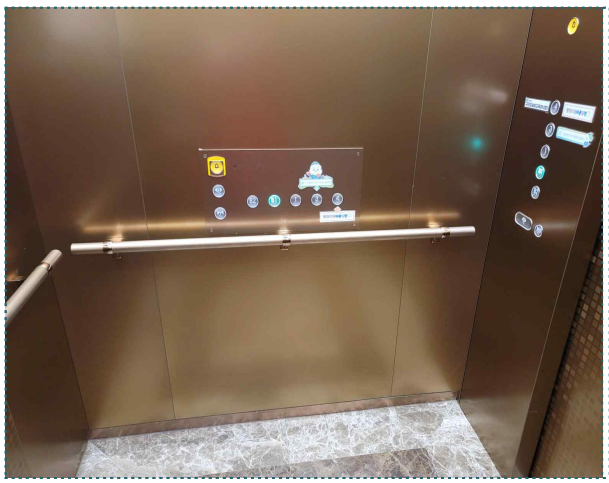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남녀 별도로 1개 이상의 대변기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화장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별도 설치한 후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경

우 구청이나 보건소 등 공공건물의 내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장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내놀이터 내부에 별도의 화장실(장애인용 화장실 포함)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화장실 및 장애인용 화장실은 되도록 실내놀이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장애 및 비장애 아동의 이용이 편리하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 9곳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5곳은 실내놀이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1곳은 공원 내에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던 경우로,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화장실에는 영유아뿐 아니라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 간이 기저귀교환대 대신 침대형태의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에는 단 1곳에 침대형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너무 높아서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려워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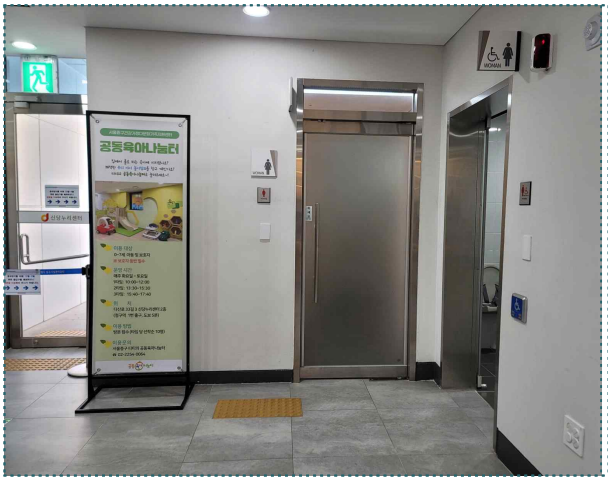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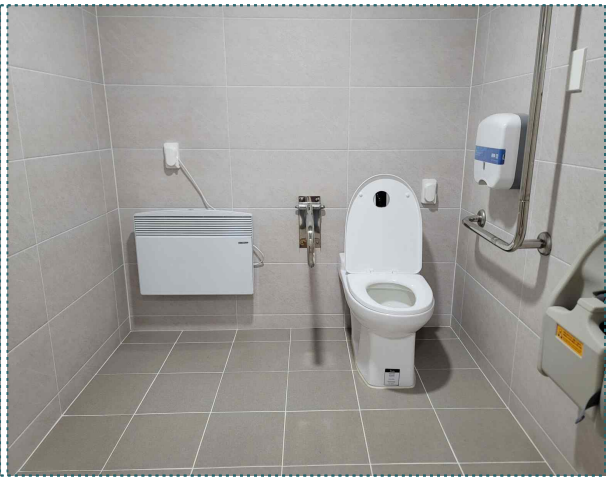

□ 안내데스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내데스크는 휠체어 사용 아동과 보호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높이와 하부공간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용 창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고, 모든 데스크를 장애인용 안내데스크 기준으로 설치해도 좋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에는 2곳만 장애인용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였다.

□ 내부출입구

실내놀이터는 주출입구를 통과하여도 실내놀이터 입장 시에 개찰구나 문 형태의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개찰구나 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단차 없이 설치해야만 휠체어 사용자가 입장할 수 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에서 1곳은 내부출입구가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나, 1곳은 폭이 좁은 개찰구가 설치되어 있어 입장에 제한이 있었다. 다만, 개찰구 이외의 관리자용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서 입장은 가능했지만,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휠체어 접근

실내놀이터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휠체어를 탄 채 입장 가능해야 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에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할 수 있는 곳은 4곳이었다. 나머지 곳들은 구조적으로는 입장이 가능했지만,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한 채 실내로 입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방침이었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할 수 있더라도 휠체어 바퀴를 닦거나 소독할 수 있는 수건이나 세정도구를 비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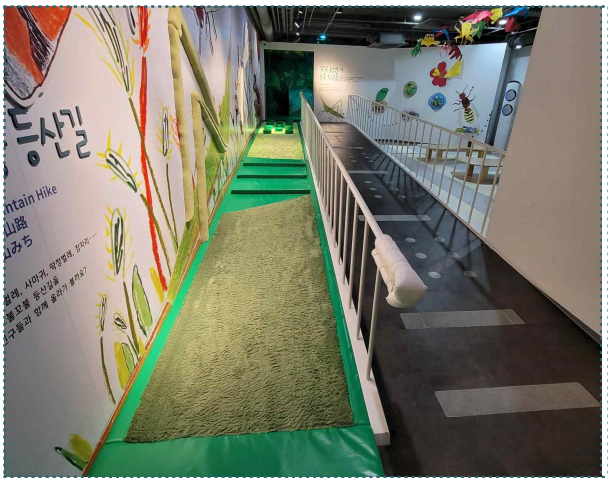

□ 사물함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때 외투나 가방, 소지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다. 사물함은 휠체어 사용자나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단차와 통로의 유효폭, 사물함 전면에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 9곳은 사물함 이용에 불편이 없었으나 1곳은 전면 활동공간이 부족하고 통로가 다소 좁았다.

□ 놀이기구 접근

모든 놀이기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단차가 없고 유효폭이 최소 1.2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이 직접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최디한 보조기구를 사용한 채로 놀이기구 가까이 다가가서 이동이나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에서 5곳은 휠체어 사용자가 놀이시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절반은 일부만 접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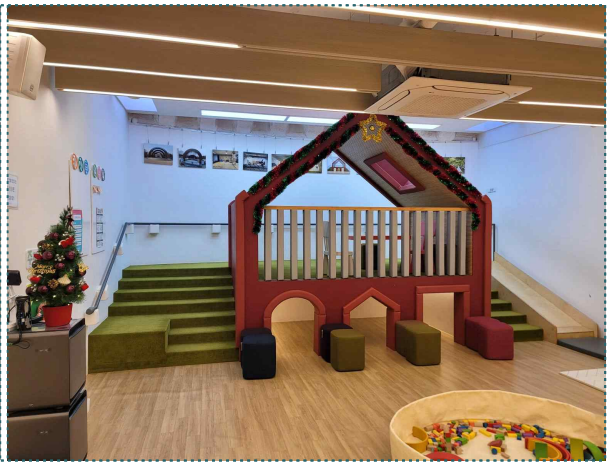

□ 놀이기구 이용

모든 놀이기구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놀이기구에 오르거나 타거나 보조기구에서 옮겨앉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며, 손이 불편하거나 힘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어도 손잡이나 줄, 막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에서 장애아동의 놀이이구 이용을 고려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일부 놀이기구는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보호자의 도움을 전제로 설계되었거나 장애아동의 이용에 제약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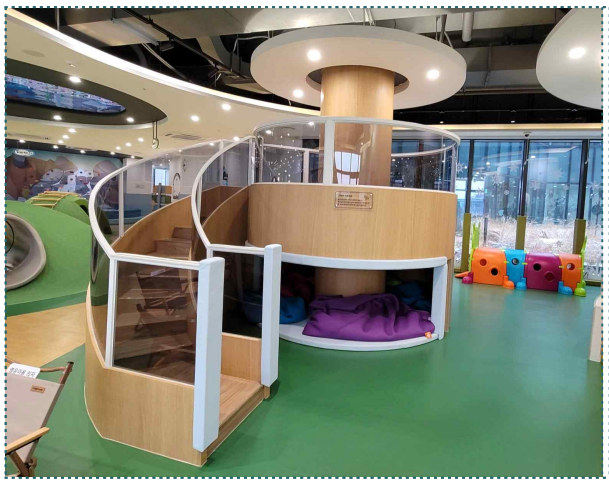

□ 놀잇감

장난감이나 책, 미술용품 등 놀잇감은 유아 및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 어린이의 손에 닿는 위치에 비치하고, 손이 불편하거나 조작이 힘들어도 사용하기 편한 놀잇감을 함께 구비해야 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 8곳은 대체로 누구나 자유롭게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두었으나, 주요 놀잇감을 꺼내고 이용하기 힘든 구조로 비치해둔 곳도 2곳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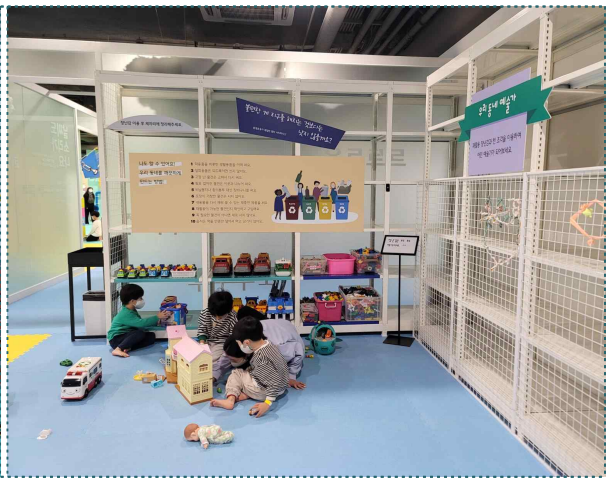

□ 놀이공간

실내놀이터에 흔히 설치되어 있는 볼풀, VR룸, 아지트 공간, 모래놀이터 등은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울타리나 경계, 단차, 출입구 유효폭, 바닥 마감재료 등이 보조기구 사용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기도 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에서 6곳은 이러한 놀이공간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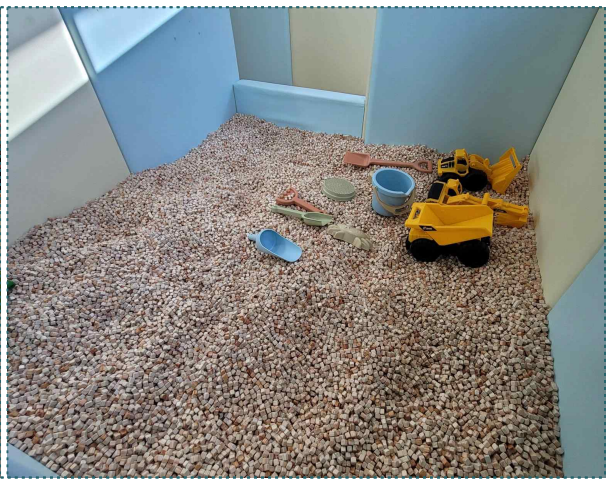

□ 놀이지원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장애 및 비장애아동은 모두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실내놀이터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으나 아동의 활동이나 놀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상주하지 않고 있다. 10곳 중에서 1곳은 실내놀이터 이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일부 놀이방법을 안내하고 놀이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장애아동의 놀이 지원 등은 지원되지 않았다.

□ 수유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이용대상이 주로 영유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유실 설치가 필요하다. 수유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수유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 및 비품을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활동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에서 8곳에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유실은 실내놀이터 내부 또는 건물의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유실 8곳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호자가 수유실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단 2곳뿐이었다.

나머지 6곳은 내부가 좁아서 힐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소파,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싱크대, 전자레인지 등 비품을 사용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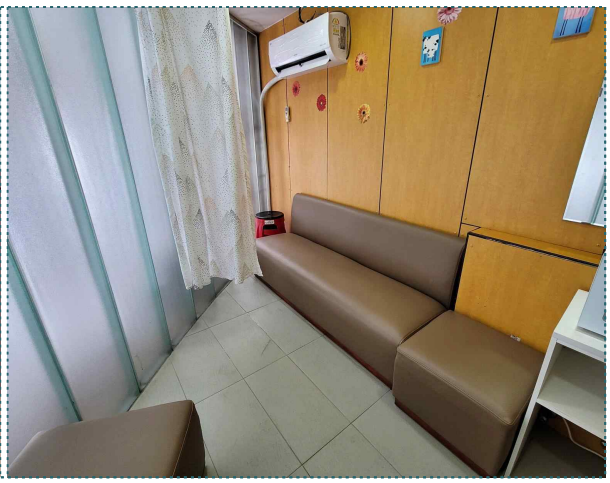

2)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례

□ 오르봉내리봉 실내놀이터(서울시 도봉구)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도봉구청사, 지하 1층)
- 형태 : 지하 1층
- 이용대상 : 3세~8세
- 이용요금 : 무료
- 특징 : 내부가 2층 구조의 놀이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간 이동은 계단과 조합놀이대 오르기를 이용한다.. 장애아동이 이용하기메 2층 구조의 층간 이동이 가장 큰 제약이 되므로, 아래층에 좀 더 매력도 높은 놀이시설이나 놀잇감 배치가 필요해보인다. 무료로 이용되고 있다.

□ 5색깔깔KIDS(서울시 양천구)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106-23
- 형태 : 단독 건물, 1층
- 이용대상 : 36개월~미취학 아동, 만12세 미만 장애아동
- 이용요금 : 아동 3,000원 / 보호자 2,000원 / 장애인 무료
- 특징 : 대형 볼풀장에 옮겨 앉아 이용할 수 있도록 울타리에 쿠션닝이 되어 있는 점이 좋지만, 옮겨앉을 때 도움이 되는 손잡이나 지지대가 있으면 더욱 유용하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놀이구성이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이용 연령대가 대부분 미취학 유아동 대상인 데 비해 장애아동의 경우 만12세 미만까지 입장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 http://www.ychccic.or.kr

□ KIZIT(서울시 양천구)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11
- 형태 : 단독 건물, 지하 1층
- 이용대상 : 9세 이하(초등 2학년)
- 이용요금 : 무료
- 특징 : 지하 1층에 있고 계단이 협소해서 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동선이 주출입 동선이 된다.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정적이고 아기자기한 놀잇감과 역할놀이, 책 읽기 등 위주로 공간을 활용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중에서 이용 연령대가 9세 이하로 조금 폭넓다. 장애아동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가 진행된 곳이다. 이용요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야외에 무장애 통합놀이터와 놀이 연계가 가능하다.

□ 중랑실내놀이터(서울시 중랑구)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09
- 형태 : 2층
- 이용대상 : 25개월~미취학 아동
- 이용요금 : 아동 2,000원 / 보호자 1,000원
- 특징 : 서울형 키즈카페이며 주출입 동선은 지상 1층 주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실내놀이터 이용자용 실내 주차공간이 있지만, 주출입구까지 이동은 외부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만 이용 가능하며 휠체어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 혜명아이들상상놀이터(서울시 종로구)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층
- 형태 : 2층
- 이용대상 : 만4세~만7세
- 이용요금 : 아동 1,000원 / 보호자 1,000원
- 예약 인원에 대해 놀이 시작 전에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며, 일부 놀이에 대해서 놀이방법이나 놀이지도가 이뤄지기도 한다. 실내놀이터의 놀이시설물은 휠체어를 사용해 이용하기는 어렵고 놀이시설물에 따라 단차가 있다. 건물 외부에 실외놀이터가 있고, 2층 구조의 큐브 형태의 놀이시설을 휠체어 사용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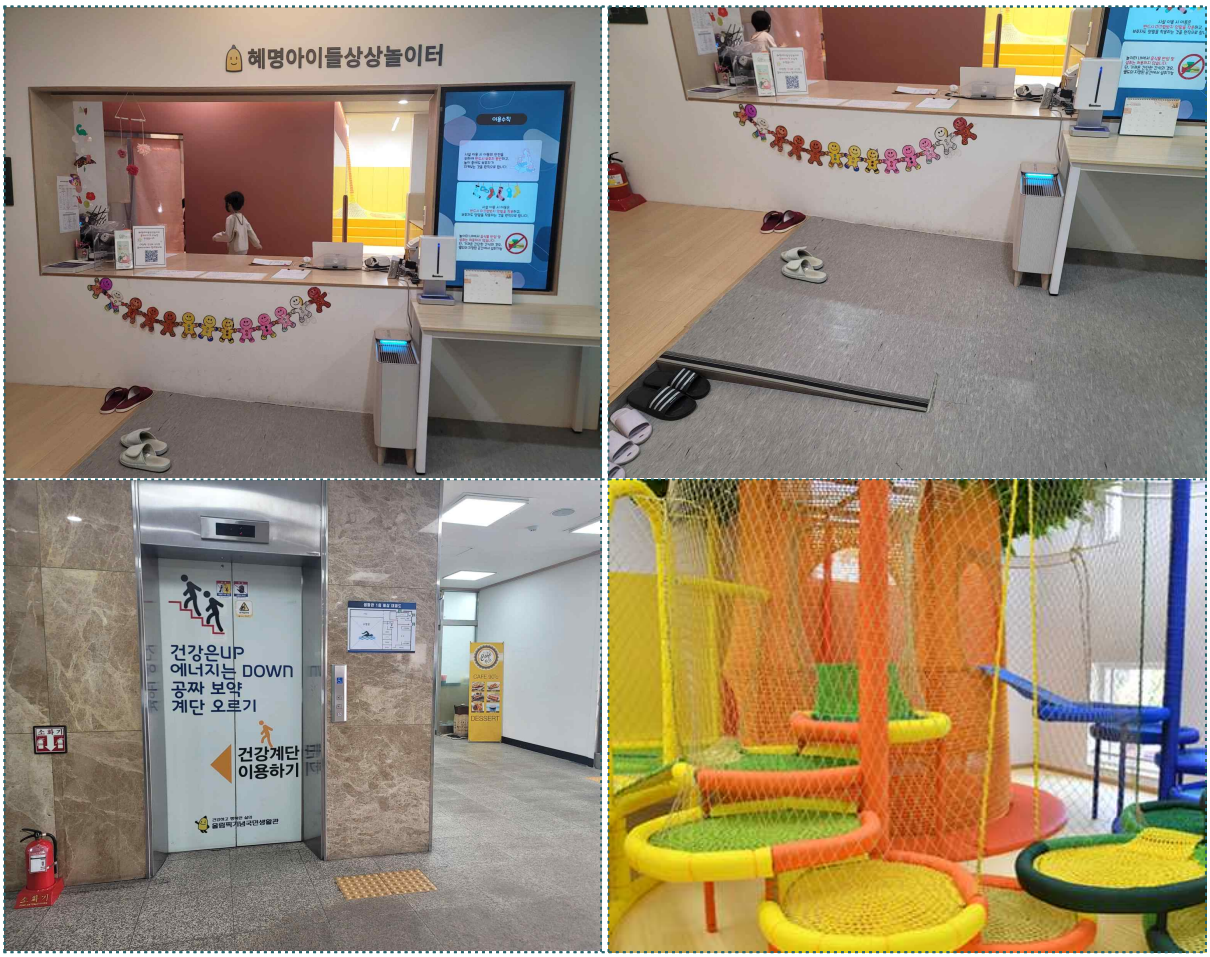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 http://icare.seoul.go.kr/icare/dolbomMENU5/dolbomMENU5_1.jsp

□ 숨쉬는 놀이터 2호점(경기도 시흥시)

- 위치 :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3,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4층
- 형태 : 4층
- 이용대상 : 5~13세
- 이용요금 : 무료
- 특징 : 시흥시에서 주민참여형 놀이터로 조성되었고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다만, 지체장애아동이 놀이시설 상부로 이동이 어렵고 목재 놀이시설물은 표면 마감이 매끄러워 오르내리기가 쉽지만은 않다. 아지트 공간이 구석구석 마련되어 있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필요시 장애 및 비장애아동의 놀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용 연령대가 5세부터 13세까지로 실내놀이터 이용 가능한 연령대가 가장 폭 넓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 하티붕붕놀이터(서울시 중구)

- 위치 : 서울시 중구 다산로33길 3 신당누리센터
- 형태 : 2층
- 이용대상 : 만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 이용요금 : 1인당 1,000원
- 특징 :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한 건물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나란히 있으며, 수유실은 공동육아나눔터 내부의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취학 영유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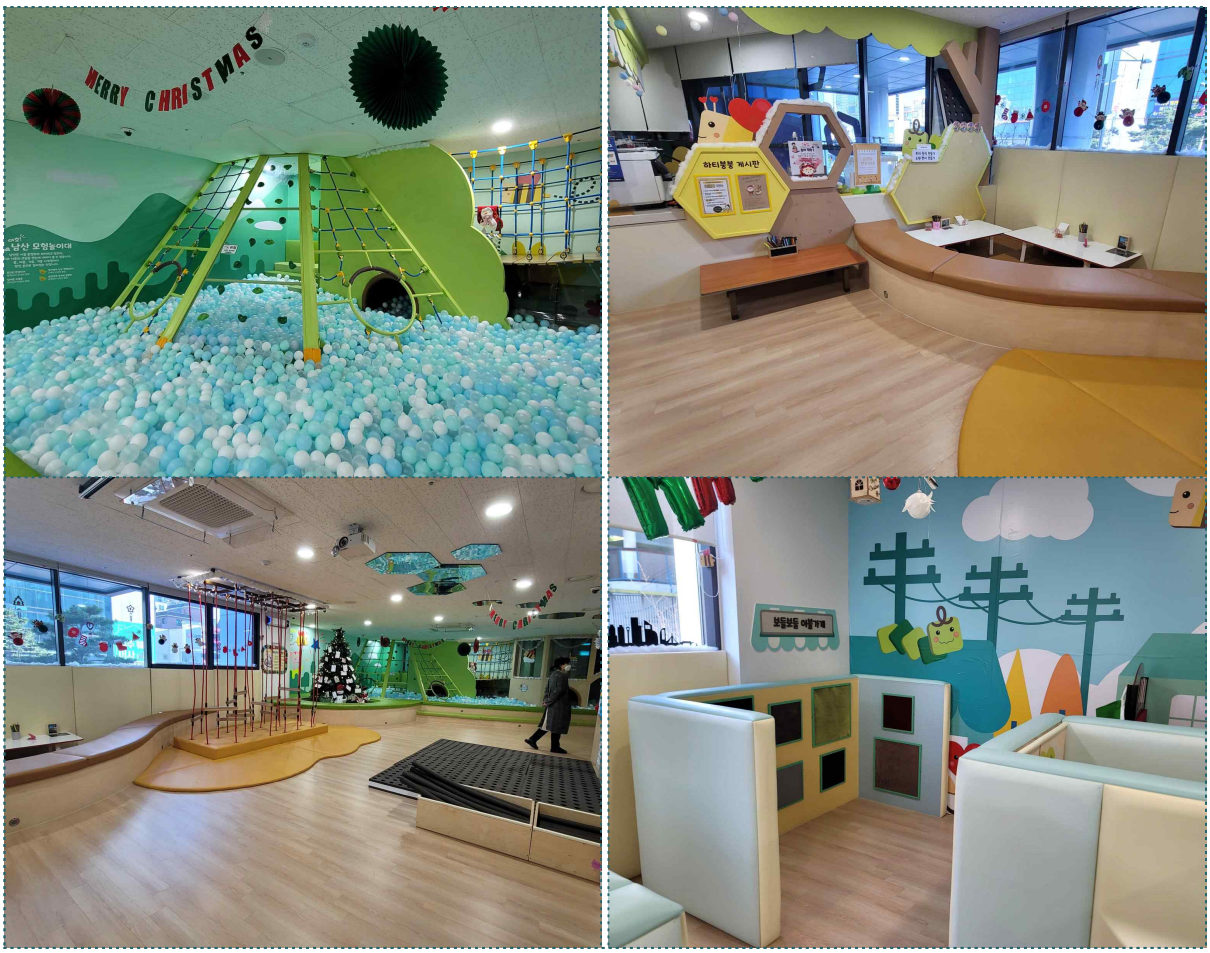

□ 꾸미팡팡놀이터(서울시 광진구)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3층
- 형태 : 3층
- 이용대상 : 36개월 이하 미취학 영유아
- 이용요금 : 무료
- 특징 : 야외 캠핑장을 연상시키는 놀이공간 구성이 특징이다. 마운딩과 통과하기 등의 약간의 활동적인 놀이가 있지만, 정적인 놀이들이 주를 이룬다.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구석구석 조성돼 있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은 건물 내 각 층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마련되어 있다.

□ 옴팡놀이터(서울생활사박물관)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 형태 : 2층, 3층
- 이용대상 : 어린이
- 이용요금 : 무료
- 특징 : 서울생활사박물관 내에 조성되어 있으며 놀이터보다는 체험형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두 개 층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실내놀이터 내부에서의 층간 이동은 그물로 된 미로를 이용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실내놀이터 외부의 건물 공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므로 동선은 다소 복잡하고 길어진다. 내부 그물 미로를 통해 위층으로 이동할 경우에 그물이 촘촘하고 계단이 넓고 옮겨앉아 이동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다만, 성인 보호자가 함께 그물을 이용하기에는 약간 좁을 수 있다. 시각 및 청각을 활용하는 놀이와 체험이 다른 곳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경기도 양평군)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5
- 형태 : 단독 건물, 단층
- 이용대상 : 만 10세 이하
- 이용요금 : 36개월 미만 4,000원, 36개월~만10세 이하 8,000원 / 양평군민 50% 할인 / 보호자 무료
- 특징 : 단층 건물로 건물의 층간 이동은 없지만 실내놀이터 내부의 놀이가 공중미로 형태의 층간 이동을 필요로 한다. 미끄럼틀과 같은 다른 놀이시설들도 놀이시설의 계단을 많이 이용하도록 높이 차이가 큰 놀이시설이 많다. 입구에 회전 바가 있는 개찰구가 있어서 휠체어로는 입장이 어렵고 옆의 별도이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의 입장은 다소 어렵다는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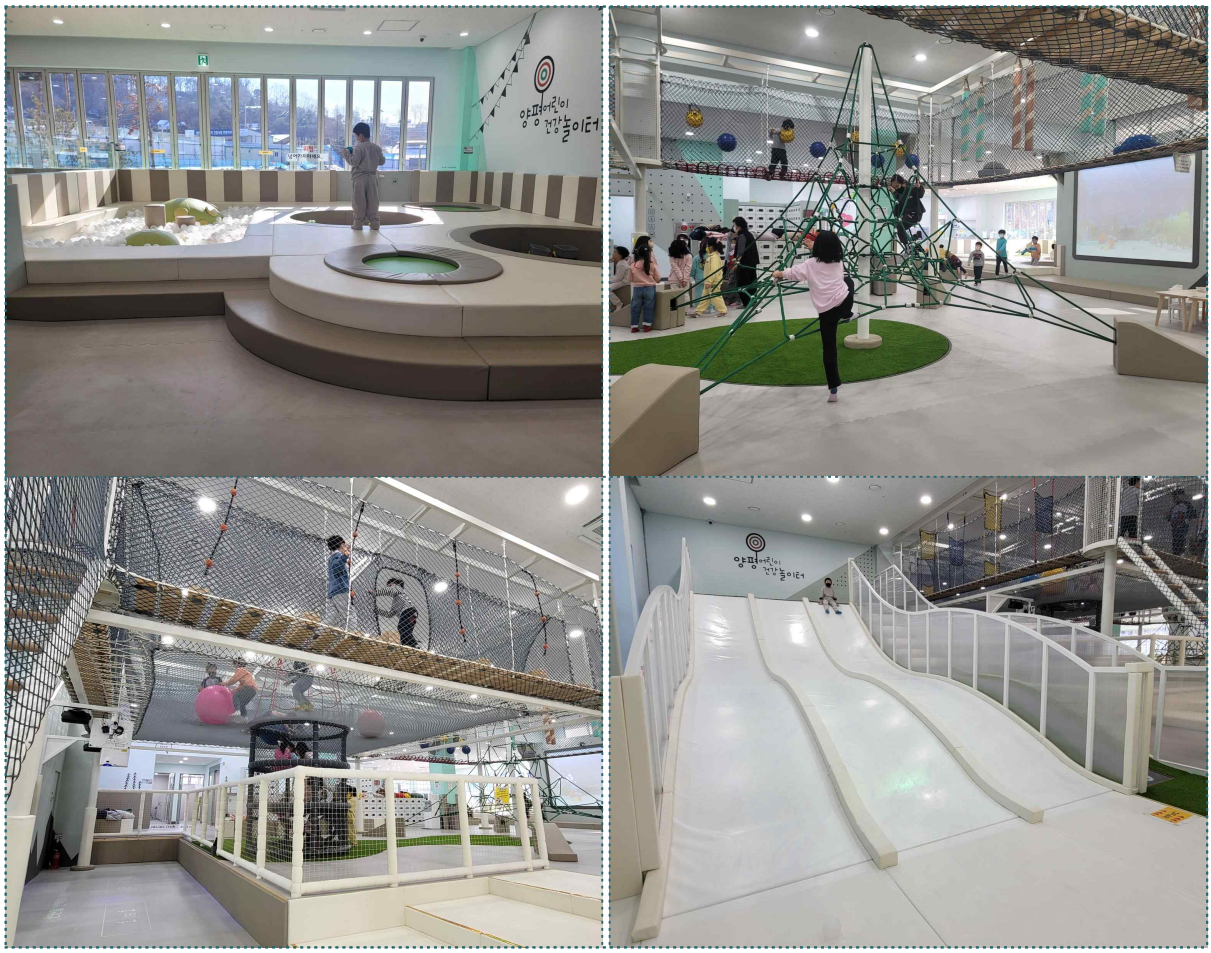

3) 소결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공공시설로서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으며, 화장실이나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은 단독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놀이시설과 놀이공간은 장애아동의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 및 조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서울형 키즈카페인 곳들은 놀이구성이 대체로 비슷했으며, 규모와 구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아동의 입장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여 입장하고자 할 때 이용방법이나 안내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은 없었다. 휠체어 입장에 난색을 표한 곳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체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거의 없었고, 대체로 정적인 놀이 위주로 놀아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연령 이상이 되어도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연령 제한이 아쉽다. 10곳 중 절반 정도가 초등 1학년 또는 2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었고, 서울형 키즈카페는 모두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곳에서는 장애아동에 한해 만12세까지 이용 연령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개발과 확대, 이용 연령대를 좀더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실내놀이터 사례조사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체크
1. 접근로	유모차,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하여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등으로 단차를 제거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8.33%/4.76⁰) 이하, 유효폭 1.2m 이상, 직선 설치	
	보행자와 유모차,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자가 교행할 수 있도록 1.5m 이상 ▶접근로의 유효폭은 최소 1.2m 이상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외부주차장의 경우 출입구까지 지붕이 설치되어 있거나, 실내주차장에 설치 ▶출입구 및 승강기까지 무단차 또는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폭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하여 일반 주차면과 바닥색을 다르게 표시	
3. 출입구(문)	단차 없이 수평접근, 단차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4. 통로	복도 및 통로는 단차가 없고 유효폭 1.5m 이상	
5. 계단	계단 양측에 난간 및 손잡이 설치 ▶손잡이는 성인(h=0.85m 내외) 및 어린이(h=0.65m)를 위하여 2 단 설치 ▶손잡이의 지름은 0.35cm 내외	
6. 승강기	층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7.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 ▶가족화장실 설치시에는 남녀 별도 설치 후 추가로 설치	
	화장실 및 장애인용 화장실이 실내놀이터 내부에 위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침대형태의 기저귀교환대 설치	
8. 접수대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공간 확보	
9. 내부출입구	실내놀이터 출입을 위하여 별도의 개찰구 등의 출입구가 있을 경우, 단차가 없고 유효폭은 0.9m 이상 설치	
10. 휠체어 접근	실내놀이터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어린이, 보호자)가 휠체어를 탄 채 입장 가능	
	휠체어 바퀴를 닦을 수 있는 수건이나 세정도구 비치 여부	
11. 사물함	사물함은 접근 가능한 통로에 위치	
12. 놀이기구 접근	모든 놀이기구는 접근 가능한 통로에 설치	
13. 놀이기구 이용	모든 놀이기구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오르거나 타거나 보조기구에서 옮겨앉을 수 있는 구조, 손잡이나 줄, 막대 등은 손에 장애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 등	
14. 놀잇감	장난감이나 책, 미술용품 등 놀잇감은 유아 및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 어린이의 손에 닿는 위치에 비치	
15. 놀이공간	볼풀, VR 룸, 아지트, 모래놀이 등은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구조로 설치	
16. 놀이 지원	장애아동 등 활동이나 놀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인적 서비스 지원여부	
17. 수유실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구조로 설치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

발행일 : 2023. 1. 31.
발행처 :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지　원 : 아름다운재단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www.accessrights.or.kr
전화 02-765-6835
팩스 02-765-1385
이메일 naea.keeper@gmail.com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를 꿈꾸며 아름다운재단과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2022 무장애 실내놀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발간되었습니다.